



2010 선거방송토론백서



발 간 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도가 출범한 2004년 이후, 우리 위원회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된 해에 그 주요 활동상황을 사료로 남기기 위하여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다섯 번째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제5회 전국단위 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구·시·군 의장선거, 그리고 최초로 실시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법정 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당정책토론회를 상·하반기 2차례 개최하였고, 바람직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6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주관했으며, 선거방송토론 관련 각종 세미나를 주최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선진화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힘써 왔습니다.

201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선진적인 관리와 제도정착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했으며, 이제 명실상부한 선거토론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제의 한계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를 개선과제로 삼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P r e f a c e

이 한 권의 백서에 정책토론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주관 진행사항을 비롯하여 선거방송토론 제도와 기법의 연구 평가, 민주시민사회의 토론문화 육성 등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땀과 그 열매를 모두 담아냄으로써 선거방송 토론 분야의 종합적인 자료로 오래 보존되게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선거방송 토론문화 발전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백서 발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0년 1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유일상



사진으로 보는

2010년 선거방송토론

1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3 후보자 대담 · 토론회

4 정당정책토론회

5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6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 제1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 (2009. 10. 21. 부안군 대명리조트)



▲ 제2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 (2010. 2. 23. 대구 인터볼고 호텔)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 정당 업무협의회 (2010. 2. 17. 청사)



▲ 위원 위촉 (2010. 3. 19. 청사)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 울산지역 간사 업무간담회 (2010. 4. 5. 울산시 청사)



▲ 강원지역 방송사 업무협의회 (2010. 5. 5. 강원도 청사)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전문위원회의 (2010. 3. 10. 청사)



▲ 준비소위원회 (2010. 3. 11. 청사)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정당 대상 설명회 (2010. 3. 16. 국회)



▲ 위원회의 (2010. 3. 19. 청사)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0. 3. 23. MBC스튜디오)



▲ 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0. 4. 26. KBS스튜디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0. 5. 6. MBC스튜디오)



▲ 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010. 5. 6. MBC스튜디오)

후보자 대담 · 토론회



▲ 토론회 개최 홍보 (2010. 5. 19. 울산 남구)



▲ 위원회의 개최 (2010. 5. 20.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대담 · 토론회



▲ 후보자 대상 설명회 (2010. 5. 22.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후보자 대상 설명회 (2010. 5. 22. 울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대담 · 토론회



▲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8. KBS스튜디오)



▲ 강원도지사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7. 춘천MBC스튜디오)

후보자 대담 · 토론회



▲ 경상북도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6. KBS대구스튜디오)



▲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8. KBS울산스튜디오)

후보자 대담 · 토론회



▲ 과산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6. 충주MBC스튜디오)



▲ 고흥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0. 5. 27. KBS순천공개홀)

정당정책토론회



▲ 전문위원회의 (2010. 7. 1. 청사)



▲ 준비소위원회 (2010. 7. 5. 청사)

정당정책토론회



▲ 1차 정당정책토론회 (2010. 7. 16. KBS스튜디오)



▲ 1차 정당정책토론회 (2010. 7. 16. KBS스튜디오)

정당정책토론회



▲ 2차 정당정책토론회 (2010. 11. 16. MBC스튜디오)



▲ 2차 정당정책토론회 (2010. 11. 16. MBC스튜디오)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 세미나 (2009. 6. 5. 코엑스)



▲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 (2010. 9. 17. 선거연수원)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간사 워크숍 (2010. 11. 3. 단양 대명리조트)



▲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간사 워크숍 (2010. 11. 3. 단양 대명리조트)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 개회식



▲ 예선대회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 결승대회



▲ 토론대회 수상기념

차 례

C O N T E N T S

발간사 2

사진으로 보는 2010년 선거방송토론 5

제1장 | 2010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제1절	2010년 선거방송토론 개황	30
01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31
02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32
03	선거방송토론의 연구·평가	33
04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34
제2절	일반 현황	36
01	설치목적	36
02	직 무	36
03	조 직	38
0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40

제2장 |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제1절	토론회 관리 준비	44
01	선거방송토론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44
02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비	46
03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제정	47
04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48
05	사회자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제작·활용	51

06 정당 및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52
0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 지원	54

제2절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55
0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56
02 초청대상 정당 선정	57
03 소위원회 구성	59
04 사회자 선정	60
05 주제 선정	61
06 진행방식 결정	67
07 설명회 개최	71
08 토론회 개최 홍보	73
09 토론회 장소 설비	73
10 토론회 진행	74
11 토론회 시청률	76

제3절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	78
01 대담·토론회 개최	82
02 토론회 등의 개최일시·장소 등	87
03 토론회 초청대상 선정 및 참석 현황	93
04 소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 활용	102
05 사회자 선정	103
06 토론진행방식 결정	105
07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111
08 토론회 진행	114
09 시청률 현황	116

제3장 |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제1절 정당정책토론회 관리일반	122
제2절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124
0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124
02 토론자(참석대상 정당) 선정	125

03	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126
04	사회자 선정	127
05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128
06	토론 진행방식 결정	131
07	설명회 개최 및 홍보	132
08	토론회 진행	133
09	토론회 시청률	134

제3절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135

0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135
02	토론자(참석대상 정당) 선정	135
03	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137
04	사회자 선정	137
05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138
06	토론 진행방식 결정	140
07	설명회 개최 및 홍보	142
08	토론회 진행	143
09	토론회 시청률	143

제4장 |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제1절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146

01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146
02	「6.2 지방선거 평가 토론」 세미나 개최	148

제2절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 개최 및 자료집 발간 153

01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 개최	153
02	선거방송토론 자료집 발간	154

제5장 |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제1절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156

01 대회 주최 및 개최	157
02 토론 논제 및 진행방식	158
03 대회 개최 결과	161

제2절 토론대회 만족도 등 조사 결과	163
-----------------------------------	-----

제6장 | 각종 자료

제1절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168
-------------------------------------	-----

제2절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173
-----------------------------------	-----

제3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177
---	-----

01 개최 결과	177
----------------	-----

02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215
------------------------------------	-----

제4절 2010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235
---	-----

01 개최 결과	235
----------------	-----

02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238
----------------------------	-----

제5절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자료	248
-----------------------------------	-----

01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	248
--------------------------------------	-----

02 「6.2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	293
-----------------------------------	-----

부 록 |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01 공직선거법	367
----------------	-----

02 정당법	374
--------------	-----

0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75
------------------------------------	-----

2 0 1 0 선거 방송 토론 백서

제 01 장 2010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2010년 선거방송토론 개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제01절

2010년 선거방송토론 개황



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방송토론문화 정착



중점 과제

-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
- 선거방송토론회의 공정관리 기반 조성
- 방송토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연구
- 중앙당 대표자 등 초청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민주시민 토론문화 확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0년 목표를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방송토론문화 정착’으로 삼고 ▲정견·정책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 ▲선거방송토론회의 공정관리 기반 조성 ▲방송토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연구 ▲중앙당 대표자 등 초청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민주시민 토론문화 확산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01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선거방송토론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편 동시에 8개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관리 업무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사전교육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 선거 방송토론을 완벽하게 관리하였다.



강화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5. 21. 티브로드 인천방송)

특히 초청대상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불참 후보자수가 대폭 줄었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대부분이 연설회보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5. 6. MBC)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정당의 대표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초청하여 정당 간 정책의 상호 비교검증을 위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주도권 토론을 도입하여 토론자 간 발언시간에 균형을 이루며 1 대 1의 역동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정당의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토론회 개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짧은 선거기간 중 업무량 폭증에 대비하여 후보자 토론회 관리 업무량 경감을 위한 사무편람 발간, 토론회 관리계획서 작성·송부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토론회 관리 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기하였다.

또한 토론의 이해와 준비를 위해 사회자 및 후보자에게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후보자 토론 관리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급 토론위원회와 활발하게 교감하여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책선거 정착에 기여하였다.

02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에게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국정현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을 초청하여 두 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0년 7월 16일(금)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제·사회분야를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KBS·MBC에서 전국에 생방송하고, SBS는 녹화중계하였다.

특히 제1차 정책토론회는 상반기 보궐선거기간 중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와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에 맞추어 7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이 정책을 직접 알림으로써 개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정책토론회는 2010년 11월 16일(화)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제·사회분야를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1차 토론회와 같이 KBS·MBC 및 SBS에서 중계방송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내년 예산안 주제

에 대하여 9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이 자당의 정책을 직접 방송을 통하여 알림으로써 정책토론회 개최 목적에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정당의 내부사정으로 당초 ‘당대표’ 토론에서 ‘정책위의장’ 등 토론으로 아쉽게 변경된 점과 처음으로 9개 정당의 토론자가 참석하다 보니 발언 시간이 짧아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7. 16. KBS)

03 선거방송토론의 연구·평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의 연구·평가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토론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학계·방송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방송토론의 현실적인 문제점 분석 및 평가 토론으



6. 2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
(9. 17. 선거연수원)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및 간사 워크숍
(11. 3. 단양대명리조트)

로 실효성 있는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및 간사 워크숍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국 고등학생 토론타회 개최 등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04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을 확립하고 토론문화 저변을 확산하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6회 전국대학생토론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46개 대학 중 128개 팀 256명의 대학생과 교수·직원 심사위원 110여 명, 행사진행요원 40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잡음 없이 치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토론타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모든 참가자들에게 서류심사가 아닌 실전토론타심사 및 지방 참가자들의 숙박 제공, 시상 훈격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대회 진행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타회(8. 27. 중앙대학교)

자 중 6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당일에 예선과 본선을 모두 개최하는 바람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제02절

일반 현황



01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02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른 선거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및 능력, 자질을 상호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가 있는 기간에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자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당정책토론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③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토론캠프 등을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토론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교육, 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토론회 운영을 위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활성화와 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 개최 및 후원, 각종 연구용역 등을 주관함으로써 지속적인 토론문화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3 조 직

2004년 3월 12일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를 최초로 구성·설치하였다. 이어서 2005년 8월 4일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선거방송토론 개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구·시·군지역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3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창원시·마산시·진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하고, 5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하였다. 따라서 2010년 말 현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51개로 전국 268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2010. 12. 31 현재)

구 분	위원회수	지 역 별															
중 앙	1	전 국															
시·도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51	25	16	8	10	5	5	5	44	18	13	17	15	22	24	22	2

한편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 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표 1-2] 위원명단(중앙)

(2010. 12. 31 현재)

직 위	성 명	현 직	추 천 기 관
위 원 장	유 일 상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류 원 홍	공 무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이 세 진	방 송 인	한나라당
	박 동 영	KBS 이사	민주당
	김 찬 태	KBS 시사보도팀 PD	KBS
	성 경 섭	MBC 논설위원실 부국장	MBC
	윤 상 일	변 호 사	대한변협
	임 현 진	교 수	시민단체
	윤 중 보	방 송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 형 준	교 수	학계
	이 정 희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 1인을 두되, 중앙 및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0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때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표 1-3]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 후보자 대상 토론회 ■

선거명	주 관	개최방법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중계방송사
대통령선거	중앙 위원회	토론회	3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2회 이상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	공영방송사

선거명	주 관	개최방법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중계방송사
시·도지사 선거	시·도 위원회	토론회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준용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토론회	1회 이상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는 제 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	공영방송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구·시·군 위원회	토론회 또는 연설회(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또는 다른 지 상파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
구·시·군의장 선거		토론회 또는 연설회(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또는 다른 지 상파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

▮ 정당 대상 정책토론회 ▮

토론회명	주관	개최시기	개최 횟수	초청대상 정당	중 계 방송사	근거법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중앙 위원회	임기만료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 록신청개시일 전일 까지	월1회 이상	• 소속국회의원 5명 이상 • 직전선거(대선 비례국선 비례시도선거) 득표율 100분의 3 이상	공영 방송사	「공직 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에 의한 공 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공영 방송사	「정당법」 제39조

2 0 1 0 선 거 방 송 토 론 백 서

제 02 장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토론회 관리 준비 제1절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제2절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 제3절

제01절

토론회 관리 준비



01

선거방송토론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25일 공표하였다.

선거방송토론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의 변경(§8의7), 지역구국선 및 자치단체장선거 초청기준 명확화(§82의④항3호), 비례대표 선거 토론자 초청요건 확대(§82의①항2호),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61)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선거방송토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후속작업이 이루어졌다.

1 선거방송토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변경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달리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과 정당추천위원 2명을 포함하고 그 외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6명, 총 9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공영방송사 추천 2명, 교섭단체구성 정당추천 2명,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등 5명으로 추천받아 구성하던 것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지역적 설립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초청기준 명확화(§82의④항3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기존 ‘직전선거’의 개념을 ‘최근 4년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의문의 소지를 없앴다.

다.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61)

대담·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들을 재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청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라. 비례대표선거 토론자 초청요건 확대(§82의①항2호)

비례대표선거 토론자로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기존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던 것을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의 정책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당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가.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공영방송사추천위원은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해임할 수 있으며, 토론회 준비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당추천위원도 지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중·앙 및 시·도사무국 구성방법 변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의 지정방법 또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다. 후보자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신설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는 참석 여부에 따라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토론회 불참 후보자의 불참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강화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토론자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02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비

1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비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호선(3. 19. 청사)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을 차질없이 주관·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이 결원되어 있거나, 결원이 예상될 경우 조속히 정비하였다.

필요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임시고용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표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해촉사항

위 촉 내 역		해 촉 내 역		
일 자	이 름	일 자	이 름	사유
2010. 3. 19	유 일 상 이 정 희 이 세 진 윤 중 보 김 형 준	2010. 3. 18	이 성 춘 홍 진 표 임 동 훈 최 향 순	임기 만료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 구성

2010년 1월 25일 개정·공표한 「공직선거법」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후 30일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은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정수 9인 이내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새로 구성하였다.

03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제정

선거관리 및 정당관리 분야와 같이 선거관리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선거방송토론

업무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훈령을 폐지하고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제정·발간하였다.

①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용규정 폐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실무 위주로 제정한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활용하였다.

②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제정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축소, 대담·토론회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처리 간소화, 사례·예시중심의 구체적 기술로 토론회 개최 업무에 대한 이해력 제고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은 토론회, 연설회 개최 실무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 실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 운영규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업무간소화 방안 위주로 제작하였으며, 업무 활용도가 높은 각종 자료를 통합구성하여 실무자들의 선거방송토론 업무 관리 시 활용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론회 관리 표준계획서(안)을 작성·시달하여 업무경감을 도모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하였다.

04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제5회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방송토론 업무 전반 및 편람 제정사항 중심으로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인 간사 대상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무자 교육연수는 선거방송토론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취약분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어느 선거보다 하자없는 방송토론을 관리할 수 있었다.

① 제1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제1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권역을 2개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선거방송토론 관리 경험이 없는 직원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5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방송토론 관리절차 이해와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 관리 경험사례 발표와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져 좀 더 심층적인 선거방송토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집중효과를 높였으며, 실무직원의 경험사례 발표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모범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공영방송사 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본 후보자 TV토론을 어떻게 개선할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토론회 개최에 대한 내부 생각과 외부의 시각을 비교할 수 있었다.



제1차 실무자 교육('09. 10. 21. 전북 부안군)

[표 2-2] 제1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내역

구분	개최일 (1박 2일)	개최장소	인원수	교육내용
1반	2009. 10. 21~10. 22	전북 부안군 (변산대명)	131명	• 선거방송토론 실무교육 : 토론지원팀장 • 경험사례 발표 : 구·시·군 간사 8명
2반	2009. 11. 3~11. 4	강원 고성군 (설악대명)	124명	• 외부강사 특강 : 박영석(대구 MBC 방 송본부 국장, 선거와 TV토론 저자)

② 제2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제2차 실무자 교육(3. 5.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제2차 선거방송토론 교육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5일까지 선거방송토론 사무 편람 주요 내용 시달과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 실무를 주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2차 교육은 새롭게 제정한 사무편람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절차 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높였다. 특히 실무교육과 함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선거방송토론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표 2-3] 제2차 선거방송토론 실무자 교육·연수 내역

구분	개최일	개최장소	인원수	교 육 내 용
1반	2. 23 (화)	광주시위원회 회의실	44	•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현안사항 토의 (사무국장 주제) • 지방선거대비 선거방송토론 실무교육 (토론지원팀장)
2반	2. 26 (금)	선거연수원	92	
3반	3. 3 (수)	대구 인터볼고 엑스코호텔	79	
4반	3. 5 (금)	충북위원회 회의실	36	

05 사회자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제작·활용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자의 선거방송토론 진행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제작하였고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기본적인 준비 매뉴얼을 후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1 『사회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사회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사회자 안내자료 1호로 제작되었다. 가이드북에는 TV 선거방송토론 사회자를 위한 방송이해, 선거방송토론 진행절차와 토론진행표, 진행방식, 대본, 방송용어 및 표준발음법 등을 수록하였다. 2009년 12월에 발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선거방송토론 사회자에게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2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은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가이드북에는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 선거방송토론 전략 및 절차 소개, 토론진행표, 진행방식, 대본, 방송용어, 관련법규 등을 수록하였다. 후보자가 토론 준비에 참고하기 편리하게 휴대용 소책자로 구성하였으며, 2010년 3월에 발간하여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를 통해 토론회 참석 후보자에게 배부·활용토록 하였다.

06 정당 및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정당 및 방송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후보자토론회 관리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 공영방송사와 업무협약

제5회 지방선거의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사 결정 등을 위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KBS·MBC 공영방송사(본사)와 일괄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기타 시·도지역의 토론회 개최일시 결정 관련 업무협약에 효율을 기하였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표하여 중계방송사와

협상창구를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공영방송사(KBS, MBC)와 수시 업무협의회를 통해 방송시간대 및 진행방식 결정 등을 협의하는 등 토론회 업무경감 및 완벽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등의 방송시간대 편성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영방송사 중계방송관계자와 실무제작 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②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 및 개최에 대한 위원회와 정당 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당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정당업무협의회 개최(2. 17. 청사)

07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 지원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중계방송사협의·스튜디오·수화통역사 확보 등 구·시·군토론위원회의 공통적인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일괄 추진하여 구·시·군위원회 업무경감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차원에서 선거방송토론 관련 실무교육교재 작성·배부, 큐시트 및 시나리오 작성 등 실무 위주의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이 선거방송토론 업무를 맡게 된 간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준비한 결과 완벽한 토론회 관리를 할 수 있었다.

제02절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직선거정책토론회를 임기만료의 선거가 있는 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 중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월 1회씩 총 3회 개최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KBS·MBC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다음 날에는 SBS(일부 지역 민영방송사 포함)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녹화로

방송되었다. 토론주제는 개최 시기의 이슈를 중심으로 1차 ‘교육자치, 지방행정체제 개편’, 2차 ‘일자리 창출, 정부재정’, 3차 ‘천안함 사태, 지방선거 의미’로 매회 2개씩 선정하였다. 토론 진행방식은 ‘공통질문 ⇨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 형식으로 구성하여 토론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개최일시	2010. 3. 23(화) 10:00 ~ 12:00(120분)	2010. 4. 23(금) 10:00 ~ 12:00(120분)	2010. 5. 6(목) 23:10 ~ 5. 7(금) 01:00(110분)
개최장소	MBC D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토 론 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표자
토론분야	교 육 · 행 정	경 제	정 치 · 선 거
사 회 자	박순애(서울대 교수)	엄길청(경기대 교수)	유정아(방송인)
중계주관 방송사	MBC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0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2010년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0. 3. 4)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010. 5. 12)까지의 기간 중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하였다.

1월 27일(수) 제1차 위원회의에서 ‘2010년도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을 검토하고, 2월 17일(수)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토론회 전체 일정과 분야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차수별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은 공영방송사(KBS, MBC)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협의하였으며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접수받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방송사와 월별 일정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중계방송시설명을 통보받고 3월 2일(화)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기에 일시·장소를 결정하는 등 사전 준비와 유관기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원내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나 토론시간이 저녁 시간대가 아닌 오전 10시로 결정되어 많은 국민이 시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2010년도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에 따라 방송사와 사전 협의가 무난하게 이루어져 4월 2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개최일시·장소를 조기에 결정하였고, SBS가 당일 12시부터 녹화로 중계하는 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제1차 때와 같이 오전 10시로 편성된 아쉬움이 남았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당대표가 참석하여 중계방송사와 밤 11시대로 일시를 협의하고, 4월 12일(월) 제6차 위원회의에서 조기에 결정하여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02

초청대상 정당 선정

토론회 참여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며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토론자로 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3. 23. MBC 스튜디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초청 정당은 국회의석 수와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6개 정당을 선정하였다.

토론자는 지난해 정책토론회에 정책위의장이 연속해서 참석한 점을 고려하여 원내대표로 변경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토론자에 변화를 주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초청 요건을 검토하여 6개 정당을 선정하고, 토론주제인 경제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토론자로 하고 각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부 사정으로 ‘제3정조위원장’,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 토론자를 변경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정당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관련 의제를 토론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언론과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각 정당의 당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현황은 [표 2-5]와 같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4. 23. KBS 스튜디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5. 6. MBC 스튜디오)

[표 2-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구분	소속정당	직위	성명
제1차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
	민 주 당	원 내 대 표	이 강 래
	자 유 선 진 당	원 내 대 표	류 근 찬
	미 래 희 망 연 대	원 내 대 표	노 철 래
	민 주 노 동 당	원 내 대 표	강 기 갑
	창 조 한 국 당	원 내 대 표	이 용 경

구분	소속정당	직위	성명
제2차	한 나 라 당	제3정조위원장	김 광 립
	민 주 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 재 일
	자 유 선 진 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민 주 노 동 당	정책위의장	이 정 희
	창 조 한 국 당	정책위의장	유 원 일
제3차	한 나 라 당	대 표 최 고 위 원	정 몽 준
	민 주 당	당 대 표	정 세 균
	자 유 선 진 당	당 대 표	이 회 창
	민 주 노 동 당	당 대 표	강 기 갑
	창 조 한 국 당	당 대 표	송 영 오

※ 미래희망연대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2·3차 토론회에 불참

03 소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2-6]과 같다.

[표 2-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윤상일	2010. 3. 4 (구성) ~ 2010. 3. 18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윤상일, 이정희	2010. 4. 8 (구성) ~ 2010. 5. 7 (제2·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 최항순위원 임기만료로 2010. 3. 18 퇴임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4. 20. 청사)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부터 세 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종료하는 날까지이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04

사회자 선정

토론회 사회자는 각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준비소위원회에서 경력과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여 4명으로 압축한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자에게 토론자 발언시간, 타이머 표시 방법, 토론방향 등을 요약·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하고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을 안내하였다. 사회자도 질문사항을 작성한 후 질문사항 선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정책토론회의 참신한 사회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자 후보군 중 방송진행 경험이 있는 박순애(서울대) 교수를 선정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주도권토론’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토론회 진행 경험이 많은 엄길청(경기대) 교수를 선정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각 정당의 대표자가 토론자임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토론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진행경험이 많은 여성 진행자 유정아(방송인)를 선정하였다.

[표2-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구 분	토 론 분 야	사 회 자	
		성 명	전 공
제1차	교 육 · 행 정	박순애(서울대 교수)	행정학
제2차	경 제	엄길청(경기대 교수)	경제학
제3차	정 치 · 선 거	유정아(방송인)	신문방송학

05 주제 선정

토론주제는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분야별 심층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제1차 토론회는 정치·교육 분야, 제2차 토론회는 경제 분야, 제3차 토론회는 국가안보와 선거 분야로 구분하였다.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국내 유명 리서치 회사에 토론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조사로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활용할 의제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질문사항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과 동시에 사회자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의 요지는 정당에 사전 통보하여 토론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다만 참여한 토론자들이 각 정당의 견해만을 피력한 나머지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도출하지 못하여 정당 간의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참석 대상 정당, 대한변호사협회 등 5개 단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가 40명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한 후,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관심 사항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의제선정 조사([표 2-9]) 결과, 교육·복지 현안에 대한 주요 토론 의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77.5%)과 ‘교육계의 비리근절 방안’(77.4%)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행정부분 현안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입장’(67.1%), 통일·외교 현안은 ‘미국, 유럽 등과의 FTA 추진 문제에 대한 입장’(62.1%)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토론주제는 이렇게 수집한 의제 중에서 교육계의 비리 근절방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1주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원내대표 토론회라는 점

[표 2-8]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조사	일반국민조사
조사대상 · 표본크기	국정현안 분야 전문가 40명	전국의 유권자 500명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2009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조사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웹 조사 (Web survey)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조사기간	2010년 2월 22일 ~ 3월 5일	2010년 3월 8일

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2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제1주제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기적으로 관심도가 높지만, 제2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는 다소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1주제에 비해 토론시간을 축소하여 진행방식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전문위원회와 준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제별로 3개의 논점을 제시하여 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질문요지를 정당에 통보하여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표 2-9]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일반국민 조사결과

토론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
교육	교육계의 비리 근절방안	77.4
	초중고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입장	63.9
	대학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입장	73.5
	공교육 경쟁력 강화	63.8
	사교육비 절감 방안	72.4
행정·사법	재정격차 해소에 대한 입장	56.9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	34.9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67.1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	47.8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	36.9
복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5.2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77.5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55.0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	50.9
통일·외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	48.1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36.6
	남북한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52.0
	향후 미국, 유럽 등과의 FTA 추진 문제에 대한 입장	62.1

②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5개 정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 추천과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가 21명 및 일반국민 500명을 조사하여 의제를 수집하였다.

의제선정 조사([표 2-11]) 결과, 경제 현안에 대한 주요 토론 의제로 ‘청년실업문제’(85.6%)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70.5%),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66.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62.7%)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2-10]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조사	일반국민조사
조사대상·표본크기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 21명	전국의 유권자 500명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2009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조사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웹 조사 (Web survey)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조사기간	2010년 3월 29일 ~ 4월 2일	2010년 4월 5일 ~ 4월 6일

[표 2-11]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결과

토론 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
고용 및 노동	일자리 창출 방안	81.5
	중장년 실업 문제	66.8
	청년 실업 문제	85.6
	비정규직 문제	61.0
	노사 문제	39.8

토론 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문제	30.5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66.4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책	48.2
지방경제	지방재정 개선 방안	47.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2.7
	지역균형 발전 방안	59.2
기타 경제	금리인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입장	43.7
	재정적자 해소방안	47.2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70.5
	녹색성장정책	46.5
	가계부채 해소방안	48.7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정책을 세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기획하고자 제1주제는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나?', 제2주제는 지방재정 문제를 포함한 '정부 재정, 문제없나?'를 선정하였다.

토론회 개최 결과 전체적으로 토론 흐름에 따라 무리없이 주제를 논의하였으나, 토론회 개최 당시 현안으로 부각된 '4대강'과 '무상급식'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는 등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③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개 정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단체 추천과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가 21명 및 일반 국민 5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표 2-12]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조사	일반국민조사
조사대상·표본크기	정치·선거 분야 전문가 21명	전국의 유권자 500명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2009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조사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웹 조사 (Web survey)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조사기간	2010년 4월 2일 ~ 4월 12일	2010년 4월 14일 ~ 4월 15일

의제선정 조사([표 2-13])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한 주요 토론 의제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독도문제’(82.9%), 천안함 침몰사건(65.2%),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75.3%)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2-13]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결과

토론 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점)
국회 및 정당	국회 파행 방지를 위한 국회운영 개선방안	60.2
	정당 내 후보 공천의 민주화 방안	55.4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방안	58.9
선거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문제	46.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56.6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64.0
정치·안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	52.5
	독도문제	82.9
	대법원, 검찰 등 사법개혁 문제	57.7
	천안함 침몰 사건	65.2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75.3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문제	56.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55.9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 대표자의 토론회임을 감안하여 제1주제는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으로, 제2주제는 시의성을 감안하여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로 결정하여 이와 관련한 정당의 정책을 대표가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일부 정당의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였으며, 제1주제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 자유토론 전반부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06 진행방식 결정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의 성격과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의 공정성·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전형적인 토론 진행방식에서 탈피한 제한적 ‘시간총량제토론방식(자유토론형)’¹⁾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2차 및 3차 토론회부터는 ‘토론자 주도권’²⁾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각 주제별 ‘사회자 공통질문’과 토론자 간 자유토론(시간총량제)¹⁾으로 정하여 토론자나 시청자가 진행방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단순화하였고, 논점이 많은 제1주제의 토론시간과 제2주제의 토론시간을 달리 배정하였다. 세부적인 운용규칙은 제1주제는 토론자당 총 8분의 시간, 제2주제는 토론자당 총 5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토론하도록 하되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토론자가 본인의 총량시간과 1회 발언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를 세트 앞

1) 토론자당 배정된 시간 내에서 자유토론을 하되,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는 세부규칙 운영

2) 토론자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정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답변시간을 보장하도록 세부규칙 운영

면에 설치하고, 전임 직원이 직접 발언횟수를 계측하였다.

사회자가 토론자의 잔여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하여 토론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토론자 간 주장과 반론의 교차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동감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표 2-14]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제1주제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이강래/노철래/이용경/강기갑/류근찬/안상수 토론자 답변(각 1분)	6분 30초
자유토론	• 노철래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8분 내에서 자유토론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48분
제2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이용경/강기갑/류근찬/안상수/이강래/노철래 토론자 답변(각 1분)	6분 30초
자유토론	• 강기갑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 내에서 자유토론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30분
맺 음 말	• 류근찬/안상수/이강래/노철래/이용경/강기갑 토론자(각 1분)	6분

②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토론회는 토론주제에 대한 자유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별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답변, 토론자당 5분 총량시간 내 자유토론, 토론자당 3분 내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 시간이 남을 경우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 자유토론은 1차 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하였으며, 토론자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의 주도권 시간 내에서 최소 답변시간(약 40초)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다.

새로 도입한 ‘주도권토론’으로 토론자 간 교차토론을 함으로써 ‘자유토론’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추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 간 발언시간의 균형을 이루었다. 특히 주도권 토론 시 화면분할, 반응샷 또는 폴샷 등의 기법으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여 시청자가 토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만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를 하였음에도 일부 토론자는 주도권 토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다.

[표 2-15]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제1주제	일자리 문제, 제대로 되고 있나?	소요시간
사회자 공동질문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유원일/이상민/변재일/김광림/이정희 토론자 답변(각 1분 30초)	8분
자유토론	• 이상민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 내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25분
주도권 토론	• 변재일/김광림/이정희/유원일/이상민 주도권 토론(각 3분) ※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40초)을 보장	15분
제2주제	정부 재정, 문제없나?	소요시간
사회자 공동질문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김광림/이정희/유원일/이상민/변재일 토론자 답변(각 1분 30초)	8분
자유토론	• 이정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 내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20분
주도권 토론	• 유원일/이상민/변재일/김광림/이정희 주도권 토론(각 3분) ※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40초)을 보장	15분
맺음말	• 이상민/변재일/김광림/이정희/유원일 토론자(각 1분)	5분

③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2차 토론회와 동일하게 토론주제에 대한 자유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별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답변, 토론자당 5분 총량시간 내 자유토론, 토론자당 3분 내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 시간이 남을 경우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 자유토론은 1차 토론회와 동일방식으로 유지하였으며, 토론자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도권 시간 내에서 최소 답변시간(약 40초)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다. 2차 토론회에서 나타난 토론자의 주도권 방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토론자 대리인의 명확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토론회 당일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가 ‘주도권토론’을 ‘자유토론’으로 혼동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주장만 계속하거나, 토론자 2명에게 질문을 동시에 하는 등 주도권 진행방식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제2차 토론회 진행방식의 긍정적 결과에 따라 제3차 토론회에서도 ‘주도권토론’ 형식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토론자 간 1 대 1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유토론’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토론회도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바, 향후 토론에서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6]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제1주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강기갑/이회창/송영오/정세균/정몽준 토론자 답변(각 1분)	5분 30초
자유토론	• 이회창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5분)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25분
주도권 토론	• 송영오/정세균/정몽준/강기갑/이회창 주도권 토론 (각 3분) ※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 (약 40초)을 보장	15분

제2주제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정세균/정몽준/강기갑/이회창/송영오 토론자 답변(각 1분)	5분 30초
자유토론	• 정몽준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5분) ※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25분
주도권 토론	• 강기갑/이회창/송영오/정세균/정몽준 주도권 토론(각 3분) ※ 반드시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 (약 40초)을 보장	15분
맺 음 말	• 이회창/송영오/정세균/정몽준/강기갑 토론자(각 1분)	5분

07 설명회 개최

토론회 공표 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개최(4. 29. 국회 의원회관)

설명회에는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진행방법, 토론회 진행 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천하였다.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그 추천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명회 개최현황은 [표 2-17]과 같다.

설명회는 토론시간 계측 타이머 운용 시연, 좌석과 발언순서 추천 및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토론회 안내를 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론자인 원내 대표가 불참하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설명회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10년 3월 16일(화)에 토론자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여 국회 내 시설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토론진행방식 등 설명,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10년 4월 15일(목)에 개최하여 좌석·발언순서 추천, 주제 및 논점, 새로 도입한 주도권 토론방식 위주로 진행방식 등을 설명하고, 토론회 개최 전일에 재설명을 요청한 토론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안내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10년 4월 29일(목)에 개최하였다. 각 정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토론회인 만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최하는 후보자토론회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표 2-1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제 1 차	2010. 3. 16(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 2 차	2010. 4. 15(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제 3 차	2010. 4. 29(목) 10:00	국회 의원회관

08 토론회 개최 홍보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홍보 팝업 파일을 게시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여론주도층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과 계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를 공표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실을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해 송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특히 토론회 개최 전에 주요 언론사 보도국장, 국회 사진기자단과 방송기자단에 취재를 안내하여 중앙언론,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되었고, 개최 후에 방송과 신문 및 연합뉴스 등에 토론장면 사진과 토론내용 등이 보도된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평가되었다.

09 토론회 장소 설비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장 설비(3. 23. MBC)

토론회 개최 장소는 주관방송사 스튜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방송사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개최 장소를 품격 있게 설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세 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장소설비는 산뜻한 세트 배경과 사회자를 토론자들의 끝에 배치하여 토론회장엔 입체감과 안정감을 주었다. 큐시트 및 진행개요를 좌석에 사전 비치하고 토론자에게 기념볼펜을 제공하는 등 토론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참석자가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2차 토론회 때 사회자 좌석을 토론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비하지 않아 리허설 전에 현장에서 조정하였고, 제3차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일 전날에 ‘어린이 동요제’ 녹화를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관계로 당시 소품으로 사용했던 ‘색종이 가루’가 토론자 발언 중에 떨어지는 장면이 화면에 촬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점검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10 토론회 진행

토론회 개최 시각 40분 전까지 토론자가 토론회장엔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중계주관방송사 제작프로듀서 주관하에 개최시각 20분 전에 최종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토론회 진행은 토론진행표 및 대본에 따라 진행하되 발언시간을 표시하는 기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활용하고 방송화면은 중계방송사가 모든 토론자에게 공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관계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중계주관방송사 안전관리팀에 출입자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토론평가단 23명(대학생 12명, 일반국민 11명)을 방청객으로 구성하고 토론자 정면에 배치하여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알리는 상황을 설정하고, 화면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3. 23. MBC)

분할이나 리액션 등 다양한 카메라 샷을 구성하여 역동적인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자막방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시청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예행연습 후에는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에게 허위사실이나 선거에 관한 지지발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계속 초과하여 결국 맺음말을 1분에서 30초로 단축하였고, ‘무상급식’ 등 분명한 정책의 차이가 있는 논점에서도 열띤 토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제2차 토론회에서는 토론평가단 중 19명을 방청객으로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토론자가 방청객을 언급하며 당사자에게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듯이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주도권 토론에서 ‘화면분할’이나 ‘리액션’ 등 다양한 카메라 샷을 구성하여 역동적인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였다.

리허설 전에 토론자 유의사항을 사회자가 직접 전달하여 토론자들이 더욱 집중하는 자세를 보였고, 방송진행경험과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주도권토론’을 무리 없이 진행하여 향후 진행자들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토론자가 정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측면의 방청객을 보며 발언하여 화면에 옆모습이 자주 비치거나, 자료를 높이 들고 읽거나 또는 자세를 올바로 하지 않는 등 향후

설명회에서 주의사항으로 안내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3차 토론회에서도 사회자가 직접 토론자에게 유의사항(카메라·타이머 위치와 운용방법, 발언권신청 방법, 주도권토론 진행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여 토론자가 집중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사회자의 시의적절한 발언내용 정리와 브릿지 멘트로 ‘토론진행표’상의 시간 계획대로 토론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제1·2차 토론회와 같이 대학생 20명, 일반 국민 28명 등 토론평가단 48명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토론회를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하였다.

11 토론회 시청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³⁾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를 통해 토론회 관련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표 2-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단위 : %)

구분	1차 토론회 (원내대표)			2차 토론회 (정책위의장 등)			3차 토론회 (당 대표)		
	KBS 1 (10:00)	MBC (10:00)	SBS (14:00)	KBS 1 (10:00)	MBC (10:00)	SBS (12:00)	KBS 1 (10:00)	MBC (10:00)	SBS (12:00)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2.0	0.9	0.5	1.7	0	0.7	2.8	2.3	1.0
TNS 미디어코리아	1.25	2.09	0.24	2.3	0.5%	0.5	3.5	1.2	0.8

3) 시청률 조사기관별 조사지역

- AGB닐슨미디어리서치 : 서울, 경기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마산, 전주, 청주, 구미,
- TNS미디어코리아 : 서울, 인천 포함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은 2008년에 개최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 시청률(AGB : 2.9%, TNS : 3.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토론자의 낮은 인지도, 오전 시간 개최 등으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 시청률(AGB : 2.6%, TNS : 2.8%)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1·2차 토론회는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는 후보자토론회보다 관심도와 시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과 퀴즈 경품 제공 등 시청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제1·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 시청률(AGB : 5.1%, TNS : 4.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참석한 토론회로서 중앙언론사가 선거방송토론 내용을 보도하는 등 다른 토론회와 달리 관심을 보였으며 시청자의 높은 관심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19] 역대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시청률

(단위 : %)

구 분		AGB			TNS		
		KBS1	MBC	계	KBS1	MBC	계
2006년	1차 (3.25. 10:00)	1.6	0.7	2.3			
	2차 (4.15. 10:00)	2.0	0.9	2.9			
	3차 (5.12. 22:00)	4.4	2.2	6.6			
2007년	1차 (9.21. 10:00)	2.3	1.0	3.3	1.5	0.8	2.3
	2차 (10.25. 10:00)	2.4	0.9	3.3	0.8	0.7	1.5
	3차 (11.2. 23:40)	2.7	1.3	4.0	1.6	1.4	3.0
2008년	1차 (1.31. 10:00)	3.2	1.4	4.6	2.0	2.3	4.3
	2차 (2.29. 10:00)	2.3	1.2	3.5	1.2	1.3	2.5
	3차 (3.13. 23:20)	2.9	2.1	5.0	2.7	2.1	4.8

제03절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토론(5. 28. KBS)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기간 중(2010. 5. 20 ~ 6.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교육감선거 전국 동시 실시에 따른 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으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되었으며, 선거별 후보자 토론회 개최방법은 [표 2-20]과 같다.

[표 2-20]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방법

선 거 명	주 관	개 최 방 법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중계방송사
시·도지사 선거	시·도 위원회	토론회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준용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토론회	1회 이상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	공영방송사
구·시·군의장 선거	구·시· 군 위원회	토론회 또는 연 설회(연설회는 일정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 또는 다른 지 상파방송사 나 종합유선 방송사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연설회 개최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연설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선거별 토론회 초청 대상자 선정요건은 [표 2-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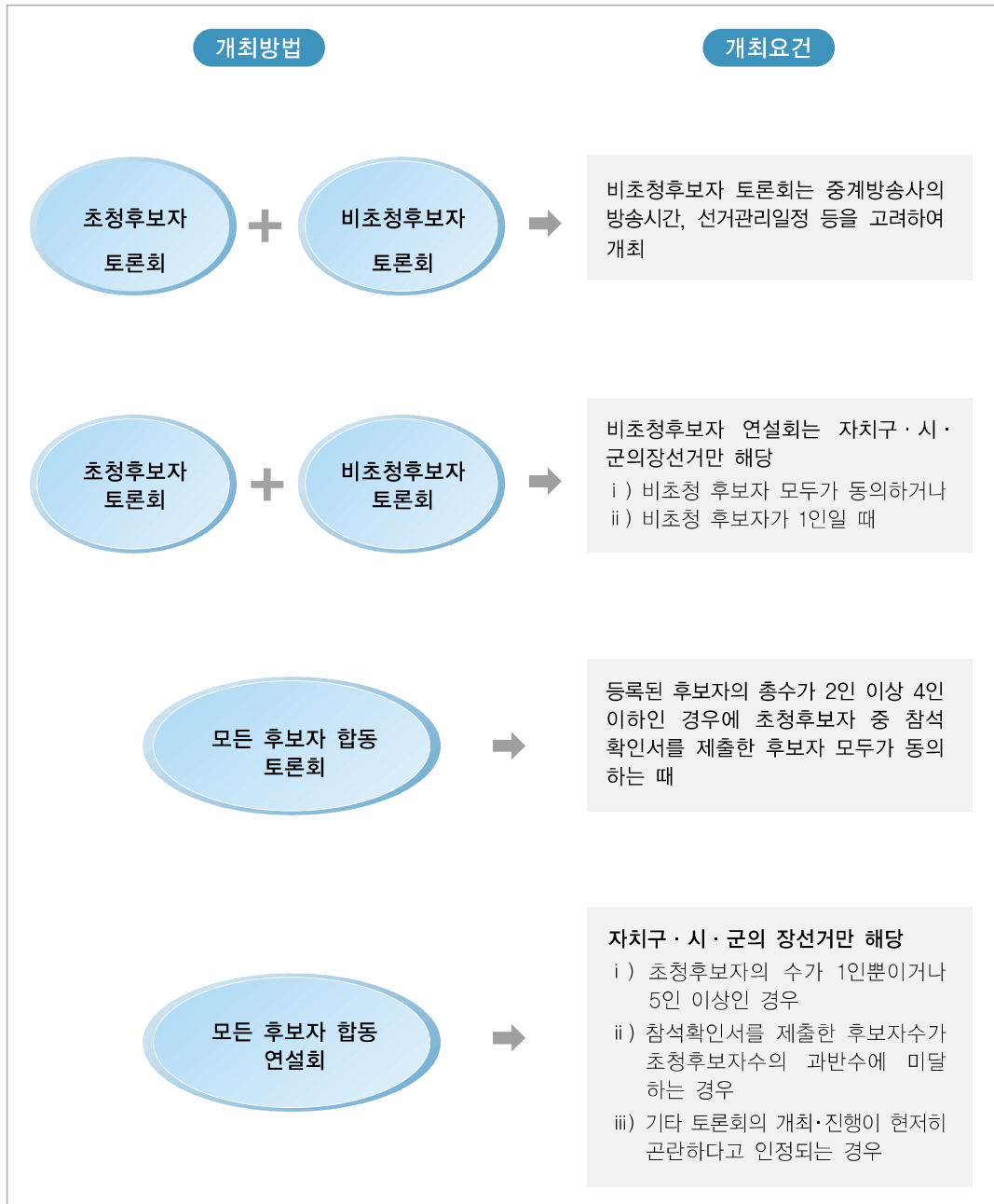
김제시장 후보 연설(5. 26. KBS)

[표 2-21] 선거별 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요건

선거명	선 정 요 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④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i)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ii)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iii)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iv)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	위 i), ii)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위 iii)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교육감선거	i)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ii)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한편 초청 및 비초청 후보자 대상 토론회의 개최방법은 [표 2-22]와 같이 4가지가 있으며 연설회는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서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표 2-22] 토론회 개최방법 및 요건



01 대담·토론회 개최

1 토론회 등 개최 총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처음 실시한 교육감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포함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이하 토론회 등)를 총 361회 개최하였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토론회 등을 총 299회 개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62회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감선거 토론회 신설 개최 등으로 인한 초청후보자 대담·토론회 등 증가(49회), 비초청후보자⁴⁾ 토론회 등의 개최 일반화로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등 증가(57회), 반면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감소(26회)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4회 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초청후보자 대상 연설회를 48회⁵⁾ 개최한 반면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9회를 개최하여 29회(60%) 대폭 감소하여 연설회

[표 2-2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선거구수	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소개	합동	비초청
계	276	361	271	229	21	21	90	19	71
시·도지사	16	21	21	13	5	3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29	29	17	12				
구·시·군의 장	228	292	202	183	1	18	90	19	71
교육감	16	19	19	16	3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2④항 토론회 초청후보자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를 말함(이하 같음).

5) 제4회 지방선거 초청후보자 대상 연설회 개최 횟수는 [표 2-23]의 방송연설회 초청 18회와 합동 30회를 합한 값임.

가 아닌 토론회 개최 중심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하여 토론회가 파행되거나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되기도 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표 2-2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대담 · 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계	299	221	180	5	36	78	18	30	30
시 · 도지사	20	20	18	2					
비례대표 시 · 도의원	17	17	17						
구 · 시 · 군의 장	262	184	145	3	36	78	18	30	30

② 후보자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이번 선거에서 초청후보자 대상으로 대담 5회, 토론회 224회를 개최하였으며 구 · 시 · 군의 장 선거에서는 연설회를 19회 개최하였다. 제4회 지방선거 초청후보자 대상 토론회 등의 개최횟수와 비교하면 연설회 개최횟수가 대폭 줄어든 특징 외에는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비초청후보자 대상 토론회 등은 시 · 도지사 · 비례대표시 · 도의원 · 교육감선거에서 대담 4회, 토론회 17회를 개최하였으며 구 · 시 · 군의장선거에서 연설회를 71회 개최하였다. 이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5회, 비초청후보자 연설회 30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횟수로 비초청후보자 대상 토론회 등의 개최를 일반화하여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초청후보자 대상 토론회등의 개최방법은 해당 후보자수가 적은 관계로 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연이어 방송하는 형태로 개최된 경우가 많았다.

초청후보자의 동기가 있을 경우 비초청후보자를 포함하여 개최하는 합동토론회는 21회를 개최하여 제4회 지방선거 36회에 비해 줄어든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초청후보자의 부동의로 인한 합동토론회 무산, 선거구별 후보자 경쟁률 저하에 따른 비초청 대상 후보자 감소에서 기인하였다.

[표 2-25] 후보자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초청후보자			비초청후보자				(초청·비초청)합동		
		소개	대담	토론	소개	대담	토론	연설	소개	토론	연설
계	361	229	5	224	92	4	17	71	40	21	19
시·도지사	21	13		13	5	3	2		3	3	
비례대표 시·도의원	29	17		17	12	1	11				
구·시·군의 장	292	183	5	178	72		1	71	37	18	19
교육감	19	16		16	3		3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공영방송사가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비례대표시도의원·교육감선거 초청후보자 토론회 등만을 개최하고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등은 방송 여건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다. 반면 케이블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하는 수도권 지역 구·시·군의장선거와 공영방송사 지역총국을 이용하는 시·도지역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별 토론회 개최상황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지역에서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 횟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초청후보자 토론회 미개최 선거구는 후보자 1인 등록⁶⁾ 선거구 8곳으로 해당 선거구는 (부산)서구, (부산)남구, 옹진군, 영월군, 양구군, 영암군, 의성군, 청송군 등 8개 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이다.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등 미개최는 비초청후보자의 불참 등에서 기인하였다.

[표 2-26] 시·도별 후보자 토론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개 최 내 역						미개최 내역	
		초청대상		비초청대상		합 동			
		대담 · 토론회	방송 연설회	대담 · 토론회	방송 연설회	대담 · 토론회	방송 연설회	초청	비초청
계	361	229	0	29	63	21	19	8	6
서 울	46	26	0	0	17	0	2	—	1
부 산	23	14	0	2	2	0	3	2	—
대 구	15	6	0	1	2	4	1	—	1
인 천	16	12	0	0	4	0	0	1	—
광 주	12	8	0	3	1	0	0	—	—
대 전	14	8	0	2	4	0	0	—	—
울 산	10	8	0	1	1	0	0	—	—
경 기	46	32	0	0	10	2	0	—	2
강 원	24	19	0	1	2	0	0	2	—
충 북	17	10	0	1	1	5	0	—	—
충 남	28	19	0	1	8	0	0	—	—
전 북	22	13	0	2	3	4	0	—	—
전 남	35	19	0	3	7	0	5	1	1
경 북	30	15	0	3	1	4	5	2	—
경 남	31	16	0	9	0	2	3	—	1
제 주	4	4	0	0	0	0	0	—	—

6) 후보자 1인 등록 선거구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투표 없이 당선자를 결정함.

③ 구·시·군의 장 선거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현황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 대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초청후보자 연설회는 제4회 지방선거 48회보다 29회 감소한 총 19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사유는 ‘초청 후보자수가 1인 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가 17회(89.4%), ‘참석확인서 제출 후보자 수가 초청후보자 수 과반수 미달인 경우’가 2회로 나타났으며, ‘대담토론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례가 없었다.

이처럼 초청후보자 대상 토론회 개최가 증가한 것은 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로구청장선거 합동연설회(5. 25. C&M 강서스튜디오)

[표 2-27] 구·시·군의 장 선거 합동연설회 개최내역

(단위 : 회)

구 분	계	방송연설회			대담·토론회
		소계	합동	비초청	
제5회 지방선거	291	89	19	70	202
제4회 지방선거	262	78	48	30	184

※ 비초청후보자 연설회는 비초청후보자 모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후보자가 1인일 때 개최하며 초청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연이어 개최

[표 2-28] 구·시·군의 장 선거 합동연설회 개최 사유별 현황

(단위 : 회)

계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	참석확인서 제출 후보자 수가 초청후보자수 과반수 미달	대담·토론회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9	17	2	-

02

토론회 등의 개최일시·장소 등

1 토론회 등의 개최일시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일시 등을 통보받고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론회 개최 일시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토론회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반에 개최되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토론회 개최 물량이 많은 관계로 방송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선거운동기간 다음 날인 선거일이 임박하여 개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토론회 개최일시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후보자토론회 등은 선거기간개시일 후 5~6일부터 5일간 282회(78.1%) 중점 개최되었으며 선거기간 개시 후나 선거일에 임박하여 개최한 경우가 73회(21.9%)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비례대표국회의원·교육감선거 등은 중점 개최기간에 대부분 개최되었으나, 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 후나 선거일에 임박하여 개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최일자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직후일 경우 후보자의 토론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선거일 1~2일 전에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는 제기된 의혹·쟁점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좀 더 고려하여 개최일시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사의 사정으로 토론회 중계방송일정을 자주 변경하여 토론회 개최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표 2-29] 일자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	시·도지사	비례대표	교육감	구·시·군의 장
계	361	21	29	19	292
5월 20일(목)	5 (1.38%)	—	—	—	5
5월 21일(금)	14 (3.87%)	—	4	—	10
5월 22일(토)	2 (0.55%)	—	—	—	2
5월 23일(일)	3 (0.83%)	—	—	—	3
5월 24일(월)	41 (11.35%)	—	1	3	37
5월 25일(화)	50 (13.85%)	3	5	4	38
5월 26일(수)	70 (19.39%)	—	10	5	55
5월 27일(목)	63 (17.45%)	6	1	3	53
5월 28일(금)	58 (16.07%)	7	7	4	40
5월 29일(토)	23 (6.37%)	4	—	—	19
5월 30일(일)	12 (3.32%)	—	—	—	12
5월 31일(월)	20 (5.54%)	1	1	—	18

※ 선거기간개시일 : 5월 20일, 선거일 : 6월 2일

현재의 방송여건상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계방송 시간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1~3시 사이에 82회(22.71%)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고, 오후 11~25시 75회(20.78%), 오전 9~11시 사이가 53회(14.68%)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지사선거는 관심도와 중요성 때문에 토론방송 시청률이 높은 23시 시간대에 대부분 중계방송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13시~15시 시간대에 대부분 중계방송되었다. 구·시·군의 장 선거 토론회는 오전 9시~11시, 오후 13시~15시 시간대에도 많이 개최되어 좋은 시간대 편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0] 중계방송시간대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	시도지사	비례대표	교육감	구·시·군의 장
계	361	21	29	19	292
07:00~09:00	4 (1.1%)	—	—	—	4
09:00~11:00	53 (14.68%)	—	4	6	43
11:00~13:00	17 (4.71%)	—	—	2	15
13:00~15:00	82 (22.71%)	1	21	1	59
15:00~17:00	23 (6.37%)	—	2	—	20
17:00~19:00	34 (9.42%)	2	1	—	31
19:00~21:00	33 (9.14%)	—	—	—	33
21:00~23:00	40 (11.09%)	1	—	—	39
23:00~25:00	75 (20.78%)	17	1	10	48

한편 토론회 개최 장소는 중계방송사 스튜디오를 이용하였으나, 수도권지역의 케이블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하는 구·시·군의 장 선거 토론회 등은 케이블방송국의 스튜디오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외부장소에 토론회장을 설비하여 개최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스튜디오가 없는 16개 구위원회를 위해 고려대학교와 C&M 강서CATV에 통합스튜디오를 설치·운영하여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장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무대 배경색상이 특정 정당이 사용하는 색상과 유사할 경우 후보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방송사 세트담당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색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표 2-31] 토론회 등 개최장소 현황

(단위 : 회)

계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장소	비 고
361	325	36	외부장소 : 서울 18, 경기 14, 충남 4

② 방송사별 중계현황



[표 2-32] 방송사별 중계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중계주관방송사			
		KBS	MBC	민영	케이블
계	361 (32)	108 (13)	125 (19)	21	107
시·도지사	21 (5)	8 (3)	13 (1)	-	-
비례대표 (시·도의원)	29 (5)	17 (1)	12 (4)	-	-
구·시·군의 장	292 (17)	71 (8)	93 (9)	21	107
교육감	19 (6)	12 (1)	7 (5)	-	-

※ () : 주관방송사 외 중계방송사 수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하지만, 공영방송사가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 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중계방송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케이블방송을 통한 중계방송 현황은 107회로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해당되었고, 대전시·충청남도 지역에서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토론회 21회가 민영방송사를 통해 개최되었다.

[표 2-33] 시·도별 중계주관방송사 중계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중계주관방송사			
		KBS	MBC	민영	케이블
계	361	110	123	21	107
서울	45	2	1	0	42
부산	21	10	11	0	0
대구	14	3	11	0	0
인천	16	1	2	0	13
광주	12	5	7	0	0
대전	14	5	0	9	0
울산	10	5	5	0	0
경기	44	1	2	0	41
강원	22	13	9	0	0
충북	17	8	9	0	0
충남	28	0	5	12	11
전북	22	11	11	0	0
전남	34	20	14	0	0
경북	28	9	19	0	0
경남	30	15	15	0	0
제주	4	2	2	0	0

대담·토론회는 생방송 199회(73.5%), 녹화방송 72회(26.5%)를 실시하였으며, 연설회는 녹화방송 75(93.7%), 생방송 15회(6.3%)의 방법으로 중계방송되었다. 연설회는 화면 구성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녹화방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인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녹화방송이 많은 이유는 생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케이블 방송 이용 중계방송이기 때문이다.

[표 2-34] 시·도별 중계방법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대담·토론회		연설회	
		생방송	녹화방송	생방송	녹화방송
계	361	199	72	15	75
서울	45	5	21	0	19
부산	21	15	1	1	4
대구	14	11	0	2	1
인천	16	3	9	0	4
광주	12	10	1	0	1
대전	14	8	3	0	3
울산	10	9	0	0	1
경기	44	4	30	0	10
강원	22	20	0	1	1
충북	17	16	0	0	1
충남	28	18	2	3	5
전북	22	19	0	0	3
전남	34	19	3	2	10
경북	28	19	2	6	1
경남	30	19	0	0	11
제주	4	4	0	0	0

03

토론회 초청대상 선정 및 참석 현황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초청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가. 국회 5인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에 5인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은 5개 정당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이다.

[표 2-35]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기준일 : 2010. 5. 20. 현재)

구 분	지역구	비례대표	계
한나라당	147	22	169
민 주 당	73	15	88
자유선진당	13	4	17
미래희망연대	—	8	8
민주노동당	2	3	5
창조한국당	—	2	2

나.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받아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재통보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6개 정당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해당되었다.

[표 2-36]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정당등록일 : '10. 3. 18. 현재)

구 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 12. 19)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2008. 4. 9)	제4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2006. 5. 31)	제4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6. 5. 31)
한나라당	48.6%	37.4%	53.7%	54.0%
민 주 당	26.7% (대통합민주신당 26.1) (민주당 0.6)	25.1% (통합민주당 25.1)	31.5% (열린우리당 21.6) (민주당 9.9)	34.2% (열린우리당 24.06) (민주당 10.2)
자유선진당	—	6.8%	2.3% (국민중심당 2.3)	2.1% (국민중심당 2.1)
미래희망연대	0.06% (참주인연합 0.06)	13.1% (친박연대 13.1)	—	—
민주노동당	3.0%	5.6%	12.0%	9.4%
창조한국당	5.8%	3.8%	—	—
진보신당	—	2.9%	—	—
기독교사랑실천당	—	2.5% (기독교당 2.5)	—	—
민주공화당	0.4% (경제공화당 0.4)	—	—	—

※ 직전선거 미참여 정당 : 경제통일당, 국민참여당, 국제녹색당, 문화연합당, 사회당, 선진한국당, 자유평화당, 통일당, 평화통일당

다. 여론조사 공표 자료 수집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 선정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10. 4. 20 ~ 5. 19)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정당, 후보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현황(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고, 문화관광부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현황(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였다.

통보된 언론기관 현황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시·도위원회 별로 여론조사 수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수집대상은 여론조사·공표기간 중 여론조사의 실시와 공표가 모두 이루어진 여론조사만 해당되며, 공표시기는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행·배부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공표내용은 정당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와 토론회 개최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였다.

대상 언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상 언론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하고도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특히 수집 자료는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공표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수집대상에 포함하되,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제외하고 조사대상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언론기관에서 인용 보도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다른 초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로 초청된 후보자는 120명(15%)이 해당되며, 이 중 당선자는 14명으로 도지사 1명, 구·시·군의 장 7명, 교육감 7명으로 전체 당선자 중 5%에 해당되었다.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자 수가 많은 이유는 토론회 초청요건이 여론조사 결과 평균 100분의 5 이상 후보자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 중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로서 여론조사 결과 요건에만 해당하는 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37] 여론조사결과만으로 초청된 후보자수

(단위 : 명)

계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교육감
120	2	84	34

[표 2-38]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초청된 후보자가 당선된 선거구

구 분 (선거구수)	시·도지사 (1)	구·시·군의 장 (7)	교육감 (7)
선거구명	제주	기장군, 인제시, 홍천군, 여주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② 대담·토론회 후보자 참석 현황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경쟁률은 평균 2.5대 1로 제4회 지방선거 경쟁률 3.2대 1보다 낮았으며, 시·도지사선거는 3.4 대 1,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3.3 대 1, 구·시·군의 장 선거는 3.3 대 1, 교육감선거는 4.6대 1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수는 평균 2.6명, 비초청대상 후보자수 평균 0.9명으로 토론자수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선거방송토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부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토론 경험 부족 또는 타 후보자의 집중 공격을 우려해 토론회 참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였다.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토론회 등에서는 초청후보자의 불참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초청후보자 중 12명이 불참하였으며 비초청후보자의 경우에는 초청후보자와 별도로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개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불참한 사례가 7회 있었고 연설회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으로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1회만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여론조사결과와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비초청후보자 8명이 비초청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여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2-39] 선거별 후보자 불참 현황

(단위 : 명)

구 분	후보자수	초청후보자			비초청후보자		
		소계 (평균)	참석	불참	소계 (평균)	참석	불참
계	951	722 (2.6)	710	12	229 (0.9)	229	7
시·도지사	52	42 (2.6)	42		10 (1.2)	10	
비례대표 시·도의원	107	55 (3.4)	55		52 (4.0)	50	2
구·시·군의 장	732	572 (2.3)	560	12	160 (0.7)	155	5
교육감	60	53 (3.3)	53		7 (5.0)	7	

이번 선거에서 토론회 등에 불참한 초청후보자는 12명으로 토론회 10명, 합동연설회 불참 2명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가 불참한 토론회는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파주시, 삼척시, 증평군, 창녕군 선거구의 구·시·군장의 선거이며 불참한 합동연설회는 서초구, 경주시 선거구의 구·시·군장 선거이다.

토론회 초청후보자 등의 토론회 참석은 의무이다. 지난 선거에서 대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후보자들은 토론회를 강력히 원하지만, 우세에 있거나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은 토론회 참석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다.

[표 2-40] 토론회별 후보자 불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참석자수			불참자수		
		소계	초청	비초청	소계	초청	비초청
계	951	932	710	222	19	12	7
대담·토론회	785	773	657	116	12	10	2
합동방송연설회	166	159	53	106	7	2	5

[표 2-41] 초청후보자 중 토론회 등에 불참한 후보자수

구 분	토론회 불참자	연설회 불참자	비 고
불참자수	10명	2명	7명
해당 선거구명 (구·시·군의 장 선거)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파주시, 삼척시, 증평군, 창녕군	송파구, 경주시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성남시, 오산시, 파주시, 창녕군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 시작할 때 알리도록 하였으나, 구속력이 약하여 과태료⁷⁾ 부과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초청후보자 중 불참자가 구·시·군의장선거에서 12명(토론 10명, 연설 2명)으로 나타나 제4회 지방선거 불참자 44명⁸⁾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초청후보자의 정당별 대담·토론회 불참자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무소속 3명으로 나타났고 연설회는 국민중심연합과 미래연합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2-42] 초청후보자 중 각 정당별 불참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한나라당	국민중심연합	미래연합	무소속
계	12	7	1	1	3
대담·토론회	10	7	—	—	3
연설회	2	—	1	1	—

7)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매회 400만원 부과

8) 제4회 지방선거 토론회 등 개최형태에 따른 불참후보자수 : 토론회 24명, 연설회 11명, 후보자 불참 등 에 따른 토론회 등 미개최 9명

초청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정당한 사유는 i)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ii)질병·부당 등으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iii)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초청후보자의 토론회 불참 사유는 사고 및 질병 3명, 흡집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2명, 선거운동 일정 2명, 구속수감 1명, 토론주제 불만 1명, 후보단일화 불만 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구속수감, 교통사고, 건강상의 이유만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43] 역대 선거별 토론회 불참사유

선 거 명	토론회 불참 현황	
	후보자수	사 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명	사고 및 질병(3), 흡집내기식 토론회 변질우려(2), 선거운동일정(2), 구속수감(1), 토론주제 불만(1), 후보단일화 불만(1)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65명	개인사정(40), 타 후보 불참(8), 사고 및 질병(7), 선거운동일정(7), 정당행사참석(3)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없음	-

③ 참석후보자수별 대담·토론회 개최 현황

선거별로 토론자가 3인(114회, 42.4%)인 토론회가 가장 많았으며 2인(82회, 30.0%) 토론회가 뒤를 이었고, 전체 선거별로 토론자가 4인 이하인 경우가 260회(9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토론자수는 상대적으로 토론자수가 적었으나 교육감선거 토론자수는 5인 이상인 경우가 3회 있었으며,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토론자가 5인 이상인 경우 6회 나왔다.

[표 2-44] 선거별 대담·토론회의 참석 후보자수

(단위 : 회)

구 분	계	대담·토론회 참석 후보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계	273 (100%)	11 (4.03%)	82 (30.04%)	116 (42.49%)	54 (19.78%)	8 (2.93%)	2 (0.73%)
시·도지사	21	3	6	11	1	0	0
비례대표 시·도의원	29	0	1	10	17	1	0
구·시·군의 장	204	5	73	88	32	6	0
교 육 감	19	3	2	7	4	1	2

[표 2-45] 시·도별 대담·토론회 참석 후보자수

(단위 : 회)

구 분	계	대담·토론회 참석 후보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계	273	11	82	116	54	8	2
서 울	26	2	13	9	1	1	0
부 산	16	0	7	6	1	1	1
대 구	11	1	4	3	2	1	0
인 천	12	0	4	7	1	0	0
광 주	11	1	3	2	4	1	0
대 전	10	1	0	7	2	0	0
울 산	9	0	4	3	2	0	0
경 기	35	0	14	15	4	2	0
강 원	20	1	5	8	6	0	0

구 분	계	대담·토론회 참석 후보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충 북	17	0	2	8	7	0	0
충 남	20	0	2	11	7	0	0
전 북	19	0	5	8	5	1	0
전 남	22	2	7	8	5	0	0
경 북	22	2	9	8	3	0	0
경 남	19	1	3	10	3	1	1
제 주	4	0	0	3	1	0	0

04 소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 활용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를 위하여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방식 및 주제에 대한 사전검토 논의로 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방송사 관계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하여 방송중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받을 수 있었다.

1 준비소위원회 운영

토론의제·진행방식의 결정(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회의내용·결과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그 운영결과를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소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일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위원 개인일정으로 인해 회의개최가 어려워 조찬회의 중심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었으나, 가급적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토·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② 전문위원 활용 등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체 실정에 따라 제5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준비와 관련하여 자문(전문)위원을 정비하였다. 이에 방송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의 중계방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담당 프로듀서 등 제작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하였다.

전문위원들은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토론주제·진행방식에 관한 사항 △토론회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토론회의 기법 및 모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시 자문하고 있다.

05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계·방송계 등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위원 또는 중계방송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특히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사와 각종 학회 등에서 추천된 자를 사회자 풀로 구성하여 사회자를 확보하지 못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회자는 토론회마다 1인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사회자를 확보하였다.

선정된 사회자가 토론진행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상의 실수를 범하거나 후보자의 위법 발언 등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를 막기 위하여 선정된 사회자를 설명회, 토론진행표·시나리오 작성 등에 참여시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토론회 진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대부분이 사회자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개최된 361회의 토론회 등에서 총 346명의 사회자가 선정되었으며 일부 연설회(15회)는 사회자 선정 없이 자막으로 후보자를 안내하였다.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학계(53.2%)와 방송언론계(37.6%)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79.2%가 토론회 등의 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사회자 직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회자 직업					
	계	학계	방송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타
사회자수	346	184	130	3	7	22
비율	100%	53.2%	37.6%	0.8%	2.0%	6.4%

※ 사회자 없이 토론회 등 진행 : 총15회

[표 2-47] 사회자 선거방송토론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 분	계	진 행 경 험	
		유	무
사회자수	346	274	72
비율	100%	79.2%	20.8%

이번 선거에서는 토론회 사회자가 특정정당에 치우친 인물임을 이유로 후보자 측에서 교체를 요구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자를 교체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 전에 사회자가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06

토론진행방식 결정

선거방송토론에서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진행방식으로, 이를 작성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구상할 때에는 후보자의 수, 토론시간, 질문과 답변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자 간 공정한 발언기회 부여 및 효율적 시간운영에 관한 방식과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심층토론이 가능한 진행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짧은 발언시간 내에서 질문·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정책·공약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나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대담이 아닌 초청대상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주제로 다루는 진행방식은 사회자와 후보자 질문 후 후보자의 보충질문, 모두발언(공약발표) 후 보충질문, 주도권 등 후보자 간 상호 토론 형식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전문)위원의 심의 및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런 진행방식들은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며 세부규칙을 활용하여 유력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토론주제를 후보자 공약으로 선정한 후 각 후보자에게 상대후보자의 공약을 검토한 후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의 충실도와 함께 후보자별 균형성을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표 2-48] 토론진행방식 유형

구 분		진 행 방 식	
토론 개시		◎ 기초연설	후보자의 출마소감, 핵심공약 등
본 토 론	질문 (문제제기) 주체별	◎ 사회자 질문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공통(개별)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식(위원회에서 질문 작성)
		◎ 후보자 질문 (후보자 상호 토론)	후보자가 상대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구 분		진 행 방 식	
		※ 후보자 주도권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후보자당 주도권 4~6분 부여)
		※ 후보자 모두발언(공약발표)	후보자 모두발언(공약발표) 후 발표내용을 주제로 후보자 간 토론하는 형식
		㉠ 혼합형	사회자 질문에 후보자 보충질문 혼합
	질문형식	㉠ 개별질문	후보자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질문(단일질문형 / 보충질문형)
		㉠ 공통질문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문(단일질문형 / 보충질문형))
	답변자 지정방법	㉠ 사전지정형	추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형식
		㉠ 자유지정형	토론현장에서 자유롭게 지정하는 형식
	토론 종료	㉠ 맺음말	유권자에 대한 지지호소, 토론내용 정리보완 등

이번 선거에서 토론진행방식은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상호 토론 방식의 교차 구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가장 단순한 진행방식 유형으로서 주제에 대한 후보자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 토론 시작부분, 상호 토론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중간부분, 마지막 질문 등으로 사용하였다.

상호 토론 방식은 사회자·후보자 질문 후 보충질문·답변, 후보자 간 질의와 문답이 연속될 수 있도록 토론자의 총 발언시간을 융통성 있게 제한하는 시간총량제에 의한 후보자 주도권형, 모두발언(공약발표) 후 보충질문 활용 등 다양한 토론 포맷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적용하여 사용하였다.

[표 2-49] 토론회 진행방식 사용 내역

(단위: 회)

구분	사회자질문				후보자주도형						기타
계	공통 질문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개별 질문		모두 발언 (공약 발표) 후 질문	주도권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보충질문			
1,706	835	73	163	108	4	6	19	106	111	251	30

그러나 시간총량제에 의한 주도권방식의 경우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바람직하지 못한 토론자세로 질의시간을 자기 홍보에 할애하거나 강의식 설명으로 일관할 경우, 상대방 흡입내기 및 인신공격을 할 경우 시간조절에 실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실제 토론회 운영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편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사회자 개별질문 후 답변에 대한 상대 후보자의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 후보자 공약 및 서울시 현안에 대한 주도권 토론 등 상호 토론방식 구성으로 후보자 정책·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인천시장선거 후보자 토론에서는 후보자 공약발표 후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으로 후보자 공약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였으며, 경남도지사선거 후보자 토론은 후보자 주도권으로 자질검증과 공약검증을 주제로 실시하고 사회자 공통질문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행방식으로 구성하여 후보자 간 정책 차이를 드러내어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대한 시청률이 저조한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성이 치밀하고 생동감 있는 토론진행방식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2-50]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토론 진행방식

진행방식		
1	기조연설	한명숙 ⇨ 오세훈 ⇨ 지상욱(각 1분 30초)
2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I: 서울시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오세훈 → 지상욱 → 한명숙 답변(각 1분 30초)
3	사회자 개별질문 후 반론 / 재반론	<주제 II: 서울시 발전 방안> ①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지상욱 후보자 답변(1분) ⇨ 한명숙/오세훈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지상욱 후보자 재반론(2분) ②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한명숙 후보자 답변(1분) ⇨ 오세훈/지상욱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명숙 후보자 재반론(2분) ③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오세훈 후보자 답변(1분) ⇨ 지상욱/한명숙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오세훈 후보자 재반론(2분)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주도권 토론	<주제 III: 공약 검증>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한명숙/오세훈/지상욱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주도권 토론(각 7분) ※ 반드시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회 이상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1분)을 보장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주도권 토론	<주제 IV: 뉴타운 및 재개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한명숙/오세훈/지상욱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주도권 토론(각 7분) ※ 반드시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회 이상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1분)을 보장
6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V: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오세훈/지상욱/한명숙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7	마무리 발언	지상욱 ⇨ 한명숙 ⇨ 오세훈(각 1분 30초)

[표 2-51] 인천시장선거 후보자 토론 진행방식

진행방식		
1	기조연설	안상수 ⇨ 송영길 (각1분)
2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I: 대기 및 해양오염 개선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송영길 ⇨ 안상수 답변(각 2분) <주제 II: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상수 ⇨ 송영길 답변(각 2분)
3	공약발표 / 질문 (개별 · 보충)	• 안상수 후보자 공약발표(2분) - 송영길 후보자 1차(공약1)질문(1분) ⇨ 안상수 후보자 답변(2분) - 송영길 후보자 보충질문(1분) ⇨ 안상수 후보자 답변(2분) - 사회자 Bridge(30초) - 송영길 후보자 2차(공약2)질문(1분) ⇨ 안상수 후보자 답변(2분) - 송영길 후보자 보충질문(1분) ⇨ 안상수 후보자 답변(2분) • 송영길 민주당 후보자 공약발표(2분) - 안상수 후보자 1차(공약1)질문(1분) ⇨ 송영길 후보자 답변(2분) - 안상수 후보자 보충질문(1분) ⇨ 송영길 후보자 답변(2분) - 사회자 Bridge(30초) - 안상수 후보자 2차(공약2)질문(1분) ⇨ 송영길 후보자 답변(2분) - 안상수 후보자 보충질문(1분) ⇨ 송영길 후보자 답변(2분)
4	후보자 신상발언	후보자 신상발언 송영길 ⇨ 안상수 발언(각 30초)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상수 ⇨ 송영길(각 2분)
6	마무리 발언	송영길 ⇨ 안상수(각 1분)

[표 2-52] 경남도지사선거 후보자 토론 진행방식

진행방식		
1	기조연설	이달곤 ⇨ 김두관(각 1분 30초)
2	주도권 토론	<주제 : 자질검증 > • 주도권 토론 (각 10분) ※ 주도권을 쥔 후보가 10분 동안 자질에 한해 질의응답의 토론 시간
3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지역현안 ①>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김두관 ⇨ 이달곤 답변(각 1분 30초)
4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지역현안 ②>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이달곤 ⇨ 김두관 답변 (각 1분 30초)
5	주도권 토론	<주제 : 공약검증 > • 주도권 토론(각 10분) ※ 주도권을 쥔 후보가 10분 동안 공약에 한해 질의응답의 토론 시간
6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일반주제 ①>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김두관 ⇨ 이달곤 답변(각 2분)
7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 일반주제 ②> • 사회자 공통질문(1분) ⇨ 이달곤 ⇨ 김두관 답변(각 1분 30초)
8	마무리 발언	김두관 ⇨ 이달곤 답변(각 2분)

07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토론회의 주제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이번 지방선거토론회 의제 수집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적인 이슈, 찬·반 대립이 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이용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단체 추천 20%, 후보자공약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방법으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 제5회 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 참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상급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토론의제는 여론조사, 전문가단체 추천,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사항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다만 관내 학회, 각종 사회단체 등에 의제 추천의뢰 시 의제가 부실하거나 추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의제 수집을 위한 여론조사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전화면접 등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시·군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 토론회 등의 주제와 질문사항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대구시·전북도·경북도·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토론의제를 수집하였다.

토론의제 선정 시 일부 주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등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 측에서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이 불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 측에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은 여론조사와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 등을 토대로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 분야별 의제 선정 시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현안과 관련된 지역의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정된 토론주제는 각 부분별 지역현안과 후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지역현안 중에서는 경제분야가 21.5%로 다소 많이 선정

[표 2-53] 시·도별 토론의제 수집방법

(단위 : 개)

구 분	계	여론조사	전문가단체 추천	신문방송 여론매체	후보자 공약	기타
계	9,430	1,024	2,017	4,140	1,316	1,322
비 율	100%	11%	20%	43%	13%	13%
서 울	1399	492	64	409	193	241
부 산	614	60	21	400	90	40
대 구	492	0	26	240	84	142
인 천	436	16	72	311	27	10
광 주	67	28	4	8	17	10
대 전	24	69	179	135	32	164
울 산	1487	200	755	436	101	7
경 기	775	1	76	296	159	68
강 원	926	10	96	669	82	89
충 북	237	29	46	91	24	47
충 남	511	62	73	214	65	97
전 북	372	0	66	241	58	7
전 남	326	26	23	146	36	80
경 북	494	0	137	219	76	62
경 남	744	36	102	290	165	151
제 주	526	0	277	35	107	107

되었으며, 사회분야 16.8%, 지방자치분야 13.7%, 교육분야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4] 시·도별 주제 선정내역

(단위 : 개)

구 분	계	지역현안					후보자공약	개인 신상	기타
		지방자치	경제	사회	교육	기타			
계	2261	308	497	385	291	362	299	74	69
비율	100%	14%	22%	17%	13%	16%	13%	3%	3%
서울	311	53	41	50	37	46	52	3	29
부산	113	14	26	22	16	13	18	0	0
대구	121	13	23	18	21	8	17	6	15
인천	97	14	25	22	11	12	9	4	0
광주	67	5	12	13	11	9	15	0	2
대전	44	7	9	11	6	6	2	0	3
울산	69	9	15	16	8	11	10	0	0
경기	311	40	54	51	43	74	50	17	8
강원	133	11	32	19	15	18	27	11	0
충북	103	21	29	12	14	20	2	5	0
충남	140	25	29	29	16	16	25	0	0
전북	87	14	39	14	8	4	6	2	0
전남	172	31	44	29	24	19	19	6	2
경북	246	28	54	34	29	46	39	10	6
경남	202	18	54	34	24	50	8	10	4
제주	45	5	11	11	8	10	0	0	0

08 토론회 진행

1 원활한 토론회 진행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철저한 토론회 관리 준비를 바탕으로 지역현안 등 다양한 토론의제 수집 및 선정, 상호 토론 형식의 진행방식 개발·활용 등으로 토론회 진행은 사건사고 없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다만 토론회 사회자가 특정정당에 편향된 인물임을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하거나,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변경을 요구하는 등 후보자 측의 항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부 케이블방송국 모니터실의 열악한 시설로 인한 촬영기자 출입금지로 언론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2 토론회 다시보기 동영상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제공 화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 영상물을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영상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메뉴를 통해 제공하였다.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제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 4월 14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간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동영상 서버 임대 및 메뉴 개편, 방송국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로의 변환시간 단축방안 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를 임대하여 동영상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메뉴를 구성하고, 방송영상을 중계방송사로부터 받거나 방송 중 PC에 녹화·저장하거나,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링크하는 방법(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등 실정에 맞게 게시하였다. 중앙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다시보기 화면 링크 및 전국 후보자 토론회 일정을 게시하여 전체 토론회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다시보기 제공에 대한 민원소지를 해소하였으며, 방송사 중계방송 시 ‘다시보기’ 제공사항에 대한 자막안내 요청, 보도자료 제공 등 및 각종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③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실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 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또는 자막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시도비례대표·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자막을 제공하였고 그 외 지역총국 중계방송 토론회 등은 수화통역을 제공하였다.

[표 2-55]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방법

(단위 : 회)

계	수화통역	자막제공
361	311 (86.4%)	50 (13.6%)

‘자막방송’은 방송사의 자막송출 시스템 설비와 자막 속기작업 등이 필요하나, 공영방송사의 지역총국은 자막송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막방송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역총국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수화방송(86.4%)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송사가 자막방송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 권유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09 시청률 현황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의 시청률⁹⁾은 주요 시간대에 방송된 시·도지사선거가 평균 3.57%로 다른 선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감선거는 평균 2.1%,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평균 1.7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경기·강원·경남지역 시·도지사 선거는 높은 시청률을 나타낸 반면 특정 후보자 당선에 유력시 되었던 전북·전남·광주지역 시·도지사선거는 시청률이 저조하였다. 이는 방송시간대 못지않게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토론회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¹⁰⁾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6] 시청률과 득표율 비교

상위 시청률 순	1·2간 득표율차	하위 시청률 순	1·2간 득표율차
경남도지사 (7.8%)	7.01	전북도지사 (0.6%)	50.47
대전시장 (7.4%)	5.22	전남도지사 (0.8%)	54.91
강원도지사 (6.7)	8.73	광주시장 (1.0%)	42.51
서울시장 (6.5%)	0.6		
경기도지사 (5.6%)	4.41		

9) 시청률 조사기관별 조사지역

- AGB닐슨미디어리서치 : 서울, 경기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마산, 전주, 청주, 구미,
- TNS미디어코리아 : 서울, 인천 포함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 울산·제주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내역이 없음.

10) 2010년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방송시간, 토론자 직위) : 1차(10시) 원내대표 3.34%, 2차(10시) 정책위의장 2.8%, 3차(11시) 당대표 5.1%

[표 2-57] 시청률 현황

시·도	선거명	조사기관	시청률	비 고 (방송시간)
서울	서울시장	AGB	6.5%	23:00 ~
	비례시의원	AGB	1.0%	14:10 ~
	교육감	TNS	1.7%	10:00 ~
부산	부산시장	AGB	2.5%	23:10 ~
	비례시의원	AGB	0.9%	13:50 ~
	교육감	AGB	1.2%	23:30 ~
대구	대구시장	AGB	2.5 %	23:10 ~
	비례시의원	AGB	0.2 %	14:00 ~
	교육감	AGB	2.3 %	23:05 ~
인천	인천시장	AGB	4.1%(수도권), 3.7%(서울)	23:10 ~
	비례시의원	AGB	1.2%(수도권), 1.2(서울)	14:10 ~
	교육감	AGB	0.8%(수도권) 0.9%(서울)	10:00 ~
광주	광주시장	AGB	1%	22:55 ~
	비례시의원(초청)	AGB	0.4%	14:00 ~
	비례시의원(비초청)	AGB	0.6%	18:50 ~
	교육감	AGB	0.8%	10:00 ~
대전	대전시장	AGB	7.4%	23:00 ~
	비례시의원	AGB	0.6%	14:10 ~
	교육감	AGB	1.7%	10:00 ~

시·도	선거명	조사기관	시청률	비 고 (방송시간)
경기	경기도지사	AGB	5.6%	23:10 ~
	비례도의원	AGB	0.55%	14:10 ~
	교육감	AGB	1.8%	10:00 ~
강원	강원도지사	AGB	6.7%	23:10 ~
	비례도의원(초청)	AGB	2.7%	14:00 ~
	비례도의원(비초청)	AGB	7.6%	10:00 ~
	교육감	AGB	6.6%	23:10 ~
충북	충북도지사	AGB	1.1 %	23:00 ~
	비례도의원(초청)	AGB	2.0 %	23:10 ~
	비례도의원(비초청)	AGB	0.3 %	13:40 ~
	교육감	AGB	2.4 %	23:00 ~
충남	충남도지사	AGB	1.9 %	23:05 ~
	비례도의원(초청)	AGB	0.2 %	10:00 ~
	비례도의원(비초청)	AGB	0.2 %	10:00 ~
	교육감	AGB	0.9 %	23:10 ~
전북	전북도지사(초청)	TNS	0.6%	17:15 ~
	전북도지사(비초청)	TNS	0.4%	17:50 ~
	비례도의원(초청)	TNS	4.4%	14:10 ~
	비례도의원(비초청)	TNS	0.9%	14:10 ~
	교육감	TNS	0.7%	23:00 ~

시·도	선거명	조사기관	시청률	비 고 (방송시간)
전남	전남도지사(초청)	AGB	0.8%	23:00 ~
	전남도지사(비초청)	AGB	0.2%	13:00 ~
	비례도의원(초청)	AGB	0.7%	14:10 ~
	비례도의원(비초청)	AGB	0.7%	14:10 ~
	교육감(초청)	AGB	0.9 %	23:00 ~
	교육감(비초청)	AGB	0.4%	12:40 ~
경북	경북도지사(초청)	AGB	2.4%	23:00 ~
	경북도지사(비초청)	AGB	0.8%	10:00 ~
	비례대표도의원	AGB	1.1%	14:10 ~
	교육감	AGB	0.5%	10:00 ~
경남	경남도지사	AGB	7.8 %	23:00 ~
	비례도의원(초청)	AGB	7.6 %	14:10 ~
	비례도의원(비초청)	AGB	0.7 %	14:10 ~
	교육감	AGB	7.6 %	23:00 ~

제 03 장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정당정책토론회 관리일반 제1절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제2절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제3절

제01절

정당정책토론회
관리일반

『정당법』에 의한 정책토론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개최한다. 정당 대상 정책토론회는 근거법에 따라 개최시기, 초청 정당 선정기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3-1] 정당 대상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토론회명	개최시기	개최 횟수	초청대상 정당	토론자	중 계 방송사	근 거 법 률
공직선거정책 토 론 회	임기만료선거일전 90일부터 ~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전일까지	월1회 이상	• 소속국회의원 5명 이상 • 직전선거(대선, 비례국선, 비례 시도선거) 득표율 100분의 3 이상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 하는 자	공 영 방송사	『공직 선거법』 제82조의 3
정당정책 토 론 회	임기만료선거일전 90일부터 ~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전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앙당의 대 표자· 정책연 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공 영 방송사	『정당법』 제39조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정당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2회(7. 16, 11. 16) 개최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같이 KBS·MBC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하였고 SBS(일부 지역 민영방송사 포함)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녹화로 방송하였다. 토론주제는 “경제 활성화, 성범죄 예방”, “서민경제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매회 2개씩 선정하였고, ‘공통질문 ⇨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 형식으로 구성하여 토론했었다.

정책토론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초청, 각 정당의 정책 등의 상호 비교·검증을 위한 2010년도 정당정책토론회를 총 2회 개최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은 [표 3-2]와 같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직원별 사무분장을 통한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공영방송사 편성·제작관계자 및 각 정당의 토론회 실무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추진하였다.

[표 3-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개최일시	2010. 7. 16(금) 10:00~12:00(120분)	2010. 11. 16(화) 23:20~01:2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토 론 자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경 제 · 사 회	경 제 · 복 지
사 회 자	노 동 일(경희대 교수)	정 혜 정(방송인)
중계주관방송사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SBS 중계방송	

제02절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01 개최일시 · 장소 등 선정

토론회의 개최일시 · 장소 등 결정은 공영방송사(KBS, MBC)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 · 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협의하였으며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접수받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세 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9월 이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9월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 개최는 정기국회 일정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제1차 토론회와 하반기 중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의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인 7월 16(금)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조기에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에 따라 정당에도 준비를 안내하여 7월 16일(금) 10:00 ~ 12:00 KBS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그러나 중계방송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결정되어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영방송사 외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SBS와 협의하여 개최당일 13시 30분

부터 녹화 중계하도록 결정하였고, 토론회 개최 전일에 ‘연합뉴스’에서 인터넷 중계 의사를 밝혀 주관 방송사와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주관 방송사 내 의사결정 시간이 부족하여 인터넷 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향후에는 토론회 개최 공표 후 ‘연합뉴스’, ‘YTN’, ‘국회방송’ 등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주관방송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중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02

토론자(참석대상 정당)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7. 16. KBS)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정당은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장 최근에 경상보조금¹¹⁾을 지급받은 정당이다.

- 11) i)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
- ii)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초청정당은 보조금배분 대상 8개 정당으로 결정하였고,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미래희망연대’를 제외한 7개 정당이 모두 참석하였다. 토론자는 당초 ‘원내대표’로 검토하였으나, 6.2지방선거 의석 획득 결과의 영향으로 일부 정당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등 ‘원내대표’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 위의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토론회를 무리 없이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일부 정당에서 토론분야 전문성, 다른 정당과의 직위 고려, 당대표 경선 출마, 국회의원재선거 입후보 등의 사유로 ‘정책위의장’이 아닌 하위 직위자의 참석승낙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직위가 낮아짐으로써 토론자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원회가 지정한 직위나 또는 상위 직위자가 참석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협의노력이 필요하다.

[표 3-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구분	소속 정당	직 위	성 명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한 나 라 당	정책위의장	이 종 구
	민 주 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이 용 섭
	자 유 선 진 당	정책위의장	임 영 호
	민 주 노 동 당	정책위부의장	이 의 엽
	창 조 한 국 당	정책연구소장	이 벽 규
	진 보 신 당	정책위부의장	김 석 연
	국 민 중 심 연 합	정책위의장	김 환 철

03

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제1차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전체 위원회의는 3회를 개최하여 일시·장소, 진행방식, 토론주제, 사회자 및 질문사항을 단계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정하였다.

또한 전체위원회의 결정 전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 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준비

[표 3-4]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윤상일, 김형준	의결 후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토론주제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회의를 1회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3-4]와 같다.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로부터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였으며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04 사회자 선정

각종 토론회의 사회 경험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사회자 후보군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동영상 등을 확보·제공하는 등 새로운 사회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는 각 위원이 추천한 18명에 대한 동영상과 경력을 검토하여 준비소위원회에서 4명을 선발하고 승낙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위원회의에서 사회자 선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발굴한 사회자를 위하여 사회자용 선거방송토론 매뉴얼을 제공하여 토론성과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자도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사항과 대본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자가 토론회 전반을 이해한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경직된 진행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회자가 발언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세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3-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구 분	토 론 분 야	사 회 자	
		성 명	전 공
제1차	경제·사회	노 동 일 (경희대교수)	법학

05 토론회제 수집 및 주제 선정

1 토론회제 수집

토론회의 주제는 먼저, 국내 유명 리서치 회사에 토론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 및 이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종 단체 등에 주제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의제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추천(9건), 단체추천(22건), 전문위원추천(8건), 일반 500명 전화면접 조사를 통한 토론회제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다만 8개 정당과 85개 단체에 주제와 질문사항을 요청하였으나 4개 단체와 3개 정당에서만 토론회제를 추천하였고, 해당 정당·단체의 주장과 입장에 치우친 토론회제를 추천해 아쉬움이 남았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사회분야 등에 대한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표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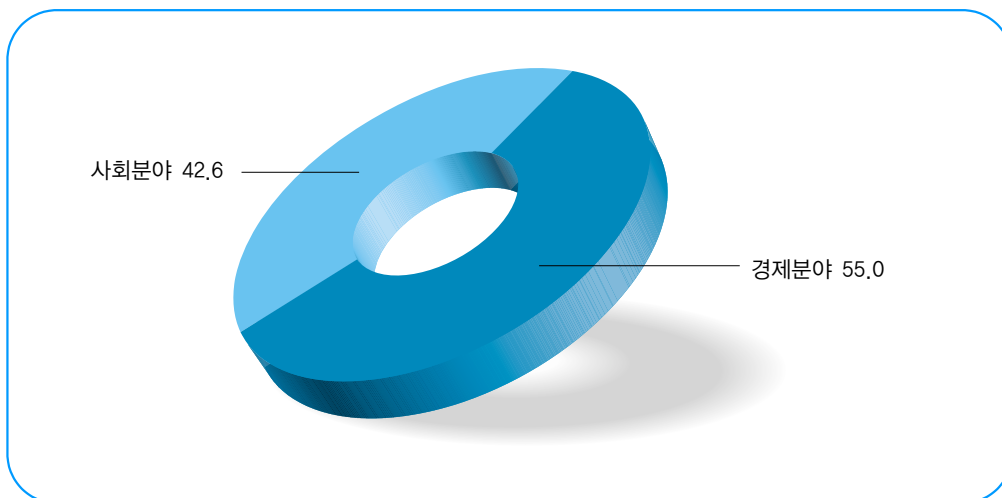
[표 3-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500명
표본추출방법	성 / 연령 / 지역별 비례할당 및 치계적 추출법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4\%$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6월 29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4\%$ 이다. 국민이 토론 주제로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답한 분야([그림 3-7]) 중 ‘경제분야’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분야’(42.6%) 순이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43.4%), 일자리 창출방안(25.3%), 청년실업 문제(15.2%), 비정규직 노동문제(6.6%), 부동산 관련 정책(5.5%), 재정 건전화 대책(2.5%) 등으로 나타났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방안(38.0%), 아동

[그림 3-7]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



성폭력 방지 대책(24.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8.0%), 검찰·경찰 개혁방안(9.8%), 전시작전권 환수연기논란(8.0%) 등으로 나타났다.

[표 3-8] 경제 및 사회 분야에 대한 응답률

경제 분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문제	부동산 관련 정책	재정 건전화 대책
응답률	43.4%	25.3%	15.2%	6.6%	5.5%	2.5%
사회 분야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방안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검찰, 경찰 개혁방안	전시작전권 환수연기 논란	
응답률	38.0	24.3	18.0	9.8	8.0	

② 토론 주제 선정

여론조사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제1주제 경제분야는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로 선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논점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사회분야는 제2주제는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선정하여 성범죄의 사전예방 중요성 인식, 안전망 확충, 예산확보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청자에게 제시되도록 하였다.

다만 ‘성범죄’ 관련 주제는 최근 사회적 주 관심사로 부각되어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특별한 쟁점이 없어 토론이 밋밋하게 진행되고 긴장감이 떨어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③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질문사항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의 요지는 각 정당에 사전 통지되었다.

06

토론 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은 토론의 성격과 참석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의 공정성·적합성 등을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앞서 개최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방식인 시간총량제 토론방식(자유토론형)을 재도입·활용함으로써 토론회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2개의 토론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맺음말’의 기본 형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에서도 토론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2주제 주도권토론은 정당 간 쟁점이 없어 주도권토론 발언시간을 제1주제에 비하여 1분 줄이는 것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자유토론의 세부적인 규칙으로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시간이 많이 남은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하도록 하였다. 주도권토론의 세부규칙은 반드시 상대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최소 답변 시간(약 40초)을 보장하도록 하여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표 3-9]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제1주제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A/B/C/D/E/F/G 답변(각 1분)	7분 30초
자유토론	• B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3분) :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시간이 많이 남은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21분
주도권토론	• C/D/E/F/G/A/B 주도권토론(각 3분) : 반드시 상대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40초) 보장	21분

제2주제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D/E/F/G/A/B/C 답변(각 1분)	7분 30초
자유토론	• E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3분) :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시간이 많이 남은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21분
주도권토론	• F/G/A/B/C/D/E 주도권토론(각 2분) : 반드시 상대 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40초) 보장	14분
맺음말	• G/A/B/C/D/E/F(각 1분)	7분

07

설명회 개최 및 홍보

1 설명회 개최

토론회 개최사항 공표 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토론 주제·진행방법, 질문사항 요지, 토론회 진행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첨하였으며, 추첨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첨순서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첨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앞서 개최되었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주도권토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토론회 진행이 부드럽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토론진행방식 각 포맷별로 타이머를 운용하여 시연하고, 지난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영상을 발췌하여 설명회에서 다시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이 진행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토론자의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자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정당 등에서 방문·안내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② 토론회 홍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위원회·선관위·정당 등 홈페이지 팝업 게시, e-선거정보 수신자 14만여 명 이메일 발송, 행정학회 등 110개 단체 안내, 선거연수원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개최 전에는 KBS ‘라디오 뉴스’ 2회, 연합뉴스·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 인터넷 보도, MBC ‘100분토론’ 홀림자막, 토론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개최 후에는 KBS TV ‘뉴스광장’, 머니투데이·뉴시스·연합뉴스에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08

토론회 진행

토론회 개최 장소는 주관방송사 스튜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방송사 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개최 장소를 품격 있게 설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세트 배경의 상부는 청색으로, 하부는 보라색으로 구성하여 산뜻하면서도 차분한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토론자 전면엔 원형의 구조물을 설비하여 전체 화면에서 타이틀과 위원회명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토론자 좌석을 반원 형태로 중앙에 설치하고 사회자 좌석은 ‘A’ 토론자 끝에 별도 배치한 결과 발언권 지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토론회 개최 2시간 전에 토론회장 세트 설비상태와 타이머 설치·운영, 조명 세팅 및 마이크 테스트 등 제 분야에 대한 점검이 리허설 전까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토론자 리허설 후 사회자가 직접 토론자에게 카메라·타이머 위치와 운용방법, 자유토론 발언권 신청 방법, 주도권토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생방송 중 스튜디오 출입이 잦아 직원을 입구에 배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대학생 20명, 일반 국민 7명 등 총 27명으로 토론평가단을 운영하고, 정당관계자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의견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토론자가 ‘주도권토론’에서 상대 토론자 지명·질문 없이 발언을 마치거나, 2명에게 동시에 질문하여 발언시간 종료로 나머지 1명이 답변을 못하는 등 일부 진행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흡한 진행 사례를 정리하여 설명회 안내 자료나 사회자 매뉴얼에 추가로 포함하고, 지명·질문 없이 ‘주도권토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회자가 바로 개입하여 진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09 토론회 시청률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정책토론회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정책위의장 등이 경제분야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나 토론자에 대한 낮은 인지도, 토론의 역동성 저하, 낮 시간 개최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에 방송사 편성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시의 적절한 의제선정 및 다양한 진행방식 도입 등의 노력도 같이 요구되었다.

[표 3-1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단위 : %)

조사기관	KBS1	MBC	SBS
AGB닐슨미디어리서치	1.9	1.3	0.5
TNS미디어코리아	1.5	0.5	0.5

제03절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0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0 광주우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으로 인해 방송편성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 중인 11월 16일(화)에 정당의 대표를 초청하여 개최하기로 중계방송사와 최종 협의하고 10월 20일 제1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다. 당대표 토론으로 인해 밤 11시간대 토론방송 프라임시간대로 방송시간에 편성협의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당 대표’ 토론이 무산되어 방송사의 편성팀과 방송시간에 관하여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협의 끝에 당초 편성된 시간대로 중계방송할 수 있었다.

02 토론자(참석대상 정당) 선정

제2차 토론회 초청정당은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배분 대상 9개 정당으로 결정하였다. 2차 토론회는 2010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각 정당의 대표를 초청

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위의장’ 참석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토론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각 정당에서 토론분야 전문성, 다른 정당과의 직위 고려 등의 사유로 ‘정책위의장’이 아닌 하위 직위자의 참석승낙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직위가 낮아짐으로써 토론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11. 16. MBC)

[표 3-1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구분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제2차	한 나 라 당	정책위부의장	이 종 구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병 헌
	자유선진당	국회 예결위위원	이 상 민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	김 세 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 의 엽
	창조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공 성 경
	진보신당	부 대 표	윤 난 실
	국민중심연합	대 변 인	김 광 식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유 시 민

03

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제2차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전체 위원회의는 3회를 개최하여 일시·장소, 진행방식, 토론주제, 사회자 및 질문사항을 단계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선정하였다.

또한 전체위원회의 결정전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 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토론주제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회의를 1회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윤상일, 김형준	의결 후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04

사회자 선정

각 위원이 추천한 11명에 대하여 준비소위원회에서 동영상과 경력을 검토하여 3명을 선발하고 승낙 여부를 확인하여, 사회자 선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사회자용 매뉴얼을 미리 작성·제공하여 토론성격과 진행방식을 이해시키고, 질문사항 등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토론회 전반을 이해한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사회자가 ‘주도권토론’에서 토론자의 토론순서를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3-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구 분	토 론 분 야	사 회 자 성 명
제2차	경제·사회	정 혜 정 (방송인)

05 토론회제 수집 및 주제 선정

1 토론회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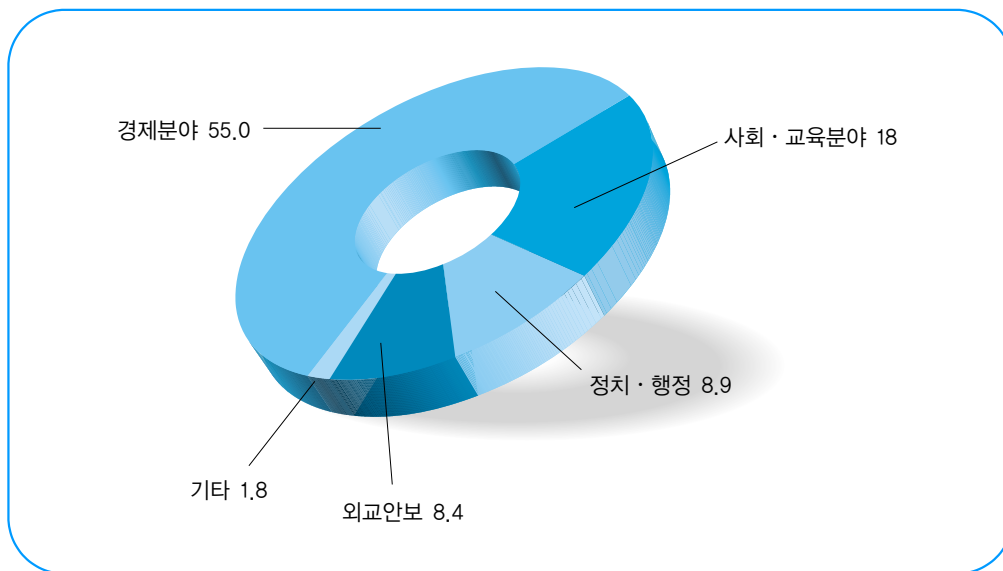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단체 등 5개, 전문위원 2인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의제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경제·복지분야 등에 대해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표 3-14]와 같다.

[표 3-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600명
표본추출방법	성 / 연령 / 지역별 비례할당 및 치계적 추출법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0\%$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10월 27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0\%$ 이다. 국민이 토론 주제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답한 분야([그림 3-15])로 ‘경제분야’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교육분야(18.0%)’ 순이었다.

[그림 3-15]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



[표 3-16] 경제 및 사회·교육 분야에 대한 응답률

경제 분야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방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문제	부동산 관련 정책	기 타
응답률	39.2%	26.3%	12.1%	10.8%	10.6%	0.2%
사회·교육 분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비정규직 차별 폐지	고교등급제 논란	기 타		
응답률	51.1%	33.8%	14.0%	0.3%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방안(39.2%),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26.3%),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12.1%)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51.1%), 비정규직 차별 폐지(33.8%), 고교등급제 논란(14.0%) 등으로 나타났다.

② 토론 주제 선정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주제를 ‘내년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로 선정하고 소주제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로 정하여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청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③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질문사항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자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의 요지는 각 정당에 사전 통지하였다.

06 토론 진행방식 결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통질문’,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맺음말’의 기본 형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에서도 토론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다만 토론자가 9개 정당에 해당되어 각 11분의 발언시간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초반 자유토론 시 토론자들이 발언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흡한 진행 사례를 정리하여 설명회 안내 자료나 사회자 매뉴얼에 추가로 포함하여 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3-17]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대주제	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F/G/H/I 토론자 답변(각 1분)	9분 30초
자유토론	소주제 1 :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27분
	• B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3분) ※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소주제 2 :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27분
	• C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3분) ※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음	
주도권토론	• D/E/F/G/H/I/A/B/C 주도권 토론(각 3분) : 반드시 상대 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최소 답변시간(약 30초) 보장	27분
맺음말	• E/F/G/H/I/A/B/C/D 토론자(각 1분)	9분

• 총 토론시간 : 99분 30초(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 조정)

07

설명회 개최 및 홍보

1 설명회 개최

토론회 개최사항 공표 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토론 주제·진행방법, 질문사항 요지, 토론회 진행 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천하였으며, 추천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그 추천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앞서 개최하였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주도권토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토론회 진행 중 부드럽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토론진행방식 각 포맷별로 타이머를 운용하여 시연하고, 지난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영상을 발췌하여 설명회에서 다시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이 진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토론자의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자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정당 등에서 방문·안내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토론회 홍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위원회·선관위·정당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 e-선거정보 수신자 14만여 명 이메일 발송, 행정학회 등 113개 단체에 공문안내, 선거연수원 전광판 표출, 토론회 참가자 이메일 발송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토론회 개최 전 조선일보·중앙일보외 4개 신문사에 지면보도되었고, 문화일보 외 3개 언론사에 인터넷 보도되었으며 주관방송사인 MBC의 자막방송, 토론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었다. 토론회 개최 후에는 KBS·MBC뉴스·한국일보 외 4개 언론사를 통해 토론자의 주요발언 내용 등이 인터넷 보도되었다. 다만 토론회의 리허설 시작 전 보도사진 촬영시간을 마련하였으나, 언론사의 취재는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08 토론회 진행

일부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조금씩 초과하였으나, 예정된 맺음말 1분을 유지하여 토론을 마무리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학생 15명, 일반 국민 6명 등 총 21명으로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하고, 정당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토론자 9명의 좌석 세트 제작비용이 초과되어 무대배경이 허술하게 제작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09 토론회 시청률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정책토론회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토론방송 프라임 시간대인 오후 11시대에 중계방송하였으나 토론자에 대한 낮은 인지도, 9명의 토론자로 인한 역동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3-18] 제1·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단위 : %)

조사기관	KBS1		MBC		SBS	
	정당 1차	정당 2차	정당 1차	정당 2차	정당 1차	정당 2차
AGB닐슨	1.9	1.5	1.3	1.6	0.5	0.8
TNS미디어	1.5	1.3	0.5	1.2	0.5	0.4

2 0 1 0 선거 방송 토론 백서

제 04 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제1절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제2절

제01절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연구를 위하여 ‘지방선거 후보토론 효율적 관리방안’ 과 지방선거 실시 후 ‘6.2지방선거 평가 토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01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대비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완벽한 토론회 관리를 도모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분석을 통한 향후 바람직한 기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2009년 6월 5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언론학회’ 후원을 통한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선거방송토론 전문가 등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6.2지방선거 후보토론 효율적 관리방안’과 제2주제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현행 제도적 관점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토론회 참여 유도방안, 효율적인 여론조사 방법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제2주제는 토론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방안, 바람직한 제도 개선과 토론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2009. 6. 5. 코엑스)

[표 4-1] 세미나 진행일정

구 분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제1주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의 효율적 관리 방안	권혁남(전북대)	정성호(동명대) 박태순(미디어전략연구소)
제2주제	바람직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김기태(세명대)	이상철(성균관대) 강미은(숙명여대)

[표 4-2]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

주요 발제 내용	• 후보자 자격기준 강화, 불참자 벌칙 강화 • 유권자들을 토론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만을 허용 • 선거방송토론 방송시간대를 고정 • 사회자의 역할 강화 • 신속적 답변을 위해 부분시간충량제를 도입
----------------	---

	• 선방위에서 여론조사 실시 •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폐지 • 선거방송토론 시민감시단을 조직
주요 토론 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위원 교육 등) • 법정 선거운동기간 내에는 선방위 주관 토론회만 허용하고, 방송사 주관 토론과 포맷을 달리하여 선거관련 후보토론을 주도적으로 관리 • 선거운동기간동안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은 공영방송사 본연의 역할 • 인터넷 실시간 여론조사를 통한 질문, 영상질문 등으로 유권자들의 참여 확대 및 흥미로운 토론회 운영 • 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등을 Debate Watch(시민감시단)으로 활용 • 정보홍수시대에 시청률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유무용론 제기는 다소 무리

02

「6.2 지방선거 평가 토론」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각종 토론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진행방식 개발 및 발전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금), 선거연수원 강당에서 ‘6.2 지방선거 평가 토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비교·분석”, 위원회주관 토론과 방송사주관 토론 비교·분석(광역단체장)”, “TV선거 후보토론 중 후보자 주도형 토론시간의 전략적 활용 유형과 효율성 분석”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일반 학술세미나와는 다르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계, 방송사의 전문가들과 6.2 지방선거 시 선거방송토론의 현실적인 문제점 분석 및 평가로 발제자와 토론자, 참관자 간 토론으로 실효성 있는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3] 세미나 진행일정

구 분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제1주제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비교·분석”	정성호 (동명대)	이상철(성균관대), 현경보(sbs)
제2주제	“위원회주관 토론과 방송사주관 토론의 진행방식 비교·분석”	송종길 (경기대)	김춘식(한국외대), 이영배(mbc)
제3주제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오창우 (계명대)	김하나(숙명여대), 김찬태(kbs)

[표 4-4] 주요 연구내용

구분	주 제	주요 연구 내용
제1주제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비교·분석”	• 선거별, 후보자수별 토론회 진행방식 사례분석 및 평가 • 지역에 따른 주제와 토론 포맷에 따른 시간 흐름과 배분, 질의응답 유형 분류 및 분석 등 • 선거별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개발 및 발전방안 제시
제2주제	“위원회주관 토론과 방송사주관 토론의 진행방식 비교·분석”	•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토론회의 주관별 토론형식, 질문 및 응답내용 등 비교·분석 • 선거방송토론에 적합한 진행방식 개발 및 발전방안 제시
제3주제	“6.2 지방선거 ‘주도권 토론’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 후보자 간 질의응답 교환 방식과 그 내용 분석, 후보자 주도형토론 시간의 전략적 활용 유형분석 • 후보자 주도형 토론 시간의 기회적·시간적 중립성에 대한 보완 가능성 분석 • 전체 TV토론 중 유권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토론 포맷 분석,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토론포맷 분석 등 후보자 주도형 토론 시간에 대한 수용자 조사

[표 4-5] 제1주제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제1주제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토론회의 비교·분석” (정성호 - 동명대)	
주요 발제 내용	-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광역단체장 후보토론보다 교육감선거 후보토론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토론의제가 사용되었고, 여전히 기계적인 토론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후보들의 치열한 경합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주도권토론, 자유토론 등 진행방식에 있어 변화를 주고자 했음. - TV토론의 세분화 즉 채널별, 매체별 차별화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채널별로 후보자의 정책을 특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각 지역 토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또한 발언·답변시간 제약을 사회자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사전 토론교육이 필요 - 후보자별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분석 자료를 근거로 심화토론이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의제분야별 분석과 그 형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채널별 정책적 이슈를 특화하는 제안도 좋은 의견임. 다만 토론의제와 지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아쉬움. 의제설정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직접적으로 후보자와의 소통이 되며, 토론회가 이벤트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상철 - 성균관대). - 현재의 제도하에서 재미있는 토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위원회와 방송사 각 주관별로 특색있는 토론이 되도록 법개정이 필요. 또한 유권자(시청자)의 후보토론 시청 후 후보자에 대한 인식변화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권자가 토론을 시청하고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현경보 - sbs). - TV토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6가지 방안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 부담임. 토론의제에 대한 평가부분에 모순되는 부분과 몇몇 특이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지적(전선일 - 제주도선관위 사무처장)

[표 4-6] 제2주제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제2주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TV토론형식 비교·분석 : 위원회 주관과 방송사 주관 토론을 중심으로” (송종길 - 경기대)	
주요 발제 내용	• 위원회 주관 토론에서는 3~5개의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고, 방송사주관 토론의 경우는 후보자가 특정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주관별 진행방식에 차이가 나타남. • 그러나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TV토론 내용의 정보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주제 내에서 사회자와 토론자가 추가 질문을 허용하고, 주제별 혹은 전체 토론동안 일정횟수의 추가발언 및 질문기회를 더 많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토론주제별 시간총량제를 적극 활용하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포럼형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주요 토론 내용	• ‘형평성’, ‘공정성’에 치우쳐 최근 4년간 새로운 토론방식이 없었으나, 2012년 국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감한 형식의 도입이 필요. 유권자질문이 부담된다면, 유권자들이 작성한 질문들 중에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또한 방송사별로 토론분야를 나누고 토론형식도 다르게 진행하고, 위원회 주관 토론 외에 추가적으로 유력후보 소수만을 초청하여 진행한다면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영배-mbc). • TV토론회가 애초의 취지대로 유용하고 효과적인 선거운동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간 직접토론의 기회는 물론이고 시민포럼형 토론처럼 유권자가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한 토론형식을 개발해야 하고, 현재의 선거법이 정한 TV토론 초청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의 정치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 휴리스틱스의 사용이 강조되므로 TV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TV토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함(김춘식-한국외대). • 서울과 인천 후보토론만을 놓고 토론포맷과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이번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주관별 후보토론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특정 사례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각 지방 언론사와 지역 선방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토론회를 개최하다보니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미있는 토론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전선일-제주도선관위 사무처장).

[표 4-7] 제3주제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제1주제 “6.2 지방선거 <주도권 토론>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오창우 - 계명대)	
주요 발제 내용	• ‘주도권 토론’ 방식은 후보자 간 공약검증을 목적으로 경쟁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토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강화하고, 질문문항 및 예상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스스로의 공약검증 및 논리를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음. • 보통 ‘주도권토론’ 4~5분의 시간을 해당 후보자에게 일임하는 경우 자기자랑, 자기공약홍보, 상대방 흠집내기 및 인신공격, 장황한 설명, 강의식 설명, 비논리적이고 감정적 내용 표출, 화법 및 문법체계 오류 등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주도권토론’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고, 또한 ‘주도권토론’에서 언급된 발언에 대한 사실 검증방법이나 사후 처리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이 방식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후보자 간 공약검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간과 질의/응답 형식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정하고 처음부터 각 후보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 시간총량제 베이스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주요 토론 내용	• 주도권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악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그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검증 과정으로서, 이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봄. 토론포맷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토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형식 자체가 지나치게 다양화되면 TV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위원회만의 정형화된 포맷이 필요함. 또한 TV라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1~2시간 토론이 진행되어 채널을 고정할 수 있는 볼거리(그림, 차트, 도표 등)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고, 방송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들 간 진정한 토론이 되도록 인터넷 중계 등 매체환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김하나-숙명여대). • 국내에서는 2002년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KBS)에서 주도권토론이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프랑스 대선 후보토론 후반부에 자유토론이 사용되었음. 어떤 토론 포맷이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나 자유토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주도권토론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후보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이 아닌 후보의 공약과 현안에 대한 토론 등 의제를 심층화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해야 함(김찬태 - kbs). • 공직선거에 있어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 입장임. 구시군위원회의 경우, 지방선거 홍보업무 외에 후보자토론회 관련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 방송사에 의존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정영식-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제02절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 개최 및 자료집 발간



01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 개최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2010. 11. 3. 충북단양대명리조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에 대한 총괄평가를 위하여 2010년 11월 3일(수)~4(목) 이틀 동안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및 간사 총 28명 대상 선거방송토론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전국 고등학생 토론회 등 상시업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과 간사를 구분하여 분임토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하여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토론회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02

선거방송토론 자료집 발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의 주제·질문사항 및 진행방식 등의 체계적인 정리·관리 및 후보자 토론회 등의 종합적인 분석·연구로 방송토론의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주제·진행방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의 주제·질문사항 및 진행방식 등의 사례 연구와 향후 일선위원회 방송토론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의 기본유형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2 0 1 0 선 거 방 송 토 론 백 서

제 05 장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제1절

토론대회 만족도 등 조사 결과

제2절

제01절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식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국 46개 대학 중 128개 팀 256명의 대학생, 교수·직원 심사위원 110여 명, 행사진행요원 40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는 대학생들의 토론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모든 참가자에게 서류심사가 아닌 실전토

론 심사 및 지방 참가자들의 숙박 제공, 시상 훈격 조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효과를 이루었으며,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대회 진행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설문조사자 중 66.3%로 대체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당일에 예선과 본선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회를 금요일에 실시하여 신문보도가 되지 않았던 점과 다수의 불참팀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은 추후 개선사항으로 남았다.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0. 8. 27(금) 09:00 ~ 18:30
- 장 소 : 중앙대학교 미디어공연영상관 등
- 논 제 :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참가인원 : 128개팀 256명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주 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중앙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후 원 : MBC, EBS, SBS, 한국케이블TV협회

01 대회 주최 및 개최

제6회 대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관·진행과 대회시설이용 등을 위하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중앙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회를 주관하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2010년 8월 27일 금요일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6개 대학교 128개팀 256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며, 지역별 참가 현황 또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연합팀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 맞게 고르게 출전하였다.

대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직원 및 학회 회원 등을

[표 5-1] 역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주 관	개최일자	장 소	참가팀수 (2인 1팀)
6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2010. 8. 27(금)	중앙대학교	128개
5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9. 5. 22(금)	이화여자대학교	94개
4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2008. 11. 1(토)	숭실대학교	72개
3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2007. 6. 9(토) ~ 6. 10(일)	경기대학교	58개
2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2006. 10. 28 ~ 10. 29	성균관대학교	100개
1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2005. 11. 5 ~ 11. 6	경기대학교	104개

주축으로 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많은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중인 8월에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실시, 지방거주 학생 대상 전일숙박 편의를 제공하였다.

향후 대회는 참가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대회장 선정 및 대회장 내 편의 시설 등 파악 등 제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회장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거리(부산)로 인한 운영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및 교수 운영위원들의 대회 진행방식 등의 미숙 등은 보완·개선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위원회 자체 주관으로 실시 하되, 권역별 예선을 도입하여 시·도토론위원회별 상시 업무를 부여하고 권역별 교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02

토론 논제 및 진행방식

제6회 대회는 선거·정치와 관련한 논제로 일반인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회 논제를 공모하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로 선정하였다. 논제 선정 후

토론 논제를 미리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실과 협의하여 논제 관련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참가 대학생들이 토론대회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찬성에 비하여 반대의 논점이 불균형하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좀 더 심층적이고 질 높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논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5-2] 대학생 토론대회 주제 및 토론방식

구분	논 제	토론방식
6회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변경되어야 한다	자유토론 방식
5회	•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자유토론 방식
4회	•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자유토론 방식
3회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CEDA ¹²⁾ 방식
2회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CEDA 방식
1회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CEDA 방식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예선전

12) CEDA(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방식은 토론 참가자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번갈아 취함으로써 주어진 정치·사회적 현안과 정책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아카데미식 토론방식을 말함.

한편 이번 대회는 128개 참가팀을 32개조로 편성(조별4팀)하여 팀당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각각 토론하고, 각 조별 1팀이 32강전에 진출하도록 하였다.

예선과 본선의 8강까지는 총 20분으로써 기초연설 각 1분, 자유토론 팀당 8분, 그리고 맺음말 각 1분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선의 준결승은 총 30분, 결승전은 총 40분으로 참가자들의 논의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시간도 늘렸다.

[표 5-3] 제6회 토론대회 자유토론 진행방식

방 식	진행시간				비 고
	예 선	본 선			
		8강	준결승	결 승	
① 찬성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30초	1분 30초	
② 반대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30초	1분 30초	
③ 자유토론(팀당)	8분	8분	10분	15분	반대팀 발언시작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1분	1분 30초	1분 30초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1분	1분 30초	1분 30초	
합 계	20분	20분	30분	40분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공고와 함께 진행방식을 안내함으로써 참가자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나, 소수 참가자들의 토론진행방식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하였으며 팀당 토론시간 20분이 부족하다는 참가자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전체 토론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03 대회 개최 결과

이 대회에서 대상은 한양대학교 강우석, 김병우 학생이 수상하였고, 금상은 고려대학교 정성원, 오근정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 외에 은상, 동상, 장려상을 비롯한 개인별 시상인 스피커상 등 많은 시상이 있었으며 총 1,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시상식

[표 5-4] 제6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내역

시상내역	시 상 명 칭	수 상 자		상 금
		소속 학교명	성 명	
대 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상	한양대학교	강우석, 김병우	300만원
금 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상	고려대학교	정성원, 오근정	200만원
은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 원 장 상	서울대학교	신혜주, 전진원	각 100만원
		경희대학교	김태영, 김혜주	

시상내역	시 상 명 칭	수 상 자		상 금
		소속 학교명	성 명	
동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 원 장 상	경북대학교	박신녕, 최진우	각 50만원
		성균관대학교	송슬기, 이예슬	
		한동대학교	지은혜, 장은진	
		서울대학교	정의석, 김영현	
장 려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 원 장 상	연세대학교	김새날, 정호정	각 30만원
		서울대학교	정성훈, 문성원	
		성균관대학교	김아사, 김지영	
		서강대학교	문형주, 문상덕	
		서울대학교	허영주, 김현태	
		숭실대학교	박수빈, 노나라	
		경북대학교	윤석현, 정혜미	
		단국대학교	김민정, 유현진	
스피커상	학 회 장 상		15명	상장

제02절

토론대회 만족도 등
조사 결과

제6회 토론대회 참가자 대상 대회 참가 이유 및 대회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실제 대학생들이 토론대회를 어떻게 느끼며 생각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대회 참가자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회 종료 즉시 현장에서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참가자들의 대회 참가 계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가자 스스로 선택’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비율(67.4%)이 높았으며, ‘친구 등의 권유’(23.3%), 교수의 권유(2.3%) 순으로 나타났다. 제5회 대회에서의 교수 권유(18.9%), 친구 등의 권유(16.1%)로 참가한 비율보다 제6회 대회에서 권유로 인한 참가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진 점을 볼 때, 대학생들이 토론대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5] 조사대상

구 분	응답자수	성별		구성비(%)	비 고
제6회	86명	남	42	48.8	
		여	44	51.2	
제5회	143명	남	67	46.8	
		여	76	53.2	

[표 5-6] 대회 참가 계기

(단위 : 명, %)

구 분	계	스스로 선택	친구 등의 권유	교수의 권유	기타
제6회	136	58(67.4)	20(23.3)	2(2.3)	6(7.0)
제5회	86	77(53.8)	23(16.1)	27(18.9)	16(11.2)

참가자들의 대회 참가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가자 본인의 토론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참가하는 비율(제5회 55.9%, 제6회 50.0%)이 높았으며 토론문화 즉, 토론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는 비율(제5회 37.8%, 제6회 37.2%)도 높게 나타났다.

참가자에게 대회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5회 대회(88.1%)보다는 제6회 대회(66.3%)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론 논제 변경, 대회 시간 지연 등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었다. 제5회 대회에는 절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토론대회를 확대하여 개최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우리나라 토론문화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였고, 특히 지방 참가자를 배려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대회 참가 이유

(%)

구 분	계	토론능력향상	토론문화관심	친목/사교	기타
제6회	86	43(50.0)	32(37.2)	취업에 도움 4(4.6)	7(8.2)
제5회	144 (중복응답 포함)	80(55.9)	54(37.8)	8(5.6)	2(11.1)

[표 5-8] 대회 만족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하지 않음
제6회	86	2(2.3)	27(31.4)	28(32.7)	24(27.9)	5(5.8)
제5회	136	19(13.3)	86(60.1)	21(14.7)	8(5.6)	2(1.4)

제 06 장

각종 자료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제1절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제2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제3절

2010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제4절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자료 제5절

제01절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2006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6. 3. 25(토) 10:00~12:00 (MBC)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노동· 과학	•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 • 8.31 후속정책과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 •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홍종학 (경원대 교수)
	토론자	열린우리당(강봉균 -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방호 - 정책위의장), 민주당(김효석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용대 - 정책위의장), 국민중심당(류근찬 - 정책위의장)			
2차	'06. 4. 15(토) 10:00~12:00 (KBS)	원내대표 (5개당)	정치·행정· 외교·안보	• 각 정당의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실천방안 •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 •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	김민전 (경희대 교수)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토론자	열린우리당(김한길-원내대표), 한나라당(이재오-원내대표), 민주당(이낙연-원내대표), 민주노동당(천영세-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정진석-원내대표)		
3차	'06. 5. 12(금) 22:00~24:0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현안	• 5.31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 • 국민 관심사(영상질문) • 지방선거 후보공천 제도	염재호 (고려대 교수)
		토론자	열린우리당(정동영-당의장), 한나라당(박근혜-대표최고위원), 민주당(한화갑-대표), 민주노동당(문성현-대표), 국민중심당(심대평-공동대표최고위원)		

■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2007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7. 9. 21(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노동·선거	•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	신 율 (명지대 교수)
		토론자	대통합민주신당(김진표-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한구-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용대-정책위의장), 민주당(이상열-정책위의장), 국민중심당(김낙성-정책위의장)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2차	'07. 10. 25(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5개당)	교육·복지· 선거	•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	엄길청 (경기대 교수)
	토론자	대통합민주신당(김효석 - 원내대표), 한나라당(안상수 -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천영세 - 의원단대표), 민주당(최인기 - 원내대표), 국민중심당(정진석 - 원내대표)			
3차	'07. 11. 2(금) 23:40~25:40 (KBS)	선 대 위원장 (5개당)	정치·외교· 선거	•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룡 (경희대 교수)
	토론자	대통합민주신당(김근태 -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안상수 -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민주노동당(노회찬 -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민주당(최인기 -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국민중심당(정진석 -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2008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8. 1. 31(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4개당)	정치	-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 경제 기능 - 통일·안보 기능 - 교육등 기능	신 울 (명지대 교수)
	토론자	대통합민주신당(김효석-원내대표), 한나라당(김형오-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민주노동당(천영세-원내대표), 민주당(최인기-원내대표)			
2차	'08. 2. 29(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5개당)	경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 - 대기업 정책 - 중소기업 정책	엄길청 (경기대 교수)
	토론자	통합민주당(우제창-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이한구-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영순-정책위의장 서리), 자유선진당(권선택-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강재규-정책위의장)			
3차	'08. 3. 13(목) 23:20~01:20 (MBC)	당대표 (5개당)	선거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 -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	박선영 (동국대 교수)
	토론자	통합민주당(손학규-당대표), 한나라당(강재섭-대표최고위원), 민주노동당(천영세-당대표), 자유선진당(이회창-총재), 창조한국당(문국현-당대표)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2010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10. 3. 23(화) 10:00~12:00 (MBC)	원내대표 (6개당)	교육·행정	•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행정체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순애 (서울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안상수 - 원내대표), 민주당(이강래 - 원내대표), 자유선진당(류근찬 - 원내대표), 미래희망연대(노철래 - 원내대표), 민주노동당(강기갑 - 원내대표), 창조한국당(이용경 - 원내대표)			
2차	'10. 4. 23(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5개당)	경제	•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나? • 정부 재정, 문제없나?	엄길청 (경기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김광림 -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변재일 -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이상민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정희 -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유원일 - 정책위의장)			
3차	'10. 5. 6(목) 23:10~25:0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선거	•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	유정아 (방송인)
	토론자	한나라당(정몽준 - 대표최고위원), 민주당(정세균 - 당대표), 자유선진당(이회창 - 당대표), 민주노동당(강기갑 - 당대표), 창조한국당(송영오 - 당대표)			

제 02 절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 ■ ■ 정당정책토론(2005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	'05. 12. 3(수)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원내수석 부대표 (4개당)	정치·민생	• 농가 소득의 안정화 • 고용 불안정과 구조 조정 • 공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 집값 거품 형성과 분양원가 폭등에 따른 내 집 마련 곤란	염재호 (고려대학교수) ※질문자 - 신율 (명지대학교수) - 김민전 (경희대학교수)
	토론자	열린우리당(김부겸 -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임태희 -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상열 -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심상정 - 원내수석부대표)			

■ ■ ■ 정당정책토론(2006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6. 7. 19(수)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4개당)	경제·교육	• 수해복구 대책 • 8·31정책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당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신 올 (명지대 교수)
	토론자	열린우리당(강봉균 -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전재희 - 정책위의장), 민주당(최인기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장상환 - 정책연구소장) ※국민중심당(불참)			
2차	'06. 11. 24(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현안	• 집값 안정화 대책 • 2007년 정부 예산안 쟁점 • 북핵문제 해법	박선영 (가톨릭대 교수)
	토론자	열린우리당(김근태 - 당의장), 한나라당(강재섭 - 대표최고위원), 민주당(한화갑 - 대표최고위원), 민주노동당(문성현 - 대표), 국민중심당(신국환 - 공동대표최고위원)			

■ ■ ■ 정당정책토론(2007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7. 5. 30(수) 10:00~12:00 (KBS)	원내대표 (6개당)	국정현안	•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김민진 (경희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김형오 -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장영달 - 원내대표), 중도개혁통합신당(최용규 - 원내대표), 민주당(김효석 -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천영세 -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정진석 - 원내대표)			
2차	'07. 8. 3(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외교·안보	• 북핵문제와 대북 정책방향 •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	신 올 (명지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강재섭 -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정세균 - 당의장), 민주당(박상천 - 공동대표), 민주노동당(문성현 - 당대표), 국민중심당(심대평 - 대표최고위원)			

정당정책토론(2008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8. 6. 27(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7개당)	경제	•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 •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엄길청 (경기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임태희 - 정책위의장), 통합민주당(최인기 -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류근찬 - 정책위의장), 친박연대(엄호성 - 정책담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이정희 - 정책위의장서리), 창조한국당(강재규 - 정책위의장), 진보신당(윤영상 - 정책위부의장)			
2차	'08. 11. 28(금) 10:00~12:00 (KBS)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엄길청 (경기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최경환 - 수석정조위원장), 민주당(박병석 -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임영호 - 정책위부의장), 친박연대(엄호성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정희 -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이용경 - 정책위의장), 진보신당(노중기 - 정책위의장)			

정당정책토론(2009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09. 4. 15(수) 10:00~12:00 (MBC)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소주제 1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소주제 2 : 미래성장동력	유정아 (방송인)
	토론자	한나라당(나성린 - 제3정조부위원장), 민주당(박병석 -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류근찬 - 정책위의장), 친박연대(엄호성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정희 -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문국현 - 당대표), 진보신당(노중기 - 정책위의장)			
2차	'09. 11. 13(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7개당)	정치	• 국책 과제 - 소주제 1 : 세종시 해법 - 소주제 2 : 4대강 사업	유정아 (방송인)
	토론자	한나라당(김성조 - 정책위의장), 민주당(변재일 -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이상민 - 정책위의장), 친박연대(석종현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정희 -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이용경 - 정책위의장), 진보신당(조승수 - 원내대표)			

■ ■ ■ 정당정책토론(2010년)

회차	개최일시	토론자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1차	'10. 7. 16(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7개당)	경제 · 사회	•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 •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일 (경희대 교수)
	토론자	한나라당(이종구 -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이용섭 -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임영호 -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이의엽 - 정책위부의장), 창조한국당(이벽규 - 정책연구소장), 진보신당(김석연 - 정책위부의장), 국민중심연합(김환철 - 정책위의장)			
2차	'10. 11. 16(화) 23:20~01:20 (MBC)	대표자가 지정 (9개당)	경제 · 복지	•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정혜정 (방송인)
	토론자	한나라당(이종구 -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전병헌 -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이상민 - 국회 예결위 위원), 미래희망연대(김세현 - 사무총장), 민주노동당(이의엽 -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공성경 - 대표최고위원), 진보신당(윤난실 - 부대표), 국민중심연합(김광식 - 대변인), 국민참여당(유시민 - 참여정책연구원장)			

제03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01 개최 결과

- 정당명 약칭 :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선), 미래희망연대(미),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창), 진보신당(진), 국민중심연합(국), 국민참여당(참), 국제녹색당(녹), 미래연합(연), 사회당(사), 평화민주당(평), 무소속(무)
- 초청 및 비초청후보자의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의 경우 참석한 비초청후보자를 “○○○” (밑줄) 표시

■ ■ ■ 서울특별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울 시장	초청	토론	KBS 스튜디오	5. 28(금) 23:00 ~ 00:40	KBS	정석균 (교수)	오세훈(한) 한명숙(민) 지상욱(선)	-
비례대표 서울의원	초청	토론	KBS 스튜디오	5. 28(금) 14:10 ~ 15:50	KBS	유정아 (방송인)	김정재(한) 한명희(민) 이화용(선) 오석순(노)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울시 교육감	초청	토론	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1:30	MBC	김현주 (교수)	이원희 김영숙 곽노현	-
종로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29(토) 20:00~21:10	T-broad 종로중구 CATV	강영희 (방송인)	정창희(한) 김영중(민)	-
	비초청	연설		5. 29(토) 21:10~21:40	C&M 중앙 CATV	김공수 (사무국장)	이태희(자) 김성은(무) 유미영(무)	
중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31(월) 20:00~21:40	T-broad 종로중구 CATV	전우현 (교수)	황현탁(한) 박형상(민) 정동일(무)	-
	비초청	연설		5. 31(월) 21:40~22:00			김길원(평) 이학봉(무)	-
용산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29(토) 20:00~21:25	C&M 용산	강미은 (교수)	지용훈(한) 성장현(민) 서정호(자)	-
	비초청	연설		5. 29(토) 21:25~21:50	CATV	황의철 (위원)	정재진(연) 김복남(평)	-
성동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7(목) 23:00~00:10	C&M 동서울 CATV T-broad 광진성동 CATV	강웅선 (교수)	이호조(한) 고재득(민) 최창준(노)	-
광진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8(금) 22:00~23:10	T-broad 광진성동 CATV	황남희 (방송인)	구혜영(한) 김기동(민) 정송학(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23:10~23:20			조상훈(참)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동대문구	초청	토론	동대문 구민회관 1층 대강당	5. 26(수) 19:00 ~ 19:50	T-broad 동대문 CATV CMB 동서방송 CATV	이대희 (교수)	방태원(한) 유덕열(민)	-
	비초청	연설		5. 26(수) 19:50 ~ 20:10			김영환(박) 김재전(무)	
중랑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9(토) 23:00 ~ 24:00	C&M 중랑 CATV	윤종빈 (교수)	문병권(한) 김준명(민)	-
성북구	초청	대답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9(토) 23:00 ~ 23:30	C&M 북부 CATV	이대희 (교수)	김영배(민)	서찬교 (한)
	비초청	연설		5. 29(토) 23:30 ~ 23:45			엄윤상(국)	-
강북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31(월) 23:00 ~ 23:50	T-broad 강북 CATV	배인명 (교수)	김기성(한) 박겸수(민)	-
도봉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6(수) 23:00 ~ 24:00	T-broad 도봉 CATV	김은경 (교수)	김영천(한) 이동진(민)	-
	비초청	연설		5. 27(목) 00:00 ~ 00:30			이백만(참) 권중길(연) 손동호(무)	-
노원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8(금) 23:30 ~ 00:40	T-broad 노원 CATV C&M 노원 CATV	김현주 (교수)	이노근(한) 김성환(민)	-
은평구	초청	대답	CJ헬로비전 은평스튜디오	5. 29(토) 18:00 ~ 18:30	CJ 헬로비전 은평 CATV	심중보 (방송인)	김우영(민)	-
	비초청	연설		5. 29(토) 18:30 ~ 18:50			박수천(평) 노양학(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대문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30(일) 20:00~21:10	C&M 서서울 CATV T-broad 서대문 CATV	장하용 (교수)	이해돈(한) 문석진(민)	-
마포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30(일) 20:00~21:00	C&M 마포 CATV	현대원 (교수)	권중수(한) 박홍섭(민)	-
	비초청	연설		5. 30(일) 21:00~21:10			김 철(참)	
양천구	초청	토론	CJ헬로비전 양천스튜디오	5. 28(금) 16:00~17:20	CJ 헬로비전 양천 CATV	곽은주 (방송인)	권택상(한) 이제학(민) 추재엽(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17:20~17:25		심중보 (방송인)		김유성 (무)
강서구	초청	토론	T-broad 강서스튜디오	5. 26(수) 11:00~12:00	T-broad 강서 CATV	김 광 석 (방송인)	김재현(한) 노현송(민)	-
	비초청	연설		5. 26(수) 12:00~12:10			김근미(평)	-
구로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29(토) 23:00~00:10	C&M 구로 CATV	배인명 (교수)	양대웅(한) 이 성(민)	-
	비초청	연설		5. 30(일) 00:10~00:20			강신일(평)	-
금천구	초청	토론	C&M 강서스튜디오	5. 30(일) 23:00~00:50	C&M 구로 CATV	최락인 (교수)	이종학(한) 차성수(민) 김 훈(선) 이승무(노) 한인수(무)	-
	비초청	연설		5. 31(일) 00:50~01:00			강성현(무)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영등포구	초청	토론	한강방송 스튜디오	5. 26(수) 19:00 ~ 20:10	한강방송 CATV	송종길 (교수)	양창호(한) 조길형(민) 김형수(무)	-
	비초청	연설		5. 26(수) 20:10 ~ 20:30			정호진(진) 김학중(연)	-
동작구	초청	토론	HCN 동작방송 서초스튜디오	5. 27(목) 22:00 ~ 23:10	HCN 동작방송 CATV	김민기 (교수)	이재순(한) 문충실(민)	-
	비초청	연설		5. 27(목) 23:10 ~ 23:30			김영재(무) 정기철(무)	-
관악구	초청	토론	HCN 관악방송 관악스튜디오	5. 27(목) 21:00 ~ 22:20	HCN 관악방송 CATV	라미경 (교수)	오신환(한) 유종필(민) 허 증(선)	-
	비초청	연설		5. 27(목) 22:20 ~ 22:42			이봉화(진) 권태오(평)	-
서초구	합동	연설	HCN 서초방송 서초스튜디오	5. 26(수) 21:00 ~ 21:23	HCN서 초방송 C&M 서초 CATV	윤종빈 (교수)	진익철(한) 곽세현(민)	-
강남구	초청	토론	역삼1문화센터 3층대강당	5. 27(목) 22:00 ~ 22:55	GS강남 방송 CATV	이상열 (언론인)	이판국(민) 맹정주(무)	신연희 (한)
	비초청	연설		5. 27(목) 23:00 ~ 23:15			지태자(무)	-
송파구	합동	연설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9(토) 23:00 ~ 23:30	C&M 송파 CATV	정종기 (교수)	박준희(한) 박병권(민)	성기철 (국)
강동구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스튜디오	5. 29(토) 23:00 ~ 24:00 5. 31(월) 11:00 ~ 12:00	C&M 강동 CATV	곽은주 (위원)	최용호(한) 이해식(무)	-

■ ■ ■ 부산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부산시장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7(목) 23:10~00:30	KBS · MBC 공동중계	김영일 (교수)	허남식(한) 김정길(민)	-
비례대표 부산의원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8(금) 13:50~14:50	부산MBC	김영일 (교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
	비초청			5. 28(금) 14:50~15:50		안동진 (아나운서)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
부산시 교육감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5(화) 23:30~01:00	KBS · MBC 공동중계	김창룡 (교수)	임혜경 이병수 임정택	-
	비초청			5. 24(월) 23:30~01:00		김창룡 (교수)	이성호 임장근 현영희 김진성 박영관 정형명	-
중구	초청	연설	부산MBC 스튜디오	5. 26(수) 15:15~15:40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김은숙(한) 문창무(연)	-
서구	미개최							-
동구	합동	연설	부산MBC 스튜디오	5. 24(월) 14:15~14:40	수산MBC	이희길 (방송기자)	박삼석(한) 박한재(무)	-
영도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5(화) 14:10~15:10	KBS부산	김현민 (교수)	어윤태(한) 이태곤(창)	-
부산진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6(수) 23:30~00:30	KBS부산	김현민 (교수)	하계열(한) 정해정(민)	-
동래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7(목) 13:50~14:50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조길우(한) 정상원(민)	-
	비초청	연설		5. 27(목) 14:50~15:15		안동진 (아나운서)	이경호(무) 김호기(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남구	미개최							-
북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31(월) 14:10 ~ 15:40	KBS부산	조영복 (교수)	황재관(한) 주우열(노) 이성식(무)	-
해운대구	합동	연설	KBS부산 스튜디오	5. 27(목) 14:10 ~ 14:45	KBS부산	김현민 (교수)	배덕광(한) 고창권(참) 안정옥(무)	-
기장군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5(화) 14:15 ~ 15:35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홍성률(한) 손현경(민) 김유한(미) 오규석(무) 윤을석(무)	-
사하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31(월) 14:15 ~ 15:15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이경훈(한) 배명수(민) 조정화(무)	-
금정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6(수) 14:15 ~ 15:15	부산MBC	이희길 (방송기자)	원정희(한) 고봉복(무)	-
강서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8(금) 14:10 ~ 15:35	KBS부산	조영복 (교수)	강인길(한) 김진옥(민) 김선곤(선) 구대연(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15:35 ~ 16:00		조영복 (교수)	안병해(무) 김동일(무)	박광명 (무)
연제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1(금) 14:10 ~ 15:10	KBS부산	조영복 (교수)	임주섭(한) 이위준(무)	-
수영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5. 20(목) 14:00 ~ 15:00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박현옥(한) 김성발(민)	-
사상구	합동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5. 26(수) 10:00 ~ 11:10	KBS부산	김현민 (교수)	송숙희(한) 이영철(민) 신상해(무)	-

대구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대구시장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5(화) 23:10~23:40	대구MBC	김환열 (언론인)	김범일(한) 이승천(민) 조명래(진)	-
비례대표 대구의원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6(수) 14:00~15:00	대구MBC	김환열 (언론인)	윤석준(한) 권오성(민) 심진희(선) 이영재(노)	-
	비초청			5. 26(수) 15:00~16:00			김광미(진) 전영주(참) 오정숙(연) 이석범(사) 이용휘(박)	-
대구시 교육감	초청	대담	대구MBC 스튜디오	5. 25(화) 23:05~23:25	대구MBC	김환열 (언론인)	우동기	-
중구	합동	토론	KBS대구 공개홀	5. 21(금) 14:10~15:10	KBS대구	김명환 (언론인)	윤순영(한) 김동철(연) 조병기(무) 남해진(무)	-
동구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1(금) 17:35~18:30	대구MBC	김종학 (언론인)	이재만(한) 정덕연(민)	-
서구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1:00	대구MBC	김철우 (언론인)	강성호(한) 서중현(무)	-
남구	합동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5. 26(수) 17:35~18:00	대구MBC	김종학 (언론인)	임병현(한) 박형룡(무)	-
북구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2(토) 09:45~11:00	대구MBC	장원용 (언론인)	이종화(한) 구분항(박) 권효기(무)	-
수성구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9(토) 09:45~11:00	대구MBC	장원용 (언론인)	이진훈(한) 이기윤(무) 김형렬(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달서구	초청	대담	대구MBC 스튜디오	5. 28(금) 17:35~18:35	대구MBC	김철우 (언론인)	곽대훈(한) 조기석(민)	-
	비초청	연설		5. 28(금) 17:20~17:30			김부기(무)	
달성군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31(월) 14:10~15:10	KBS대구	김상배 (언론인)	이석원(한) 김문오(무)	-
	비초청	연설		5. 31(월) 15:10~15:20			김진수(참)	-

■ ■ ■ 인천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인천시장	초청	토론	MBC 1층 D스튜디오	5. 25(화) 23:10~00:10	MBC, KBS	엄길청 (교수)	안상수(한) 송영길(민)	-
비례대표 인천의원	초청	토론	KBS 본관 2층 TS-4스튜디오	5. 21(금) 14:10~15:50	KBS	엄길청 (교수)	허회숙(한) 노현경(민) 김문희(선) 이옥희(노)	-
인천시 교육감	초청	토론	MBC 1층 D스튜디오	5. 27(목) 10:00~11:30	MBC	엄길청 (교수)	최진성 나근형 조병옥	-
중구	초청	토론	티브로드 인천방송 스튜디오	5. 27(목) 19:00~21:00	티브로드 (서해방송)	정영태 (교수)	박승숙(한) 김홍복(민) 노경수(무)	-
동구	초청	토론	티브로드 인천방송 스튜디오	5. 27(목) 21:30~22:40	티브로드 (서해방송)	김규원 (방송인)	이홍수(한) 조택상(노) 이환섭(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남구	초청	토론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5. 26(수) 10:00~12:00	남인천방송	김동주 (방송인)	이영수(한) 박우섭(민) 이영환(무)	-
연수구	초청	토론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5. 28(금) 10:00~11:30	남인천방송	김동주 (방송인)	남무교(한) 고남석(민)	-
	비초청	연설					최영배(무)	-
남동구	초청	토론	티브로드 인천방송 스튜디오	5. 26(수) 19:00~20:00	티브로드 (남동방송)	박효석 (방송인)	최병덕(한) 배진교(노)	-
부평구	초청	토론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스튜디오	5. 27(목) 20:00~21:10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전영우 (교수)	박윤배(한) 홍미영(민)	-
	비초청	연설		5. 27(목) 21:10~21:20		전영우 (교수)	김현상(무)	-
계양구	초청	토론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스튜디오	5. 28(금) 20:00~22:00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전영우 (교수)	오성규(한) 박형우(민) 이익진(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20:00~22:00		전영우 (교수)	이병현(무) 이병철(무)	-
서구	초청	토론	티브로드 인천방송 스튜디오	5. 26(수) 21:30~23:30	티브로드 (새롬방송)	정영태 (교수)	강범석(한) 전년성(민) 권중광(무)	-
	비초청	연설		토론 방송에 연이어 방영			박영기(평)	-
강화군	초청	토론	티브로드 인천방송 스튜디오	5. 28(금) 21:30~22:40	티브로드 인천방송 (서해방송)	박효석 (방송인)	유천호(한) 정해남(민) 안덕수(무)	-

■ ■ ■ 광주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광주시장	초청	토론	광주MBC 공개홀	5. 28(금) 22:55~24:40	광주MBC	박용백 (방송인)	정용화(한) 강운태(민) 장원섭(노) 정찬용(참)	-
	비초청			5. 31(월) 14:15~15:05		문병국 (방송인)	윤난실(진) 조홍규(평)	-
비례대표 광주의원	초청	토론	시청자미디어 센터	5. 26(수) 14:00~16:00	광주MBC	문병국 (방송인)	이영희(한) 정현애(민) 전주연(노)	-
	비초청			5. 26(수) 18:50~19:45		박용백 (방송인)	이영선(진) 황순영(참) 신석준(사) 박종철(평)	-
광주시 교육감	초청	토론	KBS 광주 공개홀	5. 26(수) 10:00~11:40	KBS 광주	김광상 (방송인)	김영수(무) 장휘국(무) 이정재(무) 안순일(무)	-
	비초청	대담		5. 26(수) 11:40~12:00		임정섭 (방송인)	고영을(무)	-
동구	초청	토론	광주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0:50	광주MBC	문병국 (방송인)	유태명(민) 임택(참)	-
	비초청	연설		5. 25(화) 10:50~11:00		없 음	임홍채(무)	-
서구	초청	토론	광주MBC 공개홀	5. 24(월) 14:15~16:00	광주MBC	류한호 (교수)	하방수(한) 김선옥(민) 강기수(노) 서대석(참) 전주연(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남구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31(월) 10:00~11:30	KBS광주	주 원 (교수)	성용재(한) 최영호(민) 황일봉(무)	-
북구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7(목) 10:00~11:00	KBS광주	주정민 (교수)	송광운(민) 정형택(노)	-
광산구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4(월) 14:10~16:00	KBS광주	박대식 (방송인)	박창원(한) 민형배(민) 신중철(노) 송병태(참)	-

■ ■ ■ 대전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대전시장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5. 28(금) 23:00~24:40	KBS대전	이영애 (교수)	박성효(한) 김원웅(민) 염홍철(선)	-
	비초청	대답		5. 29(토) 00:40~01:00		이영애 (교수)	김윤기(진)	
비례대표 대전의원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5. 25(화) 14:10~14:50	KBS대전	이영애 (교수)	이영옥(한) 박정현(민) 정하길(선) 이지연(노)	-
	비초청			5. 25(화) 14:50~15:10		이영애 (교수)	정은희(진) 이 훈(참) 김영신(사) 박미경(평)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대전시 교육감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5. 26(수) 10:00~11:40	KBS대전	이영애 (교수)	한승동 오원균 김신호	-
동구	초청	토론	TJB대전 스튜디오	5. 28(금) 14:00~15:10	TJB대전	이충재 (문화센터 원장)	이장우(한) 양승근(민) 한현태(선)	-
	비초청	연설		5. 28(금) 15:10~15:20			박홍기(국)	
중구	초청	토론	TJB대전 스튜디오	5. 26(수) 17:30~18:50	TJB대전	정순오 (교수)	이은권(한) 남 일(민) 박용갑(선)	-
	비초청	연설		5. 26(수) 18:50~19:00			오경근(평)	
서구	초청	토론	TJB대전 스튜디오	5. 28(금) 17:30~18:50	TJB대전	이충재 (문화센터 원장)	조신행(한) 장종태(민) 박환용(선)	-
	비초청	연설		5. 28(금) 18:50~19:00			정주신(국)	
유성구	초청	토론	TJB대전 스튜디오	5. 27(목) 17:30~18:50	TJB대전	이충재 (문화센터 원장)	진동규(한) 허태정(민) 송재용(선)	-
대덕구	초청	토론	TJB대전 스튜디오	5. 26(수) 14:00~15:10	TJB대전	정순오 (교수)	정용기(한) 박영순(민) 최충규(선)	-
	비초청	연설		5. 28(금) 15:10~15:30			오노균(국) 박응용(무)	

■ ■ ■ 울산광역시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울산시장	초청	토론	울산MBC 공개홀	5. 27(목) 23:10~23:40	울산MBC	정준금 (교수)	박맹우(한) 김창현(노) 노옥희(진)	-
비례대표 울산의원	초청	토론 비초청	KBS울산 스튜디오	5. 26(수) 10:00~10:50	KBS울산	김선범 (교수)	이영해(한) 방석수(노)	-
				5. 24(월) 14:10~15:30		김선범 (교수)	장금화(진) 곽선경(국) 전순규(연) 이향희(사)	-
울산시 교육감	초청	토론	KBS울산 스튜디오	5. 28(금) 23:00~24:30	KBS울산	이경찬 (교수)	김복만 장인권 김상만	-
중구	초청	토론	KBS울산 스튜디오	5. 24(월) 23:30~25:00	KBS울산	이경찬 (교수)	박성민(한) 임동호(민) 이철수(무) 조용수(무)	-
남구	초청	토론	울산MBC 공개홀	5. 26(수) 18:30~19:45	울산MBC	정준금 (교수)	김두겸(한) 김진석(노)	-
동구	초청	토론	KBS울산 스튜디오	5. 26(수) 23:30~24:45	KBS울산	이경찬 (교수)	정천석(한) 김종훈(노)	-
북구	초청	토론	울산MBC 공개홀	5. 25(화) 23:10~24:20	울산MBC	정준금 (교수)	류재건(한) 윤종오(노)	-
울주군	초청	토론	울산MBC 뉴스홀	5. 30(일) 08:10~09:25	울산MBC	정준금 (교수)	신장열(한) 이선희(참) 최병권(무)	-
	비초청	연설		5. 30(일) 08:10~09:25		정준금 (교수)	김용원(무) 배병현(무)	-

■ ■ ■ 경기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기 도지사	합동	토론	MBC D 스튜디오	5. 27(목) 23:10~24:40	MBC	신율 (교수)	김문수(한) 심상정(진) 유시민(국)	-
비례대표 경기의원	초청	토론	MBC D 스튜디오	5. 26(수) 14:10~15:40	MBC	신율 (교수)	민경원(한) 이삼순(민) 장경화(선) 박현호(노)	-
경기도 교육감	초청	토론	KBS TS-4 스튜디오	5. 26(수) 10:00~11:40	KBS	신율 (교수)	강원춘 한만용 정진곤 김상곤	-
수원시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5. 24(월) 22:00~23:50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심재인(한) 염태영(민) 신현태(무)	-
	비초청	합동		5. 24(월) 23:50~24:15			유덕화(진) 이윤희(무)	-
성남시	초청	토론	아름방송 본사 3층 스튜디오	5. 26(수) 16:00~18:00	아름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황준기(한) 이재명(민)	이대엽 (무)
의정부시	초청	토론	의정부 문화원	5. 28(금) 19:30~21:00	우리방송 나라방송	소성규 (교수)	김남성(한) 안병용(민) 김문원(무)	-
안양시	초청	토론	(주)Tbroad ABC	5. 25(화) 22:00~23:00	(주)Tbroad ABC방송	정종기 (교수)	이필운(한) 최대호(민)	-
	비초청	연설	방송 스튜디오	5. 25(화) 23:00~23:10			김규봉(무)	
부천시	합동	토론	CJ헬로비전 스튜디오	5. 26(수) 20:00~22:00	CJ 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최용묵 (교수)	홍건표(한) 김만수(민) 유윤상(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광명시	초청	토론	한빛방송	5. 26(수) 22:00	한빛방송	이현정 (변호사)	안병식(한) 양기대(민) 이효선(무)	-
	비초청	연설		토론 종료 후 연이어 방송		이현정 (변호사)	김철환(무)	-
평택시	초청	토론	티브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	5. 25(화) 22:00~24:00	티브로드 기남방송	이원희 (교수)	송명호(한) 김선기(민) 김용한(노)	-
양주시	초청	토론	나라방송 스튜디오	5. 29(토) 19:30~21:00	나라방송 우리방송	김환철 (교수)	현삼식(한) 박재만(민) 임충빈(무)	-
동두천시	초청	토론	나라방송 스튜디오	5. 29(토) 15:30~17:30	우리방송	김환철 (교수)	형남선(한) 오세창(무)	-
안산시	초청	토론	한빛방송 스튜디오	5. 24(월) 22:00~	한빛방송	양훈도 (언론인)	허 승(한) 김철민(민)	박주원 (무)
	비초청	연설		5. 24(월) 15:20~15:30			함운석(참)	-
고양시	초청	토론	문예회관 공연장	5. 27(목) 19:00~21:25	씨앤엠 경기CATV	백종화 (교수)	강현석(한) 최 성(민)	-
과천시	초청	토론	ABC방송 스튜디오	5. 27(목) 22:00~23:30	티브로드 ABC방송	박종수 (교수)	여인국(한) 홍순권(민) 류강용(노) 김형탁(진) 임기원(무)	-
의왕시	초청	토론	ABC방송 스튜디오	5. 24(월) 22:00~23:20	Tbroad ABC방송	정종기 (교수)	강철원(한) 김성제(민)	-
	비초청	연설		5. 24(월) 23:20~23:30			강상섭(무)	-
구리시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8(금) 22:00~23:00	(주)씨앤엠 경동CATV	이지연 (KBS아 나운서)	양태홍(한) 박영순(민)	-
	비초청	연설		23:00~23:12			김수찬(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남양주시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8(금) 19:00 ~ 20:00	(주)C&M 경동CATV	이지연 (방송인)	이석우(한) 이덕행(민)	-
오산시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5. 26(수) 22:00 ~ 23:10	(주)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곽상욱(민) 박신원(선)	이춘성 (한)
화성시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5. 25(화) 22:00 ~ 23:50	(주)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이태섭(한) 채인석(민) 홍성규(노)	-
	비초청	연설		5. 25(화) 23:50 ~ 24:00		장성근 (변호사)	박지영(참)	-
시흥시	초청	토론	한빛방송 스튜디오	5. 25(화) 22:00	(주)T-broad 한빛방송	신현덕 (교수)	최홍건(한) 김윤식(민)	-
군포시	초청	토론	(주)T-broad ABC방송 스튜디오	5. 26(수) 22:00 ~ 23:30	(주)T-broad ABC방송	주삼식 (교수)	부창렬(한) 김윤주(민) 유희열(선) 정금채(무)	-
	비초청	연설		5. 26(수) 23:30 ~ 23:42			송용순(평)	-
하남시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7(목) 19:00부터	경동방송	정용석 (FM분 당대표)	윤완채(한) 이교범(민) 김근래(노) 유병훈(무)	-
파주시	초청	토론	고양시 문예회관	5. 28(금) 19:00 ~ 20:09	(주)씨앤엠 경기CATV	박 용 (방송인)	이인재(민) 황의만(무)	류화선 (한)
여주군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9(토) 22:00 ~ 23:35	경동방송	정용석 (사회자)	김춘석(한) 이희웅(민) 원경희(연)	-
이천시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5. 24(월) 22:00	(주)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교수)	조병돈(한) 엄태준(참)	-
용인시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5. 26(수) 22:00 ~ 23:50	(주)T-broad 기남방송	최우철 (검임 교수)	오세동(한) 김학규(민) 서정석(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안성시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5. 27(목) 22:00~23:15	(주)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교수)	황은성(한) 이수형(민) 한영식(무)	-
	비초청	연설		5. 27(목) 23:20~23:50		이원희 (교수)	이학익(연) 박석규(무) 장현수(무) 허구욱(무)	-
김포시	초청	토론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	5. 27(목) 20:00~22:00 5. 30(일) 20:00~22:00	CJ 헬로비전 드림 씨티방송	이익선 (방송인)	강경구(한) 유영록(민) 김동식(무)	-
광주시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7(목) 22:00~22:50	경동CATV	정용석 (FM분당 대표)	조억동(한) 최석민(민)	-
	비초청	연설		5. 27(목) 토론 방송후 이어서		정용석 (FM분당 대표)	김찬구(무)	손동원 (연)
포천시	초청	토론	나라방송 스튜디오	5. 30(일) 19:30~21:10	나라방송 우리방송	김환철 (교수)	서장원(한) 박낙영(민) 이상만(연)	-
연천군	초청	토론	의정부 문화원	5. 30(일) 15:30~17:30	우리방송 나라방송	소성규 (교수)	김규선(한) 장기현(민) 심진택(선) 박영철(무) 최의순(무)	-
양평군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30(일) 19:00	C&M 경동CATV 양서 유선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김선교(한) 송만기(무) 윤철선(무)	-
가평군	초청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5. 29(토) 19:00~10:23	경동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정진구(한) 이수환(무) 이진용(무)	-

■ ■ ■ 강원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강원 도지사	초청	토론	춘천 MBC 공개홀	5. 27(목) 23:10~24:40	춘천MBC, KBS춘천	김원동 (위원·교수)	이계진(한) 이광재(민)	-
비례대표 강원의원	초청	토론	KBS 춘천 공개홀	5. 21(금) 14:00~15:30	KBS춘천 춘천MBC	한진만 (위원·교수)	김금분(한) 윤병길(민) 한명희(노)	-
	비초청			5. 28(금) 10:00~11:00	KBS춘천	김기석 (교수)	김영순(진) 정민경(창) 변상훈(사)	-
강원도 교육감	초청	토론	KBS 춘천 공개홀	5. 28(금) 23:10 ~29(토) 01:00	KBS춘천 춘천MBC	한진만 (위원·교수)	민병희 권은석 조광희 한장수	-
춘천시	초청	토론	KBS 춘천 공개홀	5. 25(화) 23:10 ~26(수) 00:40	KBS춘천 춘천MBC	김기석 (교수)	이광준(한) 변지량(민) 류종수(신) 최동용(무)	-
	비초청	연설	KBS 춘천 스튜디오	5. 26(수) 00:40~01:00	KBS춘천	-	유현규(참) 심재학(연)	-
원주시	초청	토론	원주 MBC 공개홀	5. 25(화) 23:10~01:00	원주MBC KBS원주	양준모 (교수)	원경목(한) 원창목(민) 김은수(노) 김기열(무)	-
강릉시	초청	토론	강릉 MBC 공개홀	5. 25(화) 23:25~24:25	강릉MBC KBS강릉	고민수 (교수)	최명희(한) 박종택(박)	-
동해시	초청	토론	삼척 MBC 공개홀	5. 26(수) 10:00~11:30	삼척MBC KBS강릉	정정화 (교수)	김학기(한) 한기선(무) 전억찬(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삼척시	초청	대담	삼척 MBC 스튜디오	5. 27(목) 10:00~10:20	삼척MBC KBS강릉	신윤창 (교수)	안호성(한)	김대수 (무)
태백시	초청	토론	KBS 강릉 공개홀	5. 24(월) 14:20~15:55	강릉KBS 삼척MBC	김영식 (교수)	김연식(한) 박종기(무) 김영규(무) 김정식(무)	-
정선군	초청	토론	강릉 KBS 공개홀	5. 27(금) 14:13~15:30	강릉KBS 삼척MBC	김영식 (교수)	유창식(한) 최승준(민)	-
속초시	초청	토론	강릉 KBS 공개홀	5. 28(금) 14:15~15:55	KBS강릉 강릉MBC	신윤창 (교수)	채용생(한) 김병욱(민) 이병선(무)	-
고성군	초청	토론	KBS 강릉 공개홀	5. 26(수) 14:10~16:00	강릉MBC KBS강릉	고민수 (교수)	윤승근(한) 신준수(연) 황종국(무)	-
양양군	초청	토론	KBS 강릉 공개홀	5. 25(화) 14:10~16:00	KBS강릉 강릉MBC	신윤창 (교수)	이진희(한) 김남웅(민) 김관희(무) 정상철(무)	-
인제군	초청	토론	춘천 MBC 스튜디오	5. 26(수) 14:10~15:50	춘천MBC 춘천KBS	김원동 (위원·교수)	박삼래(한) 김관용(민) 이기순(무)	-
홍천군	합동	토론 · 연설	춘천 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2:00	춘천MBC 춘천KBS	김원동 (위원·교수)	홍병천(한) 최근우(민) 허필홍(무) 용석춘(참)	-
횡성군	초청	토론	KBS 원주 공개홀	5. 28(금) 14:10~15:30	KBS원주 원주MBC	유오종 (교수)	한규희(한) 고석용(민)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평창군	합동	토론	KBS 원주 공개홀	5. 24(월) 14:10~16:00 5. 25(재) 10:00~12:00	KBS원주(생) 원주MBC(생) 원주MBC(재)	유오종 (교수)	권순철(한) 이석래(민) 우강호(무) 백용덕(무)	-
화천군	초청	토론	춘천 MBC 스튜디오	5. 28(금) 14:10~15:10	춘천MBC (춘천KBS)	김기석 (교수)	정갑철(한) 송임수(무)	-
철원군	초청	토론	KBS 춘천 공개홀	5. 27(목) 10:00~11:30	춘천MBC	김기석 (교수)	정호진(한) 홍광문(민) 이수환(무)	-

■ ■ ■ 충청북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충북 도지사	합동	토론	청주MBC 스튜디오	5. 27(목) 23:00~24:35	청주MBC 충주MBC	엄태석 (교수)	정우택(한) 이시중(민) 김백균(진)	-
비례대표 충북의원	초청	토론	청주MBC 스튜디오	5. 25(화) 23:10~24:45	청주MBC 충주MBC	엄태석 (교수)	김양희(한) 육미선(민) 장우정(노) 강구성(선)	-
	비초청			5. 28(금) 13:40~15:10		엄태석 (교수)	이향숙(진) 고은영(참) 천문자(연) 이운정(사)	-
충북 교육감	초청	토론	KBS청주 공개홀	5. 28(금) 23:00~24:30	KBS청주 KBS충주	이재은 (교수)	김석현 김병우 이기용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청주시	초청	토론	KBS청주 공개홀	5. 25(화) 14:10~15:40	KBS청주	이재은 (교수)	남상우(한) 한범덕(민)	-
충주시	합동	토론	KBS충주 스튜디오	5. 24(월) 14:10~15:40	KBS충주	한중성 (방송인)	김호복(한) 우건도(민) 최영일(창) 신동환(무)	-
제천시	초청	토론	충주MBC 스튜디오	5. 24(월) 10:20~12:00	충주MBC	신덕식 (방송인)	최명현(한) 서재관(민) 윤성중(선)	-
단양군	초청	토론	KBS충주 스튜디오	5. 21(금) 14:10~15:30	KBS충주	한중성 (방송인)	김동성(한) 이건표(민) 조창배(선) 이완영(무)	-
	비초청	연설		5. 21(금) 15:30~15:40		-	김광직(참)	-
청원군	초청	토론	KBS청주 공개홀	5. 24(월) 14:10~15:40	KBS청주	이재은 (교수)	김병국(한) 이종윤(민) 차주영(선)	-
영동군	초청	토론	청주MBC 스튜디오	5. 30(일) 23:05~24:45	청주MBC	엄태석 (교수)	정진규(한) 박동규(민) 정구복(선) 윤주현(연)	-
보은군	합동	토론	KBS청주 공개홀	5. 21(금) 14:10~15:10	KBS청주	이재은 (교수)	김수백(한) 정상혁(선) 구연홍(연)	-
옥천군	합동	토론	청주MBC 스튜디오	5. 26(수) 23:15~24:35	청주MBC	엄태석 (교수)	김정수(한) 김영만(선) 주재록(연)	-
음성군	초청	토론	충주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2:00	충주MBC	신덕식 (방송인)	이필용(한) 박덕영(민) 이기동(무) 김전호(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진천군	합동	토론	KBS청주 공개홀	5. 28(금) 14:40~16:00	KBS청주	이재은 (교수)	정광섭(한) 유영훈(민) 원용균(진) 김경희(연)	-
괴산군	초청	토론	충주MBC 스튜디오	5. 26(수) 14:10~15:50	충주MBC	신덕식 (방송인)	오용식(한) 노광열(민) 임각수(무)	-
증평군	초청	토론	청주MBC 스튜디오	5. 23(일) 22:45~24:25	청주 MBC	엄태석 (교수)	홍성열(민) 유명호(무)	김두환 (한)

■ ■ ■ 충청남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충남 도지사	초청	토론	대전MBC 스튜디오	5. 27(목) 23:05~00:35	대전MBC	라미경 (교수)	박해춘(한) 안희정(민) 박상돈(선)	-
비례대표 충남의원	초청	토론	대전MBC 스튜디오	5. 25(화) 10:00~12:00	대전MBC	라미경 (교수)	김정숙(한) 박영송(민) 김용필(선) 한준혜(노)	-
	비초청			5. 26(수) 14:10~15:10			이영우(진) 천호선(참) 양승연(연) 김용기(사)	-
충남 교육감	초청	토론	대전MBC 스튜디오	5. 25(화) 23:10~00:10	대전MBC	라미경 (교수)	김종성 강복환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천안시	초청	토론	대전MBC 스튜디오	5. 27(목) 10:00~12:00	대전MBC	라미경 (교수)	성무용(한) 이규희(민) 구본영(선)	-
공주시	초청	토론	공주영상대학 제1스튜디오	5. 25(화) 19:30~21:10	(주)충청 방송	원성수 (교수)	김학현(한) 김선환(민) 오시덕(선) 이준원(국)	-
보령시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5. 24(월) 17:30~18:50	TJB 대전방송	이충재 (대전평송문화 센터원장)	신준희(한) 김기희(민) 이시우(선) 김동일(무)	-
	비초청	연설		5. 24(월) 18:50~19:10			임세빈(무) 양창용(무)	-
아산시	초청	토론	한국폴리텍Ⅳ 대학 디지털 스튜디오	5. 26(수) 21:40~23:00	T-broad 중부 방송사	채경석 (교수)	임좌순(한) 복기왕(민) 강태봉(선)	-
	비초청	연설		5. 26(수) 23:00~23:30			한창대(박) 이건영(무) 이교식(무)	-
서산시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5. 25(화) 14:00~15:20	충남방송	신기원 (교수)	유상곤(한) 신준범(민) 차성남(선) 임덕재(무)	-
태안군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5. 27(목) 10:00~11:10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신기원 (교수)	가세료(한) 진태규(선) 김세희(무)	-
금산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24(월) 14:00~15:00	TJB 대전방송	이충재 (대전평송문화 센터원장)	박병남(민) 박동철(선) 김형기(무)	-
	비초청	연설		5. 24(월) 15:00~15:10			안재희(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연기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31(월) 17:30~18:50	TJB 대전방송	이충재 (대전평송문화 센터원장)	이규진(한) 홍영섭(민) 유한식(선)	-
	비초청	연설		5. 31(월) 18:50~ 19:10			권문용(국) 김준희(연) 이성원(무)	-
논산시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25(화) 17:30~19:00	TJB 대전방송	조명래 (교수)	송영철(한) 황명선(민) 백성현(선)	-
계룡시	초청	토론	공주영상대학 스튜디오	2010. 5.27(목) 19:30~21:10	(주)충청 방송	황복주 (교수)	이기원(한) 조광국(민) 윤차원(선) 최홍묵(국)	-
부여군	합동	토론	공주영상대학 스튜디오	5. 26(수) 15:30~17:10	(주)충청 방송	원성수 (교수)	김대환(한) 윤경여(민) 이용우(선)	-
서천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25(화) 14:00~15:00	TJB 대전방송	정순오 (교수)	노박래(한) 나소열(민) 오세욱(선)	-
홍성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27(목) 14:00~15:40	TJB 대전방송	이충재 (대전평송 문화센터원장)	이규용(한) 김용일(민) 김석환(선) 한기관(무)	-
	비초청	연설		5. 27(목) 15:40~15:50			조성미(무)	-
청양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5. 31(월) 14:10~15:10	TJB 대전방송	이충재 (대전평송 문화센터원장)	이석화(한) 한상돈(민) 김시환(선)	-
	비초청	연설		5. 31(월) 15:10~ 15:20			한덕희(국)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예산군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5. 28(금) 10:00~11:10	CJ 헬로비전	신기원 (교수)	박기청(한) 최승우(선)	-
	비초청	연설		5. 28(금) 11:10~11:20	충남 방송사		황선봉(무)	-
당진군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5. 26(수) 10:00~11:00	CJ 헬로비전	신기원 (교수)	손창원(한) 김 건(민) 이철환(선)	-
	비초청	연설		5. 26(수) 11:05~11:30	충남 방송사		최동섭(무) 최기택(무)	-

■ ■ ■ 전라북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전북 도지사	초청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9(토) 17:15~18:30	전주MBC	유기하 (기자)	정운천(한) 김완주(민) 하연호(노)	-
	비초청			5. 28(금) 17:50~18:30		유기하 (기자)	염경석(진) 김대식(평)	-
비례대표 전북의원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1(금) 14:10~15:1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전희재(한) 정진숙(민) 이현주(노)	-
	비초청			5. 26(수) 14:10~15:10		이영원 (교수)	유재동(진) 양윤신(참) 신석준(사) 구용근(평)	-
전북 교육감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8(금) 23:00~24:4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오근량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중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전주시	초청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4(월) 09:30~10:45	전주MBC	유기하 (기자)	박용갑(한) 송하진(민) 김민아(노) 김희수(무)	-
군산시	합동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31(월) 10:00~11:2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문동신(민) 최재석(진) 서동석(무)	-
익산시	합동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9(토) 09:45~11:00	전주MBC	유기하 (기자)	이한수(민) 김재홍(무) 노경환(무) 박경철(무)	-
정읍시	합동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6(화) 10:00~11:15	전주MBC	유기하 (기자)	김생기(민) 강 광(무) 송완용(무) 허준호(무)	-
남원시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7(목) 10:00~11:2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윤승호(민) 이용호(무) 김영권(무)	-
김제시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6(수) 10:00~11:1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이길동(민) 이건식(무)	-
	비초청	연설		5. 26(수) 11:10~11:20		이영원 (교수)	이홍규(국)	-
완주군	초청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6(수) 09:30~10:35	전주MBC	유기하 (기자)	임정엽(민) 김배옥(무) 이길용(무)	-
	비초청	연설		5. 26(수) 10:35~10:45		유기하 (기자)	이동진(무)	-
진안군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4(월) 14:10~15:1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송영선(민) 김중기(무) 박관삼(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무주군	합동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7(목) 10:00 ~ 11:15	전주MBC	유기하 (기자)	홍낙표(민) 황정수(무) 김흥기(무) 강호균(무)	-
장수군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5(화) 14:10 ~ 15:1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장재영(민) 김상두(무)	-
임실군	초청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28(금) 09:30 ~ 10:10	전주MBC	유기하 (기자)	강완목(민) 이종태(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17:35 ~ 17:50		유기하 (기자)	오현모(무) 이강욱(무)	박영은 (무)
순창군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8(금) 14:10 ~ 15:1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강인형(민) 이흥기(무)	-
고창군	초청	토론	전주MBC 공개홀	5. 31(월) 09:30 ~ 10:45	전주MBC	유기하 (기자)	이강수(민) 박세근(평) 정원환(무)	-
부안군	초청	토론	전주KBS 공개홀	5. 29(토) 09:40 ~ 11:00	KBS 전주	이영원 (교수)	장학웅(한) 김호수(민) 김종규(무)	-

■ ■ ■ 전라남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전남 도지사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8(금) 23:00 ~ 24:30	KBS광주	주원 (교수)	김대식(한) 박준영(민) 박웅두(노)	-
	비초청	대담		5. 27(목) 00:30 ~ 01:00		임정섭 (아나운서)	김경재(평)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비례대표 전남의원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8(금) 14:10~15:10	KBS광주	김광상 (기자)	김인숙(한) 한승주(민) 유현주(노)	-
	비초청			5. 21(금) 14:10~15:10			김미경(진) 김명희(참) 신석준(사) 김종분(평)	-
전남 교육감	초청	토론	광주MBC 공개홀	5. 25(화) 23:00~24:40	광주MBC	박용백 (기자)	김경택 장만채 신태학 김장환	-
	비초청	대담		5. 24(월) 12:40~13:10			곽영표	-
목포시	초청	토론	KBS목포 공개홀	5. 25(화) 10:00~11:40	KBS목포	박종두 (교수)	정종득(민) 박기철(노) 박홍률(무)	-
	비초청	연설		5. 25(화) 11:40~12:00		-	이인호(무) 오원옥(무)	-
여주시	초청	토론	KBS순천 공개홀	5. 31(월) 10:00~11:50	KBS순천	정병준 (기자)	심정우(한) 오현섭(민) 김충석(무)	-
	비초청	연설	KBS순천 스튜디오	5. 31(월) 11:50~12:00		-	김재철(무)	-
순천시	초청	토론	여수MBC 공개홀	5. 25(화) 13:40 ~14:55	여수MBC	박광수 (아나운서)	조보훈(민) 이수근(노) 노관규(무)	-
				5. 26(수) 00:30 ~01:45				
	비초청	연설		5. 25(화) 14:55 ~15:05		박광수 (아나운서)	윤병철(참)	-
				5. 26(수) 01:45 ~01:55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나주시	초청	토론	KBS광주	5. 25(화) 10:00 ~12:00	KBS광주	주원 (교수)	임성훈(민) 주향득(무) 김대동(무) 이광형(무)	-
광양시	초청	토론	여수MBC 공개홀	5. 26(수) 13:35 ~15:10	여수MBC	박광수 (기자)	서종식(민) 박형배(참) 이성웅(무)	-
담양군	합동	연설	KBS광주 공개홀	5. 27(목) 19:30 ~19:50	KBS광주	김기태 (교수)	최형식(민) 김용주(무)	-
장성군	초청	토론	광주MBC 공개홀	5. 23(일) 07:20 ~08:10	광주MBC	류한호 (교수)	김양수(민) 이 청(무)	-
곡성군	합동	연설	KBS광주 공개홀	5. 20(목) 09:20~09:30	KBS광주	-	조형래(민)	허남석 (무)
구례군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1(금) 19:30-20:25	KBS광주	김광상 (방송인)	서기동(민) 이의달(무) 전경태(무)	-
고흥군	초청	토론	KBS순천 공개홀	5. 27(목) 10:00~11:50	KBS광주	복문수 (교수)	박병중(민) 진종근(무) 신금식(무) 김학영(무)	-
	비초청	연설	KBS순천 뉴스부스	5. 27(목) 11:50~12:00		-	송재원(무)	-
보성군	합동	연설	KBS광주 공개홀	5. 24(월) 10:15 ~10:45	KBS광주	김광상 (언론인)	정종해(민) 박철현(무) 이탁우(무)	-
화순군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5. 20(목) 14:10 ~15:10	KBS광주	김광상 (아나운서)	구충곤(민) 임호경(무) 전완준(무)	-
장흥군	초청	토론	목포MBC 공개홀	5. 28(금) 12:40 ~14:15	목포MBC	김선태 (방송인)	이명흠(민) 박형기(노)	-
강진군	초청	토론	목포MBC	5. 24(월) 12:40 ~14:15	목포MBC	김선태 (방송인)	강진원(민) 황주홍(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완도군	초청	토론	목포MBC 공개홀	5. 25(화) 12:40 ~ 14:00	목포MBC	김선태 (방송인)	김종식(민) 김 신(무)	-
	비초청	연설		5. 25(화) 14:00 ~ 14:10		-	이경구(참)	-
해남군	초청	토론	KBS목포 공개홀	5. 26(수) 10:00 ~ 11:10	KBS목포	모지환 (교수)	박철환(민) 이석재(무)	-
진도군	초청	토론	목포MBC 공개홀	5. 27(목) 12:40 ~ 14:15	목포MBC	정기영 (교수)	곽봉근(한) 이동진(민) 김희수(무) 김경부(무)	-
	비초청	연설		5. 27(목) 14:10 ~ 14:15		-	김병동(무)	
무안군	합동	연설	목포MBC 공개홀	5. 26(수) 12:40 ~ 13:10	목포MBC	-	서삼석(민) 양승일(무) 나상길(무)	-
영광군	합동	연설	광주MBC 공개홀	5. 30(일) 07:20 ~ 07:45	광주MBC	김한배 (교수)	정기호(민) 김기열(무)	-
함평군	초청	토론	KBS광주	5. 31(월) 23:30 ~ 24:30	광주KBS	임정섭 (아나운서)	안병호(민) 이상선(무)	-
신안군	초청	토론	KBS목포 공개홀	5. 24(월) 14:10 ~ 15:10	KBS목포	김종익 (목포경찰서 사무국장)	강성중(민) 박우량(무)	-
	비초청	연설		5. 24(월) 15:10 ~ 15:20		-	박세준(무)	-

■ ■ ■ 경상북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북 도지사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28(금) 23:00~24:45	KBS대구	정인수 (언론인)	김관용(한) 홍의락(민) 윤병태(노)	-
	비초청	대담		5. 29(토) 24:45~01:00		정인수 (언론인)	유성찬(참)	-
비례대표 경북의원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26(수) 14:10~15:00	KBS대구	서태교 (언론인)	김세호(한) 장상봉(민) 최난희(노)	-
	비초청	토론		5. 26(수) 15:00~15:50		서태교 (언론인)	송무근(진) 최창진(사) 이경임(박) 김영선(참)	-
경북 교육감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26(수) 10:00~11:00	KBS대구	서태교 (언론인)	이영우(무) 김구석(무)	-
포항시	초청	토론	포항KBS 스튜디오	5. 27(목) 14:10~15:10	KBS포항	임오진 (언론인)	박승호(한) 허대만(민)	-
울릉군	합동	토론	포항MBC 스튜디오	5. 24(월) 23:15~01:15	포항MBC	김철승 (언론인)	정윤열(한) 신봉석(무) 최수일(무)	-
경주시	합동	연설	포항MBC 스튜디오	5. 28(금) 21:55~23:15	포항MBC	김철승 (언론인)	최양식(한) 이광춘(노) 최병도(참) 백상승(무) 황진홍(무) 김백기(무) 김태하(무)	김경술 (연)
김천시	합동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5. 25(화) 16:30~16:55	대구MBC	이성훈 (언론인)	박보생(한) 김웅규(무)	-
안동시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5. 21(금) 22:55~00:40	안동MBC	권영두 (언론인)	권영세(한) 이동수(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구미시	합동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5. 27(목) 17:00~17:35	대구MBC	김종학 (언론인)	남유진(한) 김석호(박) 구민회(무)	-
영주시	초청	토론	안동KBS 스튜디오	5. 24(월) 14:10~15:10	KBS대구	박준형 (언론인)	장욱현(한) 김주영(무)	-
영천시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0(목) 14:00~15:00	대구MBC	이성훈 (언론인)	김영석(한) 이성희(무)	-
상주시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5. 23(일) 22:45~00:15	안동MBC	권영두 (언론인)	이정백(한) 성백영(연) 정 송(무)	-
	비초청	연설		5. 24(월) 00:15~00:25		권영두 (언론인)	이광수(무)	-
문경시	합동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25(화) 14:10~15:10	KBS대구	김명환 (언론인)	김현호(한) 신현국(무) 고재만(무) 임병하(무)	-
예천군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5. 25(화) 23:10~00:30	안동MBC	권영두 (언론인)	이현준(한) 윤영식(무) 김학동(무)	-
경산시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5. 28(금) 14:10~15:10	KBS대구	김상배 (언론인)	이우경(한) 최병국(무)	-
청도군	초청	대담	대구MBC 스튜디오	5. 24(월) 13:35~14:15	대구MBC	김종학 (언론인)	이중근(한)	-
	비초청	토론		5. 24(월) 14:15~14:55		김종학 (언론인)	안성규(연) 박순동(무)	-
고령군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0(목) 17:20~18:30	대구MBC	김환열 (언론인)	곽용환(한) 박홍배(연) 정재수(무)	-
성주군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8(금) 13:40~14:50	대구MBC	이성훈 (언론인)	김향곤(한) 오근화(무) 최성곤(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칠곡군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5. 27(목) 10:00~11:20	대구MBC	김철우 (언론인)	김경포(한) 김시환(무) 배상도(무) 장세호(무)	-
군위군	합동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5. 24(월) 17:35~18:20	대구MBC	이성훈 (언론인)	장 욱(한) 권오준(녹) 오규원(무) 김영만(무)	-
의성군	미개최							
청송군	미개최							
영양군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5. 28(금) 22:55~24:40	안동MBC	권영두 (언론인)	이희지(무) 권영택(무) 권재욱(무)	-
영덕군	합동	연설	포항MBC 스튜디오	5. 26(수) 23:15~23:50	포항MBC	김철승 (언론인)	김병목(한) 이상도(연) 윤희래(무)	-
봉화군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5. 22(토) 22:45~24:05	안동MBC	권영두 (언론인)	박노욱(한) 엄태항(무)	-
울진군	초청	토론	포항MBC 스튜디오	5. 27(목) 23:15~24:25	포항MBC	김철승 (언론인)	김용수(한) 임광원(무)	-

■ ■ ■ 경상남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남 도지사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5. 28(금) 23:00~24:10	KBS 창원	조효래 (교수)	이달곤(한) 김두관(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비례대표 경남의원	초청	토론	KBS 창원 스튜디오	5. 28(금) 14:10~15:40	KBS 창원	이경찬 (교수)	원경숙(한) 김경숙(민) 한장세(선) 이종엽(노)	-
	비초청	토론		5. 31(월) 14:10~15:10		조효래 (교수)	안혜린(진) 박선희(참) 이형진(사)	친박 연합
경남 교육감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7(목) 23:00~24:30	마산MBC 진주MBC	이호영 (교수)	강인섭 고영진 박종훈 김영철 권정호 김길수	-
창원시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8(금) 18:30~19:30	마산MBC	이호영 (교수)	박완수(한) 문성현(노) 전수식(무)	-
	비초청	연설		5. 28(금) 19:30~19:45		이호영 (교수)	김영성(연) 김규문(무) 허상탁(무)	주정우 (무)
진주시	초청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5. 25(화) 23:10~24:45	진주MBC	김중섭 (교수)	이창희(한) 하정우(노) 김권수(무) 정영석(무) 김재천(무)	-
통영시	초청	토론	KBS 창원 스튜디오	5. 27(목) 19:30~20:18	KBS 창원	조효래 (교수)	안휘준(한) 정동영(무) 김동진(무)	-
	비초청	연설		5. 27(목) 20:19~20:25		-	이국민(참)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고성군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5. 24(월) 14:10~15:15	KBS창원	조효래 (교수)	이학렬(한) 하태호(무) 이재희(무)	-
	비초청	연설		5. 24(월) 15:15~15:25		-	박종부(연)	-
사천시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5. 21(금) 14:10~15:10	KBS창원	이경찬 (교수)	정만규(한) 송도근(무)	-
	비초청	연설		5. 20(목) 22:00~22:20		이경찬 (교수)	박용한(무) 박상길(무)	-
김해시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7(목) 18:30~19:35	마산MBC	옥원호 (교수)	박정수(한) 김맹곤(민) 김종간(무)	-
	비초청	연설		5. 27(목) 19:35~19:45		옥원호 (교수)	신용옥(무) 송윤한(무)	-
밀양시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6(수) 17:20~18:25	마산MBC	이호영 (교수)	엄용수(한) 이태권(민)	-
	비초청	연설		5. 26(수) 18:25~18:30		이호영 (교수)	김용문(무)	-
거제시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5(화) 23:00~24:05	마산MBC	옥원호 (교수)	권민호(한) 이세종(노) 김한주(진) 유승화(무)	-
	비초청	연설		5. 25(화) 24:05~24:10		옥원호 (교수)	이태재(무)	-
의령군	합동	연설	KBS창원 스튜디오	5. 27(목) 14:10~14:40	KBS창원	-	김채용(한) 권태우(무) 김진옥(무)	-
함안군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5(화) 17:20~18:30	마산MBC	이호영 (교수)	조영규(한) 하성식(무) 안갑준(무)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창녕군	초청	대담	KBS 창원 스튜디오	5. 26(수) 10:00~10:20	KBS 창원	조효래 (교수)	김종규(무)	김충식 (한)
	비초청	연설		5. 26(수) 10:20~10:30		조효래 (교수)	성이경(무)	-
양산시	초청	토론	KBS 부산 스튜디오	5. 28(금) 23:00~24:15	KBS 부산	조영복 (교수)	나동연(한) 정병문(민) 김일권(무)	-
하동군	합동	연설	진주MBC 스튜디오	5. 28(금) 17:35~18:30	진주MBC	허영희 (교수)	조유행(한) 김종관(무) 양일석(무)	-
남해군	합동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5. 26(수) 17:20~18:30	진주MBC	허영희 (교수)	박정달(한) 전현태(무) 문준홍(무)	-
함양군	초청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5. 24(월) 17:35~18:30	진주MBC	김중섭 (교수)	천사령(한) 박종환(무) 이철우(무)	-
산청군	합동	연설	KBS 창원 스튜디오	5. 27(목) 14:40~15:00	KBS 창원	-	이재근(한) 배성환(연)	-
거창군	초청	토론	KBS 창원 스튜디오	5. 21(금) 19:30~20:25	KBS 창원	조효래 (교수)	이흥기(한) 강석진(무) 양동인(무)	-
합천군	합동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5. 24(월) 17:20~18:30	마산MBC	옥원호 (교수)	심의조(한) 김윤철(무) 하창환(무) 김무만(무)	-

■ ■ ■ 제주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제주 도지사	초청	토론	제주MBC 공개홀	5. 25(화) 23:10~25:10	제주MBC	고태진 (제주MBC 심의위원)	고희범(민) 현명관(무) 우근민(무)	-
				5. 26(수) 10:00~11:50	KBS제주			
비례대표 제주의원	초청	토론	제주MBC 공개홀	5. 25(화) 14:10~15:00	KBS제주	김세균 (KBS제주 심의위원)	강창수(한) 고순생(민) 김영심(노)	-
				5. 26(수) 14:10~16:10	제주MBC			
	초청			5. 27(목) 10:00~11:00	제주MBC	고태진 (제주MBC 심의위원)	이미순(진) 박주희(참) 김동도(사) 강금중(평)	-
				5. 27(목) 10:00~10:50	KBS제주			
제주도 교육감	초청	토론	KBS제주 공개홀	5. 24(월) 14:10~15:00	KBS제주	김세균 (KBS제주 심의위원)	양성언 양창식 부태림	-
				5. 25(화) 10:00~12:00	제주MBC			

02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선거구명	서울시장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10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서울시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서울시 발전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B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C 후보자 재반론(2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B/C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A 후보자 재반론(2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C/A 후보자 반론(각 1분 30초) ⇒ B 후보자 재반론(2분)	19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공약검증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26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뉴타운 및 재개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2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맺 음 말	• C/A/B 후보자(각 1분30초)	4분 30초

선거구명	부산시장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8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 후보자(각 1분)	2분
사회자 공통질문	■ 지역격차 해소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8분)	16분
사회자 공통질문	■ 부산 실업대책 • 사회자 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후보자 주도권토론	■ 신공항 유치에 대한 대책 • B/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3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부산시 인구감소 문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B/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8분)	16분
사회자 공통질문	■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 • 사회자 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 B/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4분)	8분
(예비질문)	■ 사회복지 극대화 방안	
맺 음 말	• B/A 후보자(각 1분)	4분 30초

선거구명	대구시장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분
사회자 공통질문	■ 동남권 신공항 대응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개인신상 관련(선거정보 공개자료)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4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보충질문	■ 공약검증 • A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B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C 후보자 공약발표(1분 30초)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19분 30초
후보자 개별보충질문	■ 자유주제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13분 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자신의 가장 큰 단점 • 사회자 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30초)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실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 고령화사회 해결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9분
후보자 개별보충질문	■ 자유주제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30초)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30초)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30초)	13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존경하는 인물 • 사회자 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30초) ■ 대구시 경제살리기 사업 • 사회자 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 도심개발사업에 대한 견해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 취미생활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30초)	11분
맺 음 말	• C/B/A 후보자(각 1분)	3분

선거구명	인천시장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6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 후보자(각 1분)	2분
사회자 공통질문	■ 대기 및 해양오염 개선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 ■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2분)	9분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보충질문	• A 후보자 공약발표(2분) -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2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2분) -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2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2분) • B 후보자 공약발표(2분) -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2분) -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2분)	28분
사회자 공통질문	■ 개인신상(사회자 자유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30초)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
맺 음 말	• B/A 후보자(각 1분)	2분

선거구명	광주시장(초청)
토론자수	4인
토론시간	10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개별질문	■ 후보공약 검증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D/A/B 후보자 답변(각 1분) ■ 문화수도 조성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D/A/B/C 후보자 답변(각 1분)	9분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	• D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 A/B/C 후보자 질문(각 1분) ⇒ D 후보자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 B/C/D 후보자 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 C/D/A 후보자 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 D/A/B 후보자 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30초)	24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C/D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24분
사회자 공통질문	■ 좌우명 • 사회자 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신규 도심 균형발전 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C/D/A/B 후보자 답변(각 1분)	9분
(예비질문)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맺 음 말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선거구명	대전시장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10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동질문	■ 세종시 문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2분) ■ 동·서 격차 해소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2분) ■ 대전지역 하천 정비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2분)	19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	• B 후보자 공약발표(2분) - C/A 후보자 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C 후보자 공약발표(2분) - A/B 후보자 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공약발표(2분) - B/C 후보자 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18분
사회자 공동질문	■ 대중교통 활성화 • 사회자 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 30초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2분) -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2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C 후보자 보충답변(2분) •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2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2분) -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2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C 후보자 보충답변(2분) • C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2분) - C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2분) - C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C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2분)	36분
(예비질문)	■ 기업 및 국책사업 유치방안 ■ 친환경 도시 개발방안	
맺 음 말	• B/C/A 후보자(각 2분)	6분

선거구명	울산시장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분
사회자 공통질문	■ 울산 실업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의료·문화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책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A/B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5+2 광역경제권 동반 성장 전략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B/C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울산 문화산업 육성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C/A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16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	• A 후보자 공약발표(1분 30초) B/C 후보자 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공약발표(1분 30초) C/A 후보자 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공약발표(1분 30초) A/B 후보자 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15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21분
맺 음 말	• C/A/B 후보자(각 1분)	3분

선거구명	경기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일자리 창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30초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개발과 환경보존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B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교통문제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C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저출산 대책과 여성지원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A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16분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후보자별 공약검증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6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교육협력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A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중소기업지원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B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고령화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C 후보자 보충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16분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C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10분30초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A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자유지정 질문(30초) ⇒ 지정후보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 보충답변(1분)	10분30초
(예비질문)	■ 소상공인 :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맺 음 말	• B/C/A 후보자(각 2분)	6분

선거구명	강원도지사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 후보자(각 2분)	4분
사회자 공동질문	■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치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 30초)	5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자유토론	■ 후보자별 공약검증 • A 후보자 공약발표(3분) 후 자유토론(7분) • B 후보자 공약발표(3분) 후 자유토론(7분)	20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14분
사회자 공동질문	■ 지역갈등해소 및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 30초)	5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14분
사회자 공동질문	■ 강원도내 인재발굴 정책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2분 30초) ■ 지역내 중소기업 회생 및 발전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2분 30초)	11분
(예비질문)	■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	
맺 음 말	• B/A 후보자(각 2분)	4분

선거구명	충북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시·군간 지역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C/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 충주기업도시, 중부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아동 및 여성성폭력 근절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10분
	■ 자영업, 소상공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부양책 마련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사회적 약자의 보호정책 및 다문화가정지원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노인의 복지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6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C/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8분
(예비질문)	■ 충북의 관광 기반시설구축, 국내외 홍보방안 ■ 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한 견해와 근본적 해결방안	
맺 음 말	• C/B/A 후보자(각 1분)	3분

선거구명	충남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세종시 건설 방향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2분) ■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2분) ■ 무상급식(대상범위, 예산마련 방법 등)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2분)	7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과 그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C/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 공직부패 척결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2분)	6분 30초
(예비질문)	■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맺 음 말	• B/C/A 후보자(각 2분)	6분

선거구명	전북도지사(초청)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7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분
사회자 개별질문	■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 책임론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진보진영 분열에 대한 책임론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대한 책임론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	• A 후보자 공약발표(1분) - B/C 후보자 개별질문(각 1분) ⇒ A 후보자 답변(2분) • B 후보자 공약발표(1분) - C/A 후보자 개별질문(각 1분) ⇒ B 후보자 답변(2분) • C 후보자 공약발표(1분) - A/B 후보자 개별질문(각 1분) ⇒ C 후보자 답변(2분)	15분
시청자 질문 (선택형)	■ 전북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 시청자 영상질문(각 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15분
사회자 공통질문	■ 전북 식품산업 발전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분 30초
(예비질문)	■ 4대강으로 인한 전북소외 문제 ■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	
맺 음 말	• C/A/B 후보자(각 1분)	3분

선거구명	전남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쌀값 안정, 농가소득 증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10분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방안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18분
사회자 공통질문	■ 농촌 노인 복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10분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A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2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 B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4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4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사회자 개별질문	■ F1대회 성공개최 및 장기발전계획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다문화가정 지원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농산물 판로 및 유통시설 확충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6분
예비질문	■ 도로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	
맺 음 말	• C/A/B 후보자(각 1분 30초)	4분30초

선거구명	경북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10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경북의 일자리창출 복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 저출산 대책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귀농인구 정착 지원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세종시와 중복된 경북지역 추진사업들의 해결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10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경북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경북의 예산배정 분야별 우선순위 등 계획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10분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형	• B 후보자 공약발표(2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공약발표(2분)	1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공약발표(2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사회자 공통질문	■ 도청이전사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증진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자유주제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10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견해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공직기강 문제점 및 해결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교류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6분
(예비질문)	■ 지역축제 정비 대책 ■ 경험해본 사회봉사활동과 그 소감 ■ 지역간격차 불균형해소방안 ■ 낙후된 시·군의 복지수준 향상 해결책	
맺 음 말	• C/B/A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선거구명	경남도지사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7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 후보자(각 1분 30초)	3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후보 자질검증 • 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10분)	20분
사회자 공통질문	■ 일자리 창출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경남 원예농가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7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후보 공약 검증 • B/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10분)	20분
사회자 공통질문	■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정치 또는 행정지도자 중 롤모델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7분
맺 음 말	• B/A 후보자(각 2분)	4분

선거구명	제주도지사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12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제주의 미래, 그 비전과 전략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자유토론 (시간총량제)	■ 일자리 창출 방안 • 후보자 자유토론(각 5분) ■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 후보자 자유토론(각 5분)	30분
사회자 공통질문	■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과 그 갈등 해결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15분
사회자 공통질문	■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입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C/A/B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15분
사회자 공통질문	■ 한중FTA에 대한 입장과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예비질문)	■ 4.3 왜곡방지 대안	
맺 음 말	• B/C/A 후보자(각 1분)	3분

제04절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01 개최 결과

- 정당명 약칭 :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선),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창), 국민참여당(참), 사회당(사), 통일당(통), 무소속(무)
- 초청 및 비초청후보자의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의 경우 참석한 비초청후보자를 “○○○” (밑줄) 표시

■ ■ ■ 2010. 7. 28 실시 재 · 보궐선거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은평구 을	초청	토론	CJ 헬로비전 방송 스튜디오	7. 22(목) 20:00 ~ 22:00	7. 22(목) 20:00 ~ 22:00	CJ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	김광석 (방송인)	이재오(한) 장 상(민) 이상규(노) 공성경(창) 천호선(참)	-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비초청	연설	CJ 헬로비전 방송 스튜디오	7. 21(수) 14:00~14:20	7. 22(목) 22:00~22:20	CJ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	심중보 (방송인)	금 민(사) 안용현(통)	-
계양구 을	초청	토론	CJ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 스튜디오	7. 20(화) 14:00~16:00	7. 22(목) 22:00~24:00	CJ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	김규원 (경인방송 보도국장)	이상권(한) 김희갑(민) 박인숙(노)	-
광주 남구	초청	토론	KBS광주 방송총국 공개홀	7. 22(목) 19:30~20:25	7. 22(목) 19:30~20:25	KBS광주	류한호 (교수)	장병완(민) 오병윤(노)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초청	토론	춘천MBC 예술극장	7. 26(월) 23:30~24:50	7. 26(월) 23:30~25:10	춘천 MBC KBS춘천	한진만 (교수)	한기호(한) 정만호(민) 박승흡(노)	-
	비초청	연설	춘천MBC 뉴스홀	7. 26(월) 13:00~16:00				정태수(무) 구인호(무)	-
원주시	합동	토론	원주MBC 공개홀	7. 19(월) 23:30~01:00	좌동	원주 MBC KBS원주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인섭(한) 박우순(민) 함종한(무)	-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초청	토론	KBS원주 방송국 공개홀	7. 22(목) 14:10~15:10	7. 22(목) 14:10~15:10	KBS(원 주, 강릉) MBC(원 주, 삼척)	김원동 (교수)	염동열(한) 최종원(민)	-
충주	초청	토론	KBS충주 스튜디오	7. 21(수) 23:30~25:00	7. 21(수) 23:30~25:00	KBS충주	한중성 (방송인)	윤진식(한) 정기영(민) 맹정섭(무)	-
천안시 을	초청	토론	대전MBC 스튜디오	7. 23(금) 21:55~23:25	7. 23(금) 21:55~23:25	대전MBC	정순오 (교수)	김호연(한) 박완주(민) 박중현(선)	-
			대전KBS 스튜디오	7. 26(월) 14:10~15:00	7. 26(월) 14:10~15:00	대전KBS	이영애 (교수)	김호연(한) 박완주(민) 박중현(선)	-

■ ■ ■ 2010. 10. 2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구 청장	합동	토론	광주 MBC 스튜디오	10. 25(월) 23:15 ~ 24:25	10. 25(월) 23:15 ~ 24:25	광주MBC	유한호 (교수)	김선옥(민) 서대석(참) 김종식(무) 박금자(무)	-
의령 군수	초청	대담	KBS 창원 스튜디오	10. 21(목) 14:00 ~ 15:00	10. 21(목) 19:30 ~ 19:50	KBS창원	주효래 (교수)	김채용(한)	-
	비초청	연설	KBS 창원 스튜디오	10. 21(목) 15:00 ~ 16:00	10. 21(목) 19:50 ~ 20:10	KBS창원	주효래 (교수)	서은태(무) 오영호(무)	-

02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 ■ ■ 20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구명	은평구을 국회의원
토론자수	5인
토론시간	12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D/E 후보자(각 1분)	5분
사회자 공통질문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양극화 해소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1분 30초) ⇒ B/C/D/E/A 후보자 답변(각 1분)	6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국립보건연구원부지 활용 방안 • 사회자 질문(1분) ⇒ C/D/E/A/B 후보자 답변(각 1분) ⇒ C 후보자 반론(2분) ■ 환경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정부의 정책 • 사회자 질문(30초) ⇒ D/E/A/B/C 후보자 답변(각 1분) ⇒ D 후보자 반론(2분) ■ 청소년 복지제도 개선 사항과 복지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E/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E 후보자 반론(2분)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해소 지원 • 사회자 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반론(2분) ■ 실천가능한 교통문제 해소방안 • 사회자 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반론(2분)	40분 30초
후보자 모두발언 후 주도권토론	■ 공약발표 • 사회자 (1분) ⇒ D/E/A/B/C(각 2분) ■ 주도권토론 • 사회자 (1분) ⇒ D/E/A/B/C(각 9분)	57분
사회자 공통질문	■ 학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각 1분)	5분 30초
맺 음 말	• B/C/D/E/A 후보자(각 1분)	5분 30초

선거구명	계양구를 국회의원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85분 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C/B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제1주제 • 사회자 질문(30초) ⇒ C/B/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제2주제 • 사회자 질문(30초) ⇒ B/A/C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10분
사회자 개별질문	■ 제3주제 • 사회자 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30초) ■ 제4주제 : A 후보자 같은 방식 진행 ■ 제5주제 : A 후보자 같은 방식 진행	21분
후보자 공약발표 후 보충질문	■ 제1공약 • A 후보자 발표(1분 30초) ⇒ C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 A 후보자 같은 방식 진행 • B 후보자 : A 후보자 같은 방식 진행 ■ 제2공약 : 제1공약 같은 방식 진행 • 발표순서 : A/C/B	39분
맺 음 말	• A/C/B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선거구명	광주남구 국회의원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55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 후보자(각 1분 30초)	3분
사회자 공동질문	■ 지방재정 확충 방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후보자 공약발표 후 상호 토론	■ 효사랑 생활지원센터 설립 • A 후보자 공약 발표(1분 30초)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재질문(1분) ⇒ A 후보자 재답변(1분) ■ 남구예산 2배 확보 • B 후보자 공약 발표(1분 30초) ⇒ A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재질문(1분) ⇒ B 후보자 재답변(1분)	11분
개별질문 및 상호 토론	■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향 • 사회자 질문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 여성경제활동보장과 저출산 극복대책 • 사회자 질문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7분
자유주제 상호 토론(1)	• A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8분
자유주제 상호 토론(2)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1분)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1분)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8분
예비질문(1)	■ 정치인의 사명감과 정치안정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답변(1분)	2분
예비질문(2)	■ 발의하고 싶은 법안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답변(1분)	2분
맺 음 말	• A/B후보자(각 1분 30초)	3분

선거구명	철원·화천·양구·인제군 국회의원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10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상호 토론	• C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재질문(1분) ⇒ A 후보자 재답변(1분) • A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재질문(1분) ⇒ B 후보자 재답변(1분) • B 후보자 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재질문(1분) ⇒ C 후보자 재답변(1분)	13분 30초
후보자 개별질문	• 후보자에게 질문(각 30초) ⇒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6분
후보자 상호 토론	• B 후보자 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재질문(1분) ⇒ A 후보자 재답변(1분) • C 후보자 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재질문(1분) ⇒ B 후보자 재답변(1분) • A 후보자 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재질문(1분) ⇒ C 후보자 재답변(1분)	13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후보자 자유토론	• A 후보자 질문(1분)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재질문(1분) ⇒ 지정 후보자 재답변(1분) • B 후보자 질문(1분)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재질문(1분) ⇒ 지정 후보자 재답변(1분) • C 후보자 질문(1분)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재질문(1분) ⇒ 지정 후보자 재답변(1분)	13분 30초
예비질문	• 예비공통질문 1 B/C/A • 예비공통질문 2 C/A/B • 예비공통질문 3 A/B/C	
맺 음 말	• 질문(30초) ⇒ C/A/B 후보자(각 2분)	6분 30초
비초청 연설후보	• 무소속 정태수 후보 연설(10분)	10분
비초청 연설후보	• 무소속 구인호 후보 연설(10분)	10분

선거구명	원주시 국회의원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지정주제 상호 토론	• 사회자 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후보자 주도토론 A/B/C (각 5분)	10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지정주제 상호 토론	• 사회자 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 후보자 주도토론 A/B/C (각 5분)	10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상호자유토론	• 사회자 멘트(1분) ⇒ C/A/B 후보자 주도토론(각 5분)	16분
맺 음 말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30초

선거구명	영월군 국회의원
토론자수	2인
토론시간	6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2분
사회자 공통질문	■ 공통질문1(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공약발표	■ 공약발표(각 1분 30초) ⇒ 공약토론(각 5분)	13분
주제토론	■ 지역현안 상호 토론 • B/A 후보자 답변(각 6분)	12분
사회자 공통질문	■ 공통질문2(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3분 30초
맺 음 말	• A/B 후보자 (각 1분 30초)	3분

선거구명	충주시 국회의원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 후보자(각 1분 30초)	4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4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10초
개별질문 상호 토론	• 사회자 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30초) ⇒ A 후보자 반론(1분) ⇒ C 후보자 재반론(1분) ⇒ B 후보자 반론(1분) ⇒ C 후보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30초) ⇒ B 후보자 반론(1분) ⇒ A 후보자 재반론(1분) ⇒ C 후보자 반론(1분) ⇒ A 후보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30초) ⇒ C 후보자 반론(1분) ⇒ B 후보자 재반론(1분) ⇒ A 후보자 반론(1분) ⇒ B 후보자 재반론(1분)	18분
후보자 주도권토론	• A/B/C 후보자 질문(각 1분) ⇒ 답변(각 1분), 4회 *주제와 관련해 상대후보 지정 후 4번의 질문 자유롭게 활용 *반드시 다른 2명의 후보에게 1회 이상 질문 (문제제기)	24분
후보자 주도권토론	• B/C/A 후보자 질문(각 1분) ⇒ 답변(각 1분), 4회 *주제와 관련해 상대후보 지정 후 4번의 질문 자유롭게 활용 *반드시 다른 2명의 후보에게 1회 이상 질문 (문제제기)	24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질문(4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10초
맺 음 말	• A/B/C 후보자 (각 1분 30초)	4분 30초

선거구명	천안시를 국회의원
토론자수	3인
토론시간	9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B/C/A 후보자(각 2분)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질문(30초) ⇒ C/A/B 후보자(각 2분)	6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 사회자질문(30초) ⇒ A 후보자(2분) • 사회자질문(30초) ⇒ B 후보자(2분) • 사회자질문(30초) ⇒ C 후보자(2분)	7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사회자규칙설명(1분) ⇒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9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질문(30초) ⇒ C/A/B 후보자(각 2분)	6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사회자규칙설명(1분)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19분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질문(30초) ⇒ B/C/A 후보자(각 2분)	6분 30초
예비공통질문	• 사회자질문(30초) ⇒ C/A/B 후보자(각 1분)	3분 30초
맺 음 말	• 예비질문을 할 경우 A/B/C(각 2분)	6분
	• 예비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 C/A/B(각 2분)	

■ ■ ■ 2010. 10. 2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구명	광주서구청장
토론자수	4인
토론시간	7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B/C/D 후보자(각 1분 30초)	6분
사회자 공통질문	■ 공직사회 비리척결 • 후보자 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1분)	4분 30초
후보자 주도권 토론	• 사회자 멘트(30초) ⇒ <C 후보자> A/B/D 후보자 중 1인에게 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30초) ⇒ 보충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보충답변(1분) ⇒ D/A/B 후보자 동일한 방법으로 토론	30분 30초
후보자 공약질문	• 사회자 질문(각 30초) ⇒ D/A/B/C 후보자(각 1분 30초)	8분
사회자 공통질문	■ 도시균형 발전방안 • A/B/C/D 후보자 답변(1분 30초)	6분
예비질문	• 사회자 설명 ⇒ B/C/D/A 후보자(각 1분)	4분
맺 음 말	• B/C/D/A 후보자(각 1분 30초)	6분

선거구명	의령군수
토론자수	1인
토론시간	20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 A 후보자(1분 30초)	1분 30초
사회자 질문	• 질문① - 답변(1분 30초) • 질문② - 답변(1분 30초)	3분
공약검증	• 질문① - 답변(1분 30초) • 질문② - 답변(1분 30초)	3분
지역현안	• 질문① - 답변(1분 30초) • 질문② - 답변(1분 30초)	3분
맺 음 말	• A 후보자 (1분 30초)	1분 30초

제05절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자료



01

「지방선거 후보 토론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50주년 기념행사 및 봄철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 일 시 : 2009년 6월 5일(금) 14:00 ~ 15:5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0C
- 주 관 : 한국언론학회
- 후 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1주제

-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권 혁 남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제2주제

-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권혁남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머리말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와 실제현황

선거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결정적이다.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결정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으로 유도한다. 따라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한 투표행태가 담보되어야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TV토론의 가치는 빛난다.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 풍부하고, 제3자에 의해 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가 직접 채취하여 후보들에 대한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TV토론은 정치문화와 선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수단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전달할 수 있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중요한 선거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TV토론은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으로 비판받았던 동원정치, 길거리정치라는 고비용 선거 구조를 미디어 정치라는 저비용 선거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TV토론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후보들 간의 논쟁 대결을 통해 이들의 자질과 정책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새롭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 긴장감과 현장감, 그리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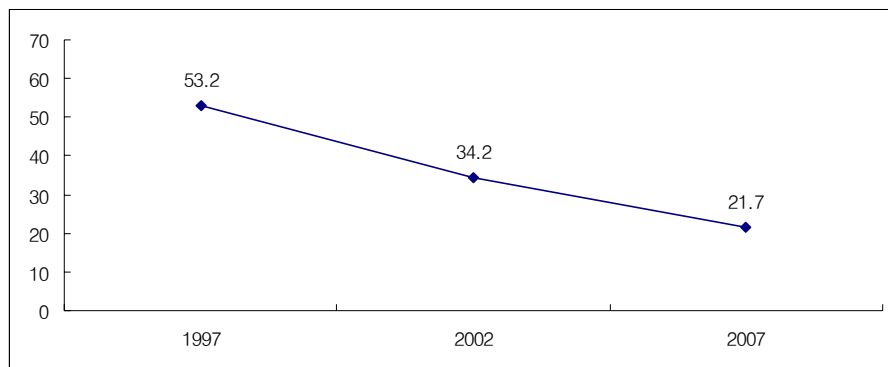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해주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 개인이 직접 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권혁남, 2006). 또한 유권자들은 TV토론을 통해 국가나 지역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TV토론을 가장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2차 합동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2002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시민 500명을 상대로 조사된 양승찬(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비록 지난 15대 대선(31.3%)에 비해 그 비율(22.8%)이 크게 떨어졌지만 TV토론은 여전히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선거에 TV토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이제 겨우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TV토론이 후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후보들의 정책이나 자질 등을 제대로 비교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방송토론의 시청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 강력한 증거물로 인용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한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은 53.2%였으나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34.2%로 떨어졌고,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21.7%로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는 대통령선거의 TV토론 시청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국회 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의 TV토론 시청률은 말할 것도 없다. 비록 후보자 간 토론이 아니라 정책토론회이기는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 실시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을 보면 1차 정책토론회 4.3%, 제2차 정책토론회 2.8%, 제3차 토론회 4.8%를 기록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또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직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TNS기준으로 1차 정책토론회 1.8%, 제2차 정책토론회 1.6%, 제3차 토론회 4.4%를 기록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6). 물론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간 토론이고, 총선과 지방선거는 정책토론회라는 차이는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간 토론회 역시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1〉 제15·16·17대 대통령선거 TV 토론 시청률 평균



자료 : 안차수(2006)

2 좋은 선거방송토론의 조건

좋은 선거방송토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성공적인 선거방송토론이 갖춰야 할 유용성, 공정성, 흥미성 등의 3대 가치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토론이라고 본다. 대체로 유용성은 선거방송토론의 내용과 효과적 측면을, 공정성은 토론의 형식적 측면을, 그리고 흥미성은 토론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먼저 유용성이란 TV토론이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과 정책들을 잘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정보성 또는 심층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용성이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얻는 효과성을 의미한다.

공정성이란 토론회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순서 등에서의 후보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방송토론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보통 답변시간은 1분에서 2분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선거방송은 정치과정에 포함되므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TV토론을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조차 TV토론은 공정성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TV토론을 주관해 온 미국여성유권자연맹이 토론 주최권을 포기한 이유도 후보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 오랜 기간 방송의 편파·불공정 선거보도를 경험해 온 우리나라에서 TV토

론의 공정성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송종길, 2006).

그렇지만 지나친 공정성은 유용성과 흥미성을 반감시킨다는 점이 문제이다. 흥미성이란 토론이 활력 있고 생동감 있게 이루어져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아무리 금과옥조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TV토론이 지나치게 공정성에 함몰되어 딱딱하거나 재미없게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은 토론을 외면하고 만다.

II 선거방송토론 관련 선거법 내용

현재 우리나라 공직후보 TV토론과 관련한 법제도는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한 달 정도 앞둔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를 미디어선거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미디어·인터넷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운동장유세를 폐지했다(박상호, 2006).

가장 중요한 변화는 TV토론제도의 완전 도입이다. 공영방송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거법에 의한 독립기구로 상설화하였다. 대통령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뿐만 아니라 16개의 광역시와 도 그리고 구·시·군에 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개정선거법은 TV토론을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확대하였다.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미디어 선거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정내용은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구·시·군의 장 선거에까지 확대하고 공직후보들의 TV토론 참여를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으로 인해 선방송토론위원회는 거의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을 법적으로 주관하는 주체가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에 의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방식은 규정되며,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해야 하는 법정토론회를 주관한다. 법정토론회는 선거수준에 따라 토

론 횟수, 토론개최방식이 다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상호, 2006).

● 토론회 개최 횟수

- ① 시·도지사선거
 - 주 최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초청대상자 : 후보자
-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주 최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초청대상자 :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 ③ 자치구·시·군의장선거
 - 주 최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초청대상자 : 후보자

● 토론 참여자격

-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
-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③ 직전선거에서 당해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 선거방송토론 중계방송(방송사)

•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

- ① 공영방송사(KBS, MBC)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법 8의7②)
- ② 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 일정을 정하면 공영방송사는 동시에 이를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KBS나 MBC중 1개의 방송사만 중계방송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대담·토론회를 2회이상 개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대담·토론회마다 양사 모두가 동시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

- ① 공영방송사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Ⅲ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토론자 수가 너무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론회에 참가하는 토론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행 우

리 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 진행과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토론의 흥미성 또는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유권자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토론회 참여 후보의 자격 기준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모든 후보들을 토론회에 참여시켜 자신의 정책과 철학, 비전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군소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6명의 후보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유례없는 6인 토론회는 토론 형식에 결정적 압박을 주었다.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힘들고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후보당 총 발언 시간은 15-20분을 넘지 못했다. 상호 토론은 논의를 심화시키거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들어내 보이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다자간 토론, 특히 3인 이상의 토론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안차수, 2006). 그 결과 17대 대선 선거방송토론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말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실시되었던 선거방송토론에서 토론참여자 3명이었던 토론회가 77건(34.8%), 4명이 67건(30.3%), 6인 이상이 2건(0.9%)이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6).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3인 참여 토론회가 69건(35.9%), 4인이 53건(27.6%), 5인이 18건(7.8%), 6인 2건(1.0%), 7인이 1건(0.5%)이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자격기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사실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자격기준을 낮추면 군소후보와 정치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TV토론 자체가 난잡해지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TV토론 무용론이 등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후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고 자격기준을 높이면 군소후보나 정치신인들의 등장이 어려워지고 만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식(2006)은 “우리나라의 정당구조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선거는 3인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는 5인 이상의 후보자가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TV토론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반면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격기준 강화 주장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선거방송토론’이란 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

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은 공정한 게임 룰로서의 의미와 함께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하고 각종 법과 제도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TV토론 참여는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이들의 토론회 참여를 막는 것은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선거를 하지 말라’, ‘다수당은 영원한 다수당, 소수당은 영원한 소수당으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왜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고, 발언시간까지 기계적으로 배분하겠는가? ‘공정성’이 선거방송토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토론자격을 다수당에 한정하는 것은 편파성을 넘어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김장호, 2006).

2 토론회가 너무 많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실시되는 선거방송토론회 이외에 개별 토론회, 정당 내부 후보 경선 토론회 등의 토론회가 너무 많아 TV토론에 대해 식상을 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홍수’라고 표현될 만큼 많은 토론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를 돌이켜 보면 한국방송클럽 소속 6개 방송사가 방송한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3회(11월), KBS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5회(10-11월), 그리고 SBS 대선후보 초청대담 4회(10-11월)와 대선후보 검증토론회 6회(12월)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일으키는 데 부족했다(안차수, 2006).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각 방송사별로 선거 토론을 경쟁적으로 벌여 후보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텔레비전 토론을 치러야 했다. 민주당의 경우 3개월간 총 20회를 치렀으며 심지어 한나라당의 경우 한 달 동안 15번 텔레비전 선거 토론을 하게 되었다. (이상철, 2002) 그러다 보니 개별 토론회, 정당 내부 후보 경선 토론회 등의 남발로 인해 국민들의 TV토론에 대한 식상을 주어 이들 토론회의 시청률이 겨우 1-4%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러한 토론회의 남용으로 인해 공식적 선거기간에 있었던 선거방송토론회의 시청률이 더욱 낮아진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던 한 정당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

으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선거가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법정토론회가 대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사(TV, 라디오), 신문사,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토론회가 홍수에 이를 지경이었다. 필자가 참모로 참여한 선거에서도 녹화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2-3번씩 개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토론주제 또한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같은 후보, 비슷한 주제, 비슷한 형식의 토론이 이루어져, 후보는 후보대로 시달리고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식상하여 토론회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비법정 토론회의 경우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직능 단체 간 공동주최를 통해 토론회 횟수를 줄이고, 주제 또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장호, 2006).”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각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여 공영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법정 선거방송토론회가 방송될 무렵에 민영방송이 별도로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있어 유권자들에게 짜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③ 방송시간대 문제

선거방송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토론회의 방송 시간대가 일반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선거방송토론회는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오후 6시-10시 사이에 방송된 경우는 지상파방송은 겨우 3.3%였고, 케이블TV가 20.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지상파방송의 경우 정오-오후 4시(37.6%), 밤 10시 이후(25.5%), 오전 9시-12시(17.1%) 사이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심지어 오전 7시-8시에 방송된 경우도 6건(2.8%)이나 되며, 밤 12시-새벽 1시에 방송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표 1] 2006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간대

구분	09:00 이전	09:00 - 12:00	12:00 - 16:00	16:00 - 18:00	18:00 - 22:00	22:00 이후
KBS · MBC · 민방	12 5.6%	37 17.1%	77 37.6%	27 12.5%	7 3.3%	55 25.5%
케이블TV	2 2.4%	17 20.4%	13 15.6%	22 26.5%	17 20.4%	12 14.5%

4 유권자 소외문제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참여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국민적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과정에 유권자들이 크게 소외되어 있듯이 선거방송토론 역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참여권이 없으며 동시에 유권자들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토론에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 즉 의제 설정권 또는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방송토론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후보자 의제(candidate agenda)와 언론이 스스로 제기하는 미디어 의제(media agenda)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유권자들의 의제(public agenda)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제를 토론의제(debate agenda)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토론 포맷의 문제

선거방송토론의 시청률 하락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천편일률적인 토론 형식에도 책임이 있다. 선거방송토론은 공정성과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방송토론 주최자들과 방송사들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편일률적인 토론 포맷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선거방송토론 포맷은 후보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제약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계적 형평성이 문제이다. 공정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1분 30초, 1분 등 답변시간이 기계적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이 매우 제한된 형식 속에서 어떻게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며, 후보 간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포맷으로 토론회를 진행함에 따라 TV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자신이 없는 질문에 대해 주어진 응답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6 후보자들의 발언시간이 너무 짧다

현재의 선거방송토론회는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토론회 참가자 수, 그리고 토론 형식 등과 직결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들은 16대 대선의 TV합동토론회의 문제점으로서 “발언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43.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15대 대선 때의 37.7%보다 약 6%포인트가 늘어났다(양승찬, 2003).

후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해야 1-2분 안에 짜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요약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론적이고 당위론적 답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후보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다. 이것은 후보자들의 임기응변 능력만을 부각시킬 뿐 정책 차별성을 도출시키지 못한다. 또한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지 못해 후보자 발언의 진위나 현실 실현성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이종수, 2002).

7 사회자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사실 대통령선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토론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은연중에 사회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되어 토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자칫 토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자의 개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보들은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토론규칙을 최대한 이용한다(송종길, 2003). 사회자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8 토론 참여를 거부하는 후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대담 토론회에 불참한 사례가 전국 243개 선거구에서 모두 33개 선거구에 달했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해 방송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부 후보들의 TV토론 기피로 인해 TV토론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시 서울의 경우 전체 48개 선거구에서 16개 선거구, 경기 지역은 전체 49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에서 선거방송토론이 무산되고 말았다. 선거방송토론이 무산된 선거구에서는 TV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이는 주요 메이저 후보들이 방송시설 미비의 이유를 들어 TV토론을 기피하는 바람에 차선택으로 TV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는 「선거법」 82조의 2에서 TV토론과 합동토론회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 연설에 불과한 합동토론회보다는 후보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토론을 더 원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TV토론을 강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82조의 2에서 합동토론회를 선택적으로 열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9 토론회 참여 후보 선정을 위한 정확한 여론조사 데이터가 필요하다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의 세 번째 자격조건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

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론사들이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5%의 지지율 기준을 만족시키는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에서 일부 후보의 이름이 누락된 점 등을 두고서 적지 않은 시비가 일고 있다.

IV

선거방송토론의 새로운 방향과 개선방안

선거방송토론의 중심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참여를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후보 간 차별화된 정책이나 이슈 입장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서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V토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1 토론회 참여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인데, 그 주된 원인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정성 가치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공정성 가치만큼 중요한 흥미성과 유용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게 된다.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토론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방송토론회는 결코 후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올바른 후보선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선 가능성과 국민적 지지가 낮은 후보자들을 토론회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3%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를 위해 3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 또한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수의 후보들이 토론회에 출연하면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발언시간이 줄어든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군소정당 후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강지연, 2006).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회 참여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① 원내 교섭단체 소속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이거나 또는 ② 토론회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통령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지지율 기준을 지금과 같이 5%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가 2-3명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대결 토론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론회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초청 후보자들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연설의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한다.

② 유권자들을 토론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제를 토론의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제 방송

토론 포맷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토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이준웅(2006)의 실험연구에 따르면, 후보 간 직접토론방식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시민참여형 토론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성 평가에서는 시민참여형 토론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적인 시간 배분보다는 후보 간 직접토론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토론 포맷을 적극 활용해야만 TV토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한국형’ 시민참여토론 포맷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김춘식, 2006).

현재 선거 때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유권자 의제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론회의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부 선거와 광역선거구에서만 나타나고 있을 뿐 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유권자 의제를 토론의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 토론만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TV토론의 과잉은 유권자들에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식상을 가져다주고 효용성 논란을 일으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선방위가 직접 주최하는 TV토론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일체의 TV토론을 금지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대신에 필요하다면 선방위 주최 TV토론 횟수를 늘리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선거방송토론의 중계를 공영방송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민영방송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충분한 방송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경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 선거방송토론 시간대를 설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번두리 시간대에 선거방송토론을 방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파낭비에

다름 아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관심도 역시 높은 대통령선거는 프라임 타임대에 지상파방송을 통해 토론회를 방송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시청자마다 제각기 선거구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관심사도 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프라임 타임대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프라임 타임대는 아니지만 비교적 유권자들의 접근이 높은 시간인 11시대를 대담토론이나 합동방송연설회 시간대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민영방송을 포함한 3개의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간대에 선거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일정 자격기준을 갖는 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부 유력 후보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토론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앞에서 제안한 선거방송토론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면 유력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유자격 후보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거나 국고지원금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선거법」 82조의 2에서 토론회 대신 합동연설회를 선택적으로 열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6 사회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선거방송토론회는 후보들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때 사회자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는 토론이 주어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의제 통제권을 부여해야 하며, 후보들의 논쟁 대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보충 질의권을 주어야 하고, 후보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중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7 질문의 수를 줄이고 후보들이 답변 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총량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선거방송토론은 각 후보들에게 기초연설 3분, 사회자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반론과 재반론이 각 1분, 마무리 연설 2분씩의 시간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변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후보들의 답변시간이 짧아 심층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질문 수를 줄이는 대신에 질문의 무게 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시간 내에 답변토록 하는 기계적인 형평보다는 각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 중에서 답변 시간을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까지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광판에 각 후보들이 사용한 시간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게시하여 후보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총량시간제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만 토론시간을 쓰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토론 앞부분에서 토론시간을 모두 써버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이효성, 2003).

그러나 총량시간제는 전체 토론시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론시간을 2-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소주제별마다 별도로 적용하는 부분총량시간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후보들이 처음에 시간을 모두 써버려 나중에 답변할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시간을 관리 운용하는 것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의 일부로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기계적 형평성과 짧은 답변시간으로 인해 토론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분총량시간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8 토론회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언론사들이 앞다퉈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토론 참가자 후보를 선정함에 따라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언론사에 의존하지 말고 여론

조사회사나 대학의 연구소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245개 선거구, 지방선거의 경우 21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각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약 1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시점의 조정이 필요한데, 현행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실시시기에 대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주 완산갑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무소속의 신건 후보는 출마 결심을 후보 등록 마감 며칠 전에 하는 바람에 여론조사에서 제외되어 결국 유력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여론조사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에 실시하여 지각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9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3은 각 선거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여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3회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중앙정치의 싸움장으로 연결시켜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정책토론회의 주제를 보면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 ‘8.31 후속정책과 부동산 투기방지 방안’,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등 모두가 중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선거나 지방의원선거는 중앙의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 각 지역의 풀뿌리 정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로 이끈다는 차원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후보의 반응 샷은 허용하는 대신 청중의 반응 샷은 금지해야 한다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바로 다른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는 후보의 반응을 카메라로 잡는 이른바 반응 샷(reaction shot)의 허용 여부다. 반응 화면은 후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토론회를 좀 더 활기 있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반응 화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공방을 벌이는 두 후보의 화면을 나누어 계속 보여주지 않는 한 반응 화면은 공정하기 어렵다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이효성, 2003).

15대 대선 토론에서는 반응 화면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16대 대선 토론회부터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분할화면을 이용하여 반응화면을 허용하고 있다. 반응 화면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포럼형 토론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청중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을 경우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

11 선거방송토론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산하에 미국의 Debate Watch와 같이 ‘선거방송토론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TV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모니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단은 일반 시민운동단체나 매니페스토 운동단체, 그리고 대학생들과 협조하여 구성토록 하며 이 감시단은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진술한 것은 없는지, 특히 통계치나 수치를 동원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질문을 지적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나 대답을 사후에 청취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TV토론은 후보들이 자유롭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후보들의 ‘발언 방식 통계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는 후보들의 미흡한 진술, 혹은 과대한 진술의 횟수, 각 후보가 직답을 회피한 횟수, 시간 끌기, 작위적인 제스처, 정치인답지 못한 행위(인신공격)의 횟수 등을 포함한다.



- Auer J.J.(1962), The counterfeit debates, in S. Kraus(ed.), The great debates:Background, perspective, effects(Bloomington, IN:Indiana University Press), 142 – 150.
- Carlin, D.(2002), Televised Debates and Citizen Engagement,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서울 목동 방송회관, 7월 12일.
- Kraus, S. (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2nd..).(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llweg, S.S., Michael Pfau, and S.R.Brydon(199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NY:Praeger)
- McKinney, Mitchell S.(2002), The Evolution of Presidential Debates in the United States:Responding to Citizen Needs.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서울 목동 방송회관, 7월 12일.
- Pfau, M. (1984). A comparative assessment of intra – party political debate formats.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8, 1 – 233.
- 강지연(2006), 『무엇이 효과적인 선거방송토론인가?』,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75 – 185
- 권혁남(2006),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규조(2006), 케이블TV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2006년 2월 22일
- 김민전(2006), 『TV토론의 발전을 위한 제언』,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210 – 217
- 김장호(2006),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을 되돌아보며』,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86 – 191
- 김춘식(2006), 『TV토론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42 – 152
- 민주언론시민연합 선거방송모니터팀(2006), 시민단체의 눈으로 본 5.31지방선거 TV토론,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218 – 234

- 박상호(2006), 선거방송토론 운영 및 평가, 한국방송학회 주최 “5.31 지방선거방송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표논문, 2006년 6월 9일 .
- 송종길(2006),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선거방송 주체로서 케이블TV의 역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6년 2월 22일
- 송종길(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합동토론회의 토론 형식”, 제16대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제주 KAL호텔.
- 송종길(2002), “정치후보자 TV토론개최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서울 목동 방송회관, 7월 12일
- 심영섭(2002), “독일 총선TV토론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연구원, 저널리즘 평론, 11호 (통권 12호), 168 - 203.
- 안차수(2007), TV토론평가,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 종합 평가와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2007년 12월 27일, 프레스센터
- 양승찬(2003), “16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로 본 언론”,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PD연합회/한국언론법학회/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
- 이강형(200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 포맷 및 주제 분석,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59 - 169
- 이경호(2006), 『방송사에서 바라본 TV토론』,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92 - 198
- 이상철(2002), “한국의 민주주의와 텔레비전 선거 토론: 유권자 공공 교육에 관한 현안”,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서울 목동 방송회관, 7월 12일.
- 이영배(2006), 『선거토론!!! 이제 양보다 질이다』,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199 - 209
- 이종수(2002), 공정선거 TV토론 모델연구, 방송위원회, 공정선거방송 모델연구, 69 - 169.
- 이준웅 (2006). “후보자 방송토론 포맷과 유권자의 토론 평가”,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제4차 정치커뮤니케이션 콜로키움’ 발표 논문
- 이효성(2003),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과 평가”,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제주 KAL호텔.

정창화 외(2008),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단국대학교 산학
협력단

조성대(2002), “대통령 선거 TV토론과 민주주의:미국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선거TV토
론의 전망”, 한국언론연구원, 저널리즘 평론 11호(통권 12호), 11-5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6), 『2006 선거방송 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8), 『2008 선거방송 토론백서』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I 서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발간한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를 보면 ‘2008년 선거방송토론 주요 성과’와 관련하여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 및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선에 참가한 전국 15개 대학교의 72개팀 중 본선에 진출한 전국 12개 대학교의 16개팀이 참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대회 심사위원으로 전국 23개 대학교 등의 교수 26명이 심사를 보았으며 20명의 행사진행요원, 8명의 대학생 사회자 등 총 50여 명이 행사진행에 참가하였으며 결승전에는 100여 명이 참관하였다”고 한다.¹⁾

물론 양적 규모만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²⁾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이 148개교에 재학생 795,519명, 대학교가 200개교에 재학생 2,115,200명임을 감안할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 규모는 위원회의 평가와는 달리 그리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토론 사이트로 유명한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는 5월 26일 오전 10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8),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서울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pp.156~157. 2009년 5월 22일 막을 내린 제5회 대회에는 전국 대학교에서 94개 팀 188명이 출전했다.

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2009년 5월 25일 검색.

시 현재 무려 2,605,899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토론(討論)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을 가리킨다.³⁾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즉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토론만큼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토론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최근 어느 주간지 특집기사에서 대학생들의 욕설문화에 대해 진단하면서 어느 연구자의 견해를 빌려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욕설이 일상화된 건 1999년이다 → 1999년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해다 →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1천만 명 돌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PC방의 보급이었다 → PC방에서 성행한 채팅과 온라인 게임이 욕설 일상화의 요인이다”라고 지적한 부분⁴⁾이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욕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대화나 토론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대학생들의 언어생활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점검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는 각종 문헌자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각종 토론방송 및 토론대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영어에서 ‘토론’을 뜻하는 단어 ‘debate’는 ‘분리하다’ 또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와 ‘전쟁’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debattu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영어에서의 토론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대결과정으로 이해된다.

4) <주간조선> 2056호(2009.05.25.)

II 현 단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점검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현행 선거방송토론의 목적은 “후보자로 하여금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공약을 널리 알리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TV를 통해 비교·검증하여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하고 완벽한 주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계방송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토론회 일정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청대상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회자 후보군 관련정보를 적기에 제공, 초청대상 후보자 및 사회자를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제를 수립하고 의제의 성격 등에 부합되는 토론방식을 적절하게 채택하고 토론진행표 및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토론의제 및 진행방식 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계방송사와 유기적으로 제작을 협의하고 세트제작·토론진행·방송화면 구성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언시간을 엄정하게 통제하며 사건·사고예방 대비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토론회를 중계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업무추진과 더불어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모두 383회의 후보자 토론회 등을 주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각종 선거에서의 대담·토론회 등의 원활한 주관과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7(선거방송토론위원회)⁵⁾에 근거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65개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

5) 제8조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

위원회를 신설했다. 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를 주관하고 있으며,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른 선거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후보자 초청대담·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TV를 통한 선거방송토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TV를 통한 선거방송토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권자가 대리적으로 ‘민주적 공론장’에 참여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⁶⁾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권자는 TV토론을 통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 이슈를 탐색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⑩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6) 송종길·박상호(2008), “유권자의 TV토론 이용 동기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2008.11.15.) 자료집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 서울:한국방송학회, p.23.

데, TV토론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적 토론의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TV토론의 시청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비용 고효율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연구자들은 “TV토론의 영향력과 의미는 크지만 유권자가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총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선거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힘든 상황이다. 결국, TV토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TV토론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⁷⁾고 제언한다.

한편,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토론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선거방송토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자가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한 경험에 따르면 토론이라기보다는 답변이 필요 없는 일방적 질문 또는 질문과 상관없는 일방적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독백에 가까운 자화자찬식 대사를 읊조리거나, 특정후보를 상대로 비하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후보자가 많았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평소 토론문화와는 거의 관계없는 생활이 몸에 밴 탓에 갑작스런 토론회를 소화해 낼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선거방송토론의 시청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일부 관련전문가와 전공학자 또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뿐 각종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방송토론 자체가 행정실무절차 수준에 머물고 만다는 점은 전체 유권자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② 선거토론문화 환경과 법적·제도적 문제점

선거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큰 이점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의한 관련 정보의 가공 및 제공이 자칫 수박 겉핥기

7) 송종길·박상호(2008), “유권자의 TV토론 이용 동기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앞의 자료집 p.23.

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은 미디어의 폐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황폐화시키고 마는 것이다. 특히 TV 토론에서의 후보자의 모습과 말솜씨, 연기능력이 정책이나 업무수행 자질보다도 중요한 후보자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보다는 단순하고도 명료하면서 쉽게 후보자를 인지하고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에 근거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속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TV 토론의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⁸⁾

미국의 양심세력을 대표하는 법학자 겸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은 그의 저서⁹⁾에서 이미지(image)를 가리켜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단언한다. 이 가짜 이미지가 오히려 진짜 현실을 압도하여 사람들이 더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선거에 이용되는 후보자들의 각종 이벤트를 가리켜 ‘가짜 사건(pseudo-event)’이라고 정의하면서 “언론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사건들, 곧 시상식이나 증정식, 기자회견 따위”를 가짜 사건의 예로 들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가짜 사건은 연관된 다른 가짜 사건을 또 부추기고 증폭하는 특징이 있다고 부어스틴은 지적한다.

언론 플레이는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고, 우리가 유명인을 스타로서 숭배하면 다른 스타의 출현을 끝없이 기대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미디어의 속성상 이미지 창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미지의 이벤트화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갈파한 바 있지만, 선거토론방송에서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가 없다. 현란한 수사나 이벤트로 치장된 현재의 이미지만 화면에 나오으로써 유권자들은 어느새 과거의 문제점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나마도 지방선거에서는 토론방송이 후보자 상호 간의 활발한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개인의 홍보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상대방 토론에 대한 정확한 꼬집기나 대안의 제시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이 아니면 각자 준비한 자료의 제시에만 급급한 양상을 보이기 일쑤기 때문이다.

8) 이호은(2008), “한미 대통령후보 TV토론 비디오스타일 비교연구”,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2008.11.15.) 자료집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 서울:한국방송학회, p.38 참조.

9) 다니엘 부어스틴, 정태철 옮김(2004), 『이미지와 환상』, 파주:사계절출판사 참조.

또한, 선거법상 언론기관이 후보자 초청대담이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른, 연구자가 직접 사회자 또는 패널로 참여했던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의 경우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에 걸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초청 토론을 꼼꼼하게 진행하기에는 여건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토론방송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진정한 미디어 선거를 실현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엿보인다. 예컨대, 중앙선거토론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자 초청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대담·토론회에 수회 나누어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호순, 추천순과 같이) 후보자 등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초청해야” 하며, “후보자 등을 대담·토론회에 초청시에는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전 후보자 등을 초청해야” 한다. 또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의적이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 특히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후보자 개인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운데 선거전을 치르는 후보의 경우 열세인 다수의 후보자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예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최측은 속수무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허위사실을 동원해서 비방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하지만 『선거법』 제251조¹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

10)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해 놓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 것 또한 매우 애매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③ 국내 대학에서의 토론문화 실태와 문제점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 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교수취업특별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학내 교수진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연구자가 맡은 과목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피치 기법”. 학점과는 관계없지만 취업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열기에 힘입어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토론동아리’가 생겨나고, 이를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인 ‘면접’에 적용하여 열심히 전공별 주제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은 더욱 크다. 하지만 이처럼 토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말문을 여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대학생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단골 사회자 또는 패널로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을 지망하는 이들 역시 토론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임에도 사회자 질문이나 상대방 문제제기의 내용에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 하고 싶은 말로만 일관하던 모습과 함께 당선 이후 뉴스에 등장하는 그들의 행보가 오버랩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곤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론과정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걸까? 아마도 최대의 주범은 학교가 아닐까 싶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과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발표수업은 많이 경험하지만 토론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풍토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또는 교수님의 말씀에 따지를 걸기라도 하는 날에는 버르장머리 없게도 “감히 어른 말씀에 대들었다”는 누명과 함께 경을 치기 일쑤다 보니 우리 학생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보니 이러저러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문화가 존재하는가? 인터넷에서의 ‘토론’을 표방한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댓글의 난립을 과연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100분 토론’, ‘심야토론’, ‘시사토론’ 등 방송 3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야말로 진정한 토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지성의 상징, ‘상아탑’으로 일컫는 우리 대학에서의 토론문화는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가?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기능했던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토론문화가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토론문화가 존재하는가? 학생들 스스로 참가하는 토론문화보다는 강의실을 통해 실험적으로 모색되는 토론식 강의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대학에서 의사소통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물론 그 연원은 입시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86년 이후 논술고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토의, 토론식 학습 방법’의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었다는 지적¹¹⁾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의사소통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작문교육의 경우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을 벗어나 계열별 글쓰기의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 작문 외에 말하기·듣기·읽기를 망라하는 의사소통 일반교육이 체계화·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의 내실을 기하며 학부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대학이 특성화된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²⁾

아울러 이러한 발전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토론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11)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이원화된 입시체제의 대안으로 1981년부터 시행된 ‘대입 학력고사 + 고교내신’ 방식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부정되고 고차적 사고능력 및 창의성 등이 측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술고사가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문교부가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 채점 및 사정방법’(1984.7.18)과 ‘대학입학 논술고사 실시지침’(1984.9.2)을 내리자, 이후 1986년부터 각 대학별로 논술고사가 시행되었다. 또, 실제로는 훈련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기는 했지만, 토의·토론·사회(司會)의 교육과정 설정은 1955년의 1차 고교교육과정에서부터 있었다고 한다. 박상준(2009), “대학 토론교육의 목적 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 반교어문학회 제129차 정기 학술발표회(2009.2.21) 발표문집, pp.74 참조.

12) 연세대학교의 학부대학 설립(2000년)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2002년), 숙명여자대학교의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2년), 고려대학교의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2006년) 등이 설립되면서 학부 기초교육 강화 측면에서 의사소통 관련 교육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는 요인으로서의 문제점 또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³⁾

첫째, 토론교육에 관한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넓은 의미에서의 토론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서의 토론수업 모형을 개발하거나 웹기반 토론수업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학문의 기초를 도야하는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교육의 목적에 걸맞은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토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변인(conditions)¹⁴⁾의 개선에 대학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셋째, 토론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방향·방침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교육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육성 및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등과 같은 기초능력 배양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토론교육의 성과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토론교육의 연구성과가 미흡하고 조건변인의 개선에 대학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명확한 교육목적의 부재에 따른 교육방침의 혼선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토론이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대면상황에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니와, 그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의 과정이므로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사실,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사람’과 ‘말’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짙고, 체면이나 자존심과 결부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토론이 주는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토론문화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13) 박상준(2009), “대학 토론교육의 목적 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 반교어문학회 제129차 정기 학술발표회(2009.2.21) 발표문집, pp.76 참조.

14)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부분, 곧 교과내용의 특성이나 목적, 학습자 특성, 기타 제약조건 등.

III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방안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1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토론문화의 중요성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식 토론방식으로 불리는 미국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토론 관련 과목들이 개설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토론 동아리의 활성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식민지 시대부터 발달한 미국 대학은 18세기 초에 토론 클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카데미식 토론은 182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리시움(Lyceum)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지식인, 정치인, 법조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모여 스터디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촉발한 이 운동은 ‘리시움’이라는 말 그대로 스피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서로 논의하는 활동을 가리켰다. 183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무려 3천개가 넘는 리시움이 생겨났으며,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 클럽들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아카데미식 토론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몇몇 대학은 인접한 다른 대학과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만 해도 1년에 몇 회에 불과했지만 1920년대에 들어와 토너먼트 형태의 토론대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아카데미식 토론대회가 정착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1947년 미국 최초로 미국토론학회(AFA; American forensics Association)가 전국대학생토론대회(NDT; National Debate Tournament)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토론문화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각 대학의 토론 동아리는 인접한 대학과 서로 연중 내내 토론을 열어 미국 대학에서 토론은 매주 펼쳐지는 정기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토론 팀은 학교 버스나 토론 팀 소속 버스로 수업이 없는 주말에 이동하였다. 현재 3천여 개의 미국 대학에 토론 팀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학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 학생의 전공은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이 다양하며 특히 자연계 학생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계열 단과대학이 개별적으로 교과과정에 토론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 NDT는 주로 정책과 관련된 2~3개의 주제로 토론대회를 개최했으며 당시의 주된 토론방식을 ‘NDT 방식’이라고 불렀다. 이후 1971년에는 또 다른 전국토론대회(CEDA;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가 열렸으며, 이후 ‘CEDA’

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이후 CEDA란 교차조사 토론모임, 혹은 토론학회모임이란 뜻으로도 쓰이며, 토론방식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 다의적 용어가 되었다. 처음에 CEDA는 NDT와 달리 ‘정책’보다 ‘가치’를 토론주제로 정했으며 방식도 교차조사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CEDA도 정책을 토론주제로 삼게 되고, NDT도 교차조사방식의 토론 형식을 채택하면서 NDT와 CEDA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교차조사방식의 토론을 일반적으로 CEDA 방식이라고 하며, 2000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대학생토론대회도 이 형식의 일종이었다. 이후 1985년 미국토론협회(ADA; American Debate Association)가 새로 결성되어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대학토론학회는 3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토론교육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 ①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분석력의 향상
- ② 민첩한 문제분석력과 상황대처능력의 향상
- ③ 효과적인 스피치 구성 및 전달능력의 향상
- ④ 글쓰기 능력의 향상
- ⑤ 학제간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통합교육 실현
- ⑥ 수업에의 응용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의 실현

그 밖에도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사회현상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더불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시민으로서의 열린 지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풍토에 있어 토론교육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두드러진다. 토론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견해와 포괄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형식논리로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교육에서 드러나는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합리적인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토론교육의 목적을 두는 경우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교육효과를 사고하는 반면, 의사소통능력 제고에 목적을 두게 되면 개

15) 강태완·김태용·이상철·허경호(2001), 『토론의 방법』,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7~8 참조.

인의 역량 차원에서 사고하는 까닭에 토론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서의 강조점 설정에 있어 큰 차이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우선 토론교육의 목적을 합리적인 시민역량의 함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토론이 시작된 계기로 ‘독립협회’의 활동을 적시하면서 토론이란 “민주적 형식임과 동시에 근대사회의 공론화를 도모하는 소통의 기제로서 ‘공동체에 필요한 공론’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인을 ‘공론화의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효과를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¹⁷⁾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궁극적으로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¹⁸⁾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사회현상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의 방법을 기를 수 있다”고 하면서 토론을 ‘경쟁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본다. 곧 문제의 비판적 분석과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설득이나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토론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토론을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파악한다. 한편으로는 토론이 ‘논증양식의 대화’라는 점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찬반토론’에 주목하기도 한다.¹⁹⁾

결국 토론의 목적을 시민역량 강화에 두는 경우 교육의 핵심이 협의 또는 합의를 지향하게 된다면,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 증진에 그 목적을 두는 경우에는 대체로 경쟁적인 찬반형식 토론에서의 승패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에만 주목해서 토론의 성과를 개인적인 승부로 귀결시키는 양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⁰⁾ 실제로 “CEDA 방식의 토론교육에 있어 승부를 전제하고 심사위원을 의식하며 쟁점과 주장의 선별에 있어 주장의 관철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문제의 이해나 공론의 도출 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²¹⁾는 지적은 이 같은 토론교육의 문제점을 잘 보여

16) 박상준(2009), “대학 토론교육의 목적 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 앞의 발표문집, pp.77 참조.

17) 박숙자(2007), “근대적 토론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 『새국어교육』 제78호, 서울:한국국어교육학회, pp.183~187 참조.

18) 강태완·김태웅·이상철·허경호(2001), 『토론의 방법』, 앞의 책, p.4.

19)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6),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p.104~108 참조.

20) 박숙자(2007), “근대적 토론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 앞의 책, pp.180~181 참조.

21) 이두원(2006), “CEDA 찬·반 논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효과적인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4권 제1호, 서울: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pp.114~119 참조.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은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인지적 능력, 논리적 능력, 구성 능력, 언어전달 능력, 신체적 능력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 ① 인지적 능력 : 주제에 대한 이해력, 증거수집 및 정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독립적 사고 능력, 돌방상황 대처 능력
- ② 논리적 능력 : 계획과 개요 작성, 분석력, 논리적 대응 능력, 결론도출 능력
- ③ 구성 능력 : 메시지 구성 능력, 정보조합 능력, 시간조절 능력, 시청각 보조자료 활용 능력
- ④ 언어전달 능력 : 언어적 전달의 다양성 훈련, 발음과 발성 능력
- ⑤ 신체적 능력 : 자세와 제스처, 시선, 기타 비언어적 전달 능력

이상과 같이 대학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까닭은 토론이야말로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동력의 요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토론문화 확산의 전단계로서 그것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건전한 토론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토론문화 개선방안

이미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지난 2월 열린 반교어문화회 학술발표회에서 포스텍 박상준 교수가 발표한 논문²³⁾은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 교육의 허와 실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2) 박웅기(2006),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교육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집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토론교육』, p.13.

23) 박상준(2009), “대학 토론교육의 목적 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 앞의 발표문집, pp.73~88 참조.

먼저 대학 강의에서 토론식 수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토론을 형식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흔히 말하는 ‘토론을 위한 토론’이 대표적이다. 토론이 형식적 이해에 매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현실과 토론의 괴리다. 현실에서 토론은 화해나 협상, 조정의 전단계로 기능하는데, 토론이 순수하고 논리적이며 올바른 주장으로 귀결되어야만 올바른 토론이 된다는 식의 교육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논제가 담고 있는 정책판단이나 가치판단의 대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서 찬반의 대립이 논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주장의 논리성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비교육적 효과를 낳게 된다.

셋째, 학습자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태도에 빠질 수 있다. 학생들은 토론에서 상대방을 적대적인 피아(彼我)로 설정하기 쉽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다음 실제로 토론에 임하게 될 경우 상대가 자신이 속한 준거집단 내의 구성원이거나 동종업계의 구성원일 것이기 때문에 토론교육에 있어서도 평판과 신뢰의 강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에서의 내실 있는 토론교육을 기대하려면 토론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교육의 목적과 방식의 긴밀성을 제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론의 목적은 공론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합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토론에 대한 형식적 이해보다는 강의실에서의 교육토론이 현장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찬반토론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다양한 토론수행학습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지만 합의도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토론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한편, 토론은 협상과 교묘하게 대응되는 개념이다. 협상은 물리적 갈등 때문에 생겨난 대립관계 속에서 경쟁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 토론에서 대립관계란 상호 간의 실제적인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 설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토론수업에서 협상의 순기능을 차용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타당한 근거로 상대와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토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상교육은 갈등해결의지와 협력적 태도가 전제되므로 협업능력이 중시되는 대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정된 의제에서 파이를 나누는 ‘분배협상’부터 의제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고안하고, 기존의 대안을 여럿으로 나누는 등 윈윈 효과를 창출하는 ‘통합적 협상’으로 나아가는 역할수행 시뮬레이션 방법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토론교육에 있어서는 절차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가과정이다. 토론의 승패 여부로 가늠하는 평가는 경쟁만 부추길 뿐이다. 교수가 평가과정에서 토론의 승패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는 승패로 종결되는 토론의 수행과정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는 토론의 본질적인 개념과도 대치된다. 토론을 잘 하는 사람이 갖춘 성향 중 하나는 논쟁성향(argumentativeness) 관련 논문을 보면, 논쟁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견해가 적절할 경우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논리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토론의 전후 상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준비 ⇒ 수행 ⇒ 판정’의 토론 단계별로 학습하게 하고 각각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조사와 그것의 활용능력, 토론수행에 따른 연습·복습(피드백 충실도) 현황을 측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바람직한 결과(대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교수자들부터 자기만의 스타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토론수업을 통해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 토론을 통해 생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했을 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활발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토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토론 초기단계부터 항상 분위기가 경직된다든지, 제한된 인원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토론전개 과정에서 논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든지, 토론이 일부 토론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의미 있는 토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시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성공사례를 교환함으로써 모든 수업에 토론과정이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토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③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에서는 9인에서 11인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²⁴⁾ 그런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제19조)과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제20조)의 업무로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가 적시되어 있지만 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제21조)의 업무에는 이 같은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구·시·군토론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구자는 현행과 같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형식을 대폭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를 보면 대부분 선거 관련 업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렇다 보니 사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위원들의 경우 각종 선거

24) 제4조(설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 ②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 ③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를 관할하

가 열리는 시기에는 당연히 선거 관련 업무에 매진해야 하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개점 휴업이나 다른없는 상황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업무와는 관계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는 민주시민을 위한 토론문화 육성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실천사항으로 각급 선거토론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토론대회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의 예선전 성격을 띠는 지역별 대회를 연초부터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곧 기초자치단체별 토론대회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맡고, 여기서 뽑힌 기초자치단체별 대표들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모여 시·도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토론대회를 개최한 다음, 광역 단위로 선발된 선수들이 본선에 해당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훨씬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질적으로도 향상된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점진적으로는 토론대회의 문호를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연령별·학교단위별 토론대회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예선(기초자치단체) ⇒ 지역본선(광역자치단체) ⇒ 중앙본선”의 단계로 전국토론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토론 강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실질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초자치단체를 관장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업무 영역에도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해야 한다.

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9인 내지 11인까지 둘 수 있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선거관련 토론업무에만 한정하지 말고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사업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따라서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토론교육 종사자 내지 토론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상시 직무 연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토론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지역별 예선 및 본선 시기와 방법, 그리고 대회 공지 및 참가신청 접수 등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연초부터 기획해야 한다.
- ⑤ 토론방식, 토론의제, 참가자의 자격요건 및 시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체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별 시민단체, 대학, 기타 공공기관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인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토론문화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 ⑦ 실제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요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일이므로 심사위원으로 적합한 인사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촉할 것인지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⑧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개선안 마련을 통한 보완과 더불어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유사한 공공기관 주최의 토론대회를 흡수통합해 나감으로써 국내 최대의 토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⑨ 궁극적으로는 토론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착과 더불어 토론전문가 공인자격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 자격증의 유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⑩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의 토론문화 체험과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론문화체험학습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인터넷 비방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바람직한 사이버 토론문화 체험과정’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그 밖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대회 형식의 관심제고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동시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토론전문가 공인자격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토론대회 입상자에 대한 대학입시 및 취업시 가산점 제도 등을 시행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I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점검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식 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설학원 및 언론기관, 공공기관 단위의 다양한 토론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일회성이거나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토론문화 함양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토론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토론교육의 효과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각종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입후보자 검증 및 유권자 선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점진적인 토론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결국 연구자는 대학에서의 내실 있는 토론교육을 기대하려면 토론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교육의 목적과 방식의 긴밀성을 제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토론의 목적은 공론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합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토론에 대한 형식적 이해보다는 강의실에서의 교육토론이 현장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찬반토론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다양한 토론수행학습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합의도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토론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권역에 대부분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하여 실질적인 토론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의 예선전 성격을 띠는 지역별 대회를 연초부터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곧 기초자치단체별 토론대회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맡고, 여기서 뽑힌 기초자치단체별 대표들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모여 시·도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토론대회를 개최한 다음, 광역 단위로 선발된 선수들이 본선에 해당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고품질의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점진적으로는 토론대회의 문호를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연령별·학교단위별 토론대회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 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예선(기초자치단체) ⇒ 지역본선(광역자치단체) ⇒ 중앙본선”의 단계로 전국토론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토론 강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토론전문가 공인 자격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토론대회 입상자에 대한 대학입시 및 취업시 가산점 제도 등을 시행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제의 제기에만 머문다면 토론문화의 담보상태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어 실현방안이 법적·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우리나라 토론문화 활성화의 주

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면서 각종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강태완·김태용·이상철·허경호(2001), 『토론의 방법』,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상준(2009), “대학 토론교육의 목적 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의 모색”, 반교어문학회 제129차 정기학술발표회(2009.2.21.) 발표문집
- 박숙자(2007), “근대적 토론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 『새국어교육』 제78호, 서울: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용기(2006),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교육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집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토론교육』
- 송종길·박상호(2008), “유권자의 TV토론 이용 동기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2008.11.15.) 자료집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 서울:한국방송학회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6),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이두원(2006), “CEDA 찬·반 논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효과적인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4권 제1호, 서울: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이호은(2008), “한미 대통령후보 TV토론 비디오스타일 비교연구”,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2008.11.15.) 자료집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 서울:한국방송학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8),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서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다니엘 부어스틴, 정태철 옮김(2004), 『이미지와 환상』, 파주:사계절출판사
- <주간조선> 2056호(2009.05.25.)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02

「6.2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

-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14시
- 장 소 : 선거연수원 5층 강당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1주제

-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토론회 비교 · 분석

정 성 호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

● 제2주제

-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TV토론 형식 비교 · 분석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 주관 토론을 중심으로

송 종 길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부 교수)

● 제3주제

- 6.2 지방선거 <수도권 토론>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오 창 우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6.2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토론회 비교·분석

정성호

-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인에게 TV는 생활의 일부분이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매체이다.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TV시청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정치적인 매체라는 것은 현대 정치에서 TV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인 역할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의 핵심인 권력의 구성은 선거에 의해 창출되므로 국민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므로 정치 또는 권력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유지 또는 상실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정치적 정보와 지식의 분배 및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설득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TV의 정치적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지식과 자료의 공급 기능과 역할이다. 정치문제와 현상에 대한 각종 지식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정치적 접촉 수단의 기능과 역할이다. TV의 선거보도, 의회중계, 후보의 TV토론과 연설, 시사토론과 인터뷰 등 TV를 통해 직·간접적인 정치적 접촉,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

일반대중은 TV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TV의 이러한 정치적 기능과 역할로는 선거보도, 의회 중계, TV토론, 시사인터뷰 등 다양하다. 선거과정으로 국한하더라도 후보토론을 비롯해 경력방송, 정치광고, 선거보도, 선거논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선거관련 TV의 방송형태들은 매우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 TV토론은 선거과정에서 제한적 허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으며, 선거캠페인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객관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즉, 실제 선거에서 TV토론은 유권자의 선택행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한 후보자토론회는 총 361회 개최되었다.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1회,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19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9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292회 개최되었다.

실제 광역단체장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25일 대구, 인천, 제주, 27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8일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9일 대전, 전북, 전남, 31일 광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초청 16회, 비초청 5회 총21회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경기지사는 초청, 비초청 합동으로 TV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육감의 경우 총 19회로 초청 16회와 비초청 3회의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은 1995년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00년 16대 국회의원총선,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조직선거로 인한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 부족과 방영시간대, TV토론의 운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디어 선거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방송 TV토론이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수단이다. 후보검증에 있어 이것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 그러나 TV토론이 변질됐다. 인신 공격성 발언과 자신의 ‘외침’만 난무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별 토론이 이뤄졌으나 매체별 특화나 차별화가 없는 틀에 박힌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방송사마다 토론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재방송 토론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일선 프로그램제작들의 창의성과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진지한 노력이나 새로운 방송제작 형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송토론의 지침이나 소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계식 잣대’가 일선 방송토론프로그램 제작들을 강제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와 같은 선거방송토론은 이제 변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광역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구 의원 선거 등으로 나뉘어진 각종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에게 귀중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을 놓고 볼 때 매체별로 후보자 1인 초청토론 방송을 하는 경우가 기본이었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방송토론의 경우 특정매체에서 생방송하면 다른 채널에서 녹화 재방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물론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시청자로 방송에 노출되면 선거홍보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매번 똑같은 내용을 접하는 시청자에게는 고통이고 결국은 외면으로 이어진다. 특히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이 실종되면서 선거혁명이라는 방송토론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면, 이번 6.2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TV토론의 분석을 통해 향후 TV토론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TV토론이 세분화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채널별·매체별 차별화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토론의 개선안을 제안한다면 채널별로 후보자의 정책을 특화해서 방송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후보자별 정책을 상대후보가 검증하는 수박 겉핥기식 토론보다는 정책평가 전문가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심화토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진행방법에서도 현재 30초, 1분, 5분단위의 시간제약을 사회자가 융통성을 갖고 공평하게 진행하면서 분명한 답변, 정확한 질문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방송사별 자체 TV토론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지만 선거방송의 성격상 공정한 방송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체별 ‘교통정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방송토론위원회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대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선거문화와 정확한 정책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6.2지방선거의 TV토론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정책선거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TV토론은 이제 냉정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토론 형식, 진행방식, 토론의제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 TV토론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선거에서 TV토론의 운영과 방식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토론의제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②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TV토론에 대한 진행방식, 질의응답 유형, 토론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TV토론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TV토론을 대상으로 진행방식과 질의응답 유형, 토론의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나타난 토론의 형식과 진행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나타난 토론내용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6.2지방선거 TV토론에 나타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우선 16개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토론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토론에 나타난 토론의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토론진행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사회자 및 후보자 간의 토론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TV토론의 형식과 사회자의 역할의 방향을 찾고 TV토론의 주요 의제의 발굴을 위한 방법과 주요 의제의 선정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 또한 후보자의 토론참여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토론 진행을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TV토론 운영을 위한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쟁점

우선, 선거 TV토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후보자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적절한 토론 형식(format)에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토론 형식의 채택은 TV토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편 TV토론의 형식을 선택할 때는 시청자인 유권자, 토론의 참여자인 후보자, 그리고 토론을 주최하는 주최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삼자간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서 토론 형식을 채택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토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토론위원회(CPD; 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s)가 사전 연구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론횟수, 일시, 장소, 토론 형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통고한 다음 후보자 진영과 협상한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CPD의 안은 사실상 각 당의 후보자들 간 협상과정에서 결정된다(Sidey Kraus, 2000). 이때, CPD 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진영 간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데, CPD는 이 수정안이 토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TV토론을 원하고 있다는 소위 ‘국민 기대법’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후보자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의 결정은 미국과 달리 토론회 주최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기부터 고려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다음의 과제는 TV토론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다양한 TV토론 형식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둘째 토론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셋째, 사회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하며 TV토론에서 그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째 토론에서 주로 다루어질 의제는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내용들이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1) 토론 형식

TV토론에서 취하고 있는 토론 형식이란 토론의 기본 정신이 구체화된 것으로, 항상 토론에서는 동등하게 겨루는 후보자들이 서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청중들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고 이슈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Auer, 1960).²⁶⁾

또한 텔레비전이 가진 매체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TV토론은 그 형식의 채택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1960년 케네디와 닉슨 간의 TV토론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 후, 토론 형식의 결정은 후보자의 캠페인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외 선거관련 TV토론에서 이용되고 있는 토론 형식은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이들 유형이 뒤섞이거나 다소 변형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표적인 토론 형식을 분류해 보면, ‘공동기자회견형(Joint press conference)’, ‘후보자 간 직접토론형’, ‘1인 기자회견형’, ‘시민포럼형(Town hall meeting)’과 같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동기자회견형’은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에서 기본 골격이 갖춰진 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이후 많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토론 형식으로 사용되어 ‘대통령식 토론(presidential debate)’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토론 형식은 사회자와 패널이 연단 뒤에 서 있는 후보자에게 준비해 온 질문을 하면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며, 대개 토론자의 개시 연설로 시작하여 사회자의 조정 아래 몇몇 패널리스트가 각 토론자에게 질문하면 토론자들이 질문에 답변한 다음 이어 서로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보충질문을 할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가 마무리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토론 형식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토론에 대처하는 후보자의 순발력과 인간성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될 경우 논쟁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특정집단이 패널로 구성되는 경우 일

26) 아우어(J. J. Auer)는 전통적인 토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토론은 (1)대등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들이 (2)진술된 주제에 대해 (3)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4)적절하고 동등한 시간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4)청중들의 결정이나 선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 간 직접토론형’은 ‘후보자 직접충돌형 토론’이라고도 불리는데,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별도의 질문자가 없이 각기 두 명의 사회자와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특히 사회자들은 두 후보가 동일한 발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김영일, 1997), 토론 전반에 걸쳐 두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매개자 없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대결하는 매우 독특한 형식이다.

셋째, ‘1인 기자회견형’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방식으로, ‘후보자 초청 개별 TV토론’이라는 명칭하에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후보자 한 명을 출연시키고 사회자와 패널리스트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론자 간의 대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토론이라기보다는 회견이나 대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시민포럼형’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 시리즈 중 두 번째였던 리치먼드 시민 포럼(Richmond town hall meeting)이 원형이 된 토론방식이다. 이 방식은 언론인이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패널리스트 대신 청중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질문을 하는 청중은 여론 조사 기관이 선정한 일반 시민들로서, 지지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이다. 이 부동층 유권자들을 질문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교적 중립적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질문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반 시민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 공동체에서의 시민 회의와 유사하여 시민포럼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후보자가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토론자가 무대에서 움직이면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토크쇼(Talk show)와 유사한 점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TV토론의 유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토론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문철수, 1997). 또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토론 형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지역별 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알맞은 토론 형식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동시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성급하게 특정한 토론 형식을 결정할 경우, 자칫 진지하고 교육적

이어야 할 토론회가 단순한 텔레비전 이벤트나 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박영상, 1997)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거 TV토론에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토론유형의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토론 진행방식

어떤 토론 형식을 선정할 것인지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로는 토론 규칙, 즉 토론 진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위원회에서 대통령 TV토론을 주관하기 전까지는 모든 대선 TV토론 프로그램들이 개별토론의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개별토론은 사실상 후보자 간 토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후보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토론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게 제기된 질문이 다른 후보에게 다시 질문될 경우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난이도의 질문이라 할 지라도 서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토론회가 진행됨에 따라 TV토론의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된 것이 바로 형식적인 공정성이다. 형식적·소극적 공정성이란 시간배분, 질문 내용/방법, 강도, 사회자의 조심성 있는 태도, 시간관념, 질문배분 등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형식성 확보에 급급하여 전문성과 차별성이 고려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공정성이 희생된 측면이 많았다. 짧은 기간 너무나 많은 텔레비전 토론회가 진행됨과 동시에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토론의 현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또한 질의 응답식의 진행은 의견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추가질문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단답식의 질문들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자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또한 30초 질문과 1분의 대답시간이라는 경직된 형식 속에서 최대한의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난점도 있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개별 토론회를 하게 되면 시청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 대상의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주장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토론시간이 길다고 해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간이 긴 토론회라고 해서 ‘중요한 모든 이슈들’을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와 시청자가 너무 지치지 않고 충분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을 정해야 한다.

질문과 답변시간 역시 중요하다. 유권자 의견조사에 의하면, TV토론의 문제점으로 후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났다(이종수, 1995).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토론규칙은 토론회를 오히려 산만하고 형식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늘이고, 질문 및 보충질문을 비롯한 총 시간을 유용성 있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3) 사회자

TV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는 토론을 조율하고 건전하며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대중적 지명도를 고루 갖춘 사람으로 선정해야 하며, 엄격한 선임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TV토론이 자칫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을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V토론의 사회자가 반드시 방송 저널리스트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방송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저널리스트이면서 유권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좋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TV토론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PBS의 짐 러너(Jim Lerner)가 사회를 맡고 있다. 이는 지명도가 높은 저널리스트가 사회를 맡을 경우 토론의 관심이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사회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²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정선거방송이 아닌 개별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방송의 사회는 주로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진 뉴스 앵커가 맡는다. 그러나 방송사가 합동으로 TV토론 방송을 할 때는 방송사의 합의로 제3의 인물이 추천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인품과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나 총장이 사회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TV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뛰어난 시사감각과 균형된 시각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이성완, 2002).

27) CPD는 ABC, CBS, 그리고 NBC 뉴스의 앵커는 사회자로 선정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와 경쟁적이지 않은’, ‘위험적이지 않고, 주위를 많이 끌지 않는’ 사람이 사회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앵커에게는 스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토론회에 방해가 되며, 토론회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후보자 간의 논쟁에 의한 정보라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의 흐름에 최소한의 개입을 권장하는 경우에 대개 토론의제를 바꾸거나, 후보들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면 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자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토론회가 무미건조해질 위험이 있다. 사회자가 단순한 행사진행자가 아니라 토론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질문에 대한 전체시간 한도(예를 들면, 미국의 2000년 대통령 토론에서는 한 주제당 3분 30초) 내에서는 사회자가 자유롭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을 선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토론 의제

TV토론에서 의제의 선정은 토론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토론 의제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이 토론을 할 경우에는 토론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특정한 토론 의제 없이 토론을 할 경우에는 자칫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들추거나 공격성 발언을 할 수도 있으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치우쳐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TV토론에서 별도로 정해진 토론 의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이 곧 토론 의제가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론 의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선거 기간 중 가장 최근에 부각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일반적인 범주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몇 가지 이슈의 토론 의제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후보자들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토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각각의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스워드로우(J. L. Swardlow, 1984)는 “주제에 따라 토론을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후보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특정한 의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며 유권자들도 각각의 토론에서 특정 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TV토론이 본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토론 의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 의제는 진정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 및 능력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토론 의제의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토론의제 선정의 주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TV토론에서는 토론의제 선정의 주체가 특정 집단(예를 들어 각 방송사의 토론의제선정위원회)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TV토론의 중요한 시청자인 유권자들이 토론의제 선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으며,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실제로 TV토론에서 의제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토론의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형식적인 절차와 방식에 그치는 측면이 강하다. 토론의제의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의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지역별 후보토론회 진행방식 사례분석 및 평가

1 6.2지방선거 TV토론의 개최 현황

이번 6.2지방선거는 미디어선거가 정착되고 다양한 미디어선거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였다.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거이기도 하다. 20, 30대는 물론 40대까지도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TV토론이다. 1년 내내 그리고 투표일 이틀 전까지 실시된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미디어 선거운동방식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TV토론 개최횟수는 광역단체는 21회, 교육감은 19회 개최되었다. 초청의 경우 각각 16회 실시되었으나,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경기지사는 초청과 비초청 합동토론으로 실시되었다. 비초청의 경우 광역단체의 경우 5회, 교육감은 3회 개최되었다.

[표 2] 6.2지방선거 관련 TV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초청	비초청	계
광역시도지사	16	5	21
광역시도 교육감	16	3	19
총 계	32	8	40

② 6.2지방선거와 TV토론

1) 6.2지방선거의 특징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였다. 세종시, 4대강개발의 쟁점으로 출발한 선거 정국은 천안함 사태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야권의 친노세력의 결집이 변수로 등장하는 등 막판까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6.2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압승, 한나라당은 완패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토막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의 승리는 6.2지방선거 이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완패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말해 준다. 4대강, 세종시, 북풍 등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지역 모두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록 당선되지 못한 지역에서도 20·30·40대의 야권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 양상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정치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첫째, 구태의연한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생활정치가 전면화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북풍은 역풍으로 되돌았다. 이에 반해 민주개혁진영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 복지 등 생활이슈는 국민의 지지받았다. 둘째, 지역패권주의의 완화이다. 지역에 기반한 투표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투표형태를 보였다. 셋째, 기존정치에 대한 염증의 표면화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등으로 세대교체가 두드러졌으며,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었다.

2) 6.2지방선거 TV토론

(1) 개최 현황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모두 52명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15명,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각 5명, 자유선진당 3명의 순 등으로 나타났다. 초청 토론은 16회, 비초청 토론은 5회로 나타났다. 이들 TV토론에서 16회 초청토론 중 3회(대구시장과 충북지사, 경기지사)는 합동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비초청 토론 5회 중 1회만이 TV토론으로 진행되었고 4회는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표 3] 6.2지방선거 광역 시도지사 후보 개별 TV토론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서울(초청 KBS)	오세훈(한), 한명숙(민), 지상욱(선)	5월 28일(금)	23:00 - 00:40
부산(초청 MBC)	허남식(한), 김정길(민)	5월 27일(목)	23:10 - 00:30
인천(초청 MBC)	안상수(한), 송영길(민)	5월 25일(화)	23:10 - 00:10
대구(합동 MBC)	김범일(한), 이승천(민), 조명래(진)	5월 25일(화)	23:10 - 23:40
대전(초청 KBS)	박성효(한), 김원웅(민), 염홍철(선)	5월 28일(금)	23:00 - 00:40
대전(비초청 대담 KBS)	김윤기(진)	5월 27일(목)	13:00 - 13:20
광주(초청 MBC)	정용화(한), 강운태(민), 장원섭(노), 정찬용(참)	5월 28일(금)	22:55 - 00:40
광주(비초청 MBC)	윤난실(진), 조흥규(평)	5월 31일(월)	14:15 - 15:05
울산(초청 MBC)	박맹우(한), 김창현(노), 노옥희(진)	5월 27일(목)	23:10 - 23:40
경기(합동 MBC)	김문수(한), 심상정(진), 유시민(국)	5월 27일(목)	23:10 - 00:40
강원(초청 MBC)	이계진(한), 이광재(민)	5월 27일(목)	23:10 - 00:40
충북(합동 MBC)	정우택(한), 이시중(민), 김백규(진)	5월 27일(목)	23:00 - 00:35
충남(초청 MBC)	박해춘(한), 안희정(민), 박상돈(선)	5월 27일(목)	23:05 - 00:35
전북(초청 MBC)	정운천(한), 김완주(민), 하연호(노)	5월 29일(토)	17:15 - 18:30
전북(비초청 MBC)	염경석(진), 김대식(평)	5월 28일(금)	17:50 - 18:30
전남(초청 KBS)	김대식(한), 박준영(민), 박용두(노)	5월 28일(금)	23:00 - 00:30
전남(비초청 대담 KBS)	김경재(평)	5월 27일(목)	13:00 - 13:30
경북(초청 KBS)	김관용(한), 홍의락(민), 윤병태(노)	5월 28일(금)	23:00 - 00:45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경북(비초청 대담 KBS)	유성찬(참)	5월 25일(화)	10:00 - 10:15
경남(초청 KBS)	이달곤(한), 김두관(무)	5월 28일(금)	23:00 - 00:10
제주(초청 MBC)	고희범(민), 현명관(무), 우근민(무)	5월 25일(화)	23:10 - 00:10

또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6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청 TV토론은 16회로 진행되었다. 비초청은 3회로 나타났다. 초청 16회의 TV토론 중 1회는 대담(대구시 교육감)으로 진행되었다. 비초청 3회 중 2회는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표 4] 6.2지방선거 광역시도교육감 후보 개별 TV토론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서울(초청 MBC)	이원희, 김영숙, 광노현	5월 25일(화)	10:00 - 11:30
부산(초청 KBS)	임혜경, 이병수, 임정덕	5월 25일(화)	23:30 - 01:00
부산(비초청 KBS)	박영관, 김진성, 이성호, 임장근, 정형명, 현영희	5월 24일(월)	23:30 - 01:00
인천(초청 MBC)	최진성, 나근형, 조병옥	5월 27일(목)	10:00 - 11:30
대구(초청 대담 MBC)	우동기	5월 27일(목)	23:05 - 23:25
대전(초청 KBS)	한송동, 오원균, 김신호	5월 26일(수)	10:00 - 11:40
광주(초청 KBS)	김영수, 장휘국, 이정재, 안순일	5월 26일(수)	10:00 - 11:40
광주(비초청 대담 KBS)	고영을	5월 25일(화)	15:30 - 16:30
울산(초청 KBS)	김복만, 장인권, 김상만	5월 28일(금)	23:00 - 00:30
경기(초청 KBS)	강원춘, 한만용, 정진곤, 김상곤	5월 26일(수)	10:00 - 11:40
강원(초청 KBS)	민병희, 권은석, 조광희, 한장수	5월 28일(금)	23:10 - 01:00
충북(초청 KBS)	김석현, 김병우, 이기용	5월 28일(금)	23:00 - 00:30
충남(초청 MBC)	김종성, 강복한	5월 25일(화)	23:10 - 00:10
전북(초청 KBS)	오근량,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중	5월 28일(금)	23:00 - 00:40
전남(초청 MBC)	김경택, 장만채, 신태학, 김장환	5월 25일(화)	23:00 - 00:40
전남(비초청 대담 MBC)	곽영표	5월 24일(월)	12:40 - 13:10
경북(초청 KBS)	이영우, 김구석	5월 26일(수)	10:00 - 11:00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경남(초청 MBC)	강인섭, 고영진, 박종훈, 김영철, 권정호, 김길수	5월 27일(목)	23:00 - 00:30
제주(초청 KBS)	양성언, 양창식, 부태림	5월 24일(월)	14:10 - 15:00

(2) 6.2지방선거 TV토론 형식 및 내용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TV토론은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지방선거 TV토론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지방선거 TV토론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후보TV토론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특히 전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지역의 의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미리 선정하여 TV토론의 운영을 체계화하려 노력하였으며, 토론의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이들 TV토론 프로그램의 시청률 저하와 토론 참여 후보자의 토론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론 형식, 토론 진행방식, 사회자, 토론의제라는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토론 형식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자의 TV토론에 나타난 토론 형식은 대부분 기계식의 형식적 구성으로 시청자의 흥미나 관심을 이끌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특징은 없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본적인 토론 형식에 준하여 후보자의 수에 따라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로 형식은 오프닝, 개별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호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각 후보 간에 치열한 경합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다소 형식에 있어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다. 즉 후보자 간 주도권을 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5] 6.2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TV토론의 토론 형식(분석사례만 포함)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서울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제, 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부산	5월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개별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제, 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후보자 직접토론형 4(주제, 주도권 있음)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인천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대구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후보자 직접토론형 4(주도권 있음) ⑨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⑩ 1분 마무리 발언 ⑪ 클로징(Closing) - 예시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대전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광주	5월 28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개별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⑨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공통질문) ⑩ 공동기자회견형 7(주제 있음, 공통질문) ⑪ 1분 마무리 발언 ⑫ 클로징(Closing) - 예시
울산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⑥ 1분 마무리 발언 ⑦ 클로징(Closing) - 예시
전북	5월 29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개별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전남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개별질문)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경기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2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3 ⑥ 1분 마무리 발언 ⑦ 클로징(Closing) - 예시
강원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충북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제, 주도권 있음)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4(주제, 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충남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경북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공동기자회견형 7(주제 있음, 공통질문)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경남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있음) ③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제주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있음)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후보자 직접토론형 4(주도권 있음)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6.2지방선거 광역시도 교육감선거에 나타난 TV토론의 형식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형식과 특별한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프닝, 개별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보다도 더욱더 형식적인 TV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만이 다양한 TV토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기계식의 형식적 구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6] 6.2지방선거 광역시도교육감 후보 TV토론의 토론 형식(분석사례만 포함)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서울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개별질문)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부산(비초청)	5월24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부산(초청)	5월25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인천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 ⑤ 공동기자회견형 3(개별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대전	5월 26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광주	5월 26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개별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⑦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⑧ 1분 마무리 발언 ⑨ 클로징(Closing) - 예시
울산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⑥ 1분 마무리 발언 ⑦ 클로징(Closing) - 예시
전북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개별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개별질문)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⑦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개별질문) ⑧ 공동기자회견형 7 ⑨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⑩ 공동기자회견형 8(주제 있음, 공통질문) ⑪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⑫ 공동기자회견형 9(주제 있음, 공통질문) ⑬ 공동기자회견형 10(주제 있음, 공통질문) ⑭ 1분 마무리 발언 ⑮ 클로징(Closing) - 예시
전남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개별질문) ⑨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공통질문) ⑩ 1분 마무리 발언 ⑪ 클로징(Closing) - 예시
경기	5월 26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강원	5월 28일 (KBS,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⑨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공통질문)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⑩ 1분 마무리 발언 ⑪ 클로징(Closing) - 예시
충북	5월 28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도권 있음)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충남	5월 25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⑧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공통질문) ⑨ 1분 마무리 발언 ⑩ 클로징(Closing) - 예시
경북	5월 26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④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개별질문) ⑤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개별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5(주제 있음, 개별질문) ⑦ 공동기자회견형 6(주제 있음, 개별질문) ⑧ 공동기자회견형 7 ⑨ 공동기자회견형 8(주제 있음, 개별질문) ⑩ 공동기자회견형 9(주제 있음, 개별질문) ⑪ 공동기자회견형 10(주제 있음, 개별질문) ⑫ 공동기자회견형 11(주제 있음, 개별질문) ⑬ 공동기자회견형 12(주제 있음, 개별질문) ⑭ 1분 마무리 발언 ⑮ 클로징(Closing) - 예시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경남	5월 27일 (MBC)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도권 있음) ④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⑤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도권 있음)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1분 마무리 발언 ⑧ 클로징(Closing) - 예시
제주	5월 24일 (KBS)	① 오프닝(Opening) ② 공동기자회견형 1(주제 있음, 공통질문) ③ 후보자 직접토론형 1(주제, 주도권 있음) ④ 후보자 직접토론형 2(주제, 주도권 있음) ⑤ 공동기자회견형 2(주제 있음, 공통질문) ⑥ 공동기자회견형 3(주제 있음, 공통질문) ⑦ 후보자 직접토론형 3(주제, 주도권 있음) ⑧ 후보자 직접토론형 4(주제, 주도권 있음) ⑨ 공동기자회견형 4(주제 있음, 공통질문) ⑩ 공동기자회견형 5 ⑪ 후보자 직접토론형 5(주제, 주도권 있음) ⑫ 1분 마무리 발언 ⑬ 클로징(Closing) - 예시

나. 사회자

6.2지방선거에 나타난 사회자는 대부분 교수 출신이었다. 그 외는 일부 방송사 아나운서나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극히 일부는 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도 있었다. 사회자의 역할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사회자는 개별질문과 공통질문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시간을 넘기는 경우 제재하는 정도로 극히 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였다. 즉, 사회자는 토론회의 진행을 단순히 이끌어가는 안내자의 역할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표 7] 6.2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TV토론 프로그램 사회자

지역	사회자	개최일자
서울(초청)	정석균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00:40
부산(초청)	김영일 교수(KBS)	2010년 5월 13일 23:10 - 00:30
인천(초청)	엄길청 교수(MBC)	2010년 5월 25일 23:10 - 00:10
대구(합동)	김환열 언론인(MBC)	2010년 5월 25일 23:10 - 23:40
대전(초청)	이영애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40
광주(초청)	박용백 제작부장(MBC)	2010년 5월 28일 22:55 - 24:40
광주(비초청)	문병국 아나운서(MBC)	2010년 5월 31일 14:15 - 15:05
울산(초청)	정준금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23:10 - 24:40
경기(합동)	신율 교수(KBS)	2010년 5월 27일 23:10 - 24:40
강원(초청)	김원동 위원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23:10 - 24:40
충북(합동)	엄태석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23:00 - 24:35
충남(초청)	라미경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23:05 - 00:35
전북(초청)	유기하 기자(MBC)	2010년 5월 29일 17:15 - 18:30
전북(비초청)	유기하 기자(MBC)	2010년 5월 29일 17:50 - 18:30
전남(초청)	주원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00:30
전남(비초청 대담)	임정섭 아나운서(KBS)	2010년 5월 27일 13:00 - 13:30
경북(초청)	정인수 대국방송총국(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10
경북(비초청 대담)	정인수 대국방송총국(KBS)	2010년 5월 25일 10:00 - 10:15
경남(초청)	조효래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10
제주(초청)	고태진 심의위원(MBC)	2010년 5월 25일 23:10 - 00:10

[표 8] 6.2지방선거 광역시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 프로그램 사회자

지역	사회자	개최일자
서울(초청)	김현주 교수(MBC)	2010년 5월 25일 10:00 - 11:30
부산(초청)	김창룡 교수(KBS)	2010년 5월 25일 23:30 - 01:00
부산(비초청)	김창룡 교수(KBS)	2010년 5월 24일 23:30 - 01:00
인천(초청)	엄길청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10:00 - 11:30
대구(초청 대담)	김환열 언론인(MBC)	2010년 5월 27일 23:05 - 23:25
대전(초청)	이영애 교수(KBS)	2010년 5월 26일 10:00 - 11:40
광주(초청)	김광상 보도편집부장(KBS)	2010년 5월 26일 10:00 - 11:40
광주(비초청)	임정섭 아나운서(KBS)	2010년 5월 25일 13:30 - 16:30
울산(초청)	이경찬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30
경기(초청)	신율 교수(KBS)	2010년 5월 26일 10:00 - 11:40
강원(초청)	한진만 교수(MBC)	2010년 5월 28일 23:10 - 01:00
충북(초청)	이재은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30
충남(초청)	라미경 교수(MBC)	2010년 5월 25일 23:10 - 00:10
전북(초청)	이영원 교수(KBS)	2010년 5월 28일 23:00 - 24:40
전남(초청)	박용백 기자(MBC)	2010년 5월 25일 23:00 - 00:40
전남(비초청 대담)	박용백 기자(MBC)	2010년 5월 24일 12:40 - 13:10
경북(초청)	서태교 대구방송총국(KBS)	2010년 5월 26일 10:00 - 11:00
경남(초청)	이호열 교수(MBC)	2010년 5월 27일 23:00 - 00:30
제주(초청)	김세균 심의위원(KBS)	2010년 5월 24일 14:10 - 15:00

다. 토론의제

6.2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단체장의 주요 의제는 지역별 특색과 차별화가 엇보인다. 전국적인 공통의제로 보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저출산 등이었다. 지방은 4대강문제가 많았다. 대전권 이하는 신공항문제도 주요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광역단체장과는 달리 다양한 이슈가 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일 많은 이슈는 교육계 비리였고, 전국적 이슈는 무상급식 문제였다. 교원평가제, 공교육 활성화, 학교장 공모제, 사교육 문제, 학교 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지역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TV토론 주요의제(분석사례만 정리)

지역	광역단체장	광역시 교육감
서울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지난 4년간 서울시 시정 운영 평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서울시 디자인 수도 정책은 전시행정이 다 라는 논란에 대한 견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공교육 활성화 방안 -무상급식 확대에 관한 견해 -한국사 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견해 -학교장 공모제
부산	-실업문제 -신 성장 동력 개발 -동서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낙동강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교육계 비리 근절 방안 -학교폭력 대처방안 -자유주제 -교원 평가제
인천	-인천광역시 대기 및 해양오염 개선 방안 -인천광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인천지역 학생의 교육수준 향상 방안 -교육재정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 방안 -좋아하는 아이돌그룹과 그 이유, 학창시절 애창곡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 논란
대전	-동남권 신공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실화 -노령화 문제 -세종시 수정안 -진행되어 온 다양한 사업평가, 당선 후 추진계획 -3대 하천 정비 사업평가와 추진계획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동서교육격차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교원노조명단 공개 -공보육 기능강화에 대한 구상 -학교장 공모제
광주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문화수도 성공 조건 -신·구도심 균형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실업 해결 방안 -일자리 창출 -LED 조명사업 유치 -재원 확충	-학생의 학습 선택권 -교육비리 -공교육 활성화

지역	광역단체장	광역시 교육감
울산	- 울산 실업대책 높은 수준의 실업이유와 대책 - 의료서비스 - 문화산업발전 - 5+2광역경제권	- 우수교원양성과 교육여건개선 방안 - 학원심야교습 시간제한 - 학교장 공모제 - 교육철학 - 학교폭력 방지대책 - 학생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 교육계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
대구	- 동남권 신공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실화 - 노령화 문제	
경기	-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 - 규제완화와 환경보존의 조화 방안 -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대책 - 저출산 대책과 여성 지원 - 교육협력 -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방안 - 고령화 대책	- 공교육 정상화 - 사교육비 절감 - 학력신장 - 고교평준화 - 학교폭력 -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 교육환경 및 예산 -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 교장 공모제
강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과 흑자 방안 -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 - 강원도 출신 지역인재 양성방안 - 대형 유통매장 입점제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교원평가제의 효율적 적용 방안 - 교육비리 근절 대책 - 고교평준화의 구체적 계획과 견해 - 상대후보 공약에 대한 견해 -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방안 - 친환경 무료급식 시행
충북	-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충북 발전 -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입장과 정책 대안 - 대표적인 문화공약 - 도내 지역발전 격차 해소 방안 -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방안 - 정당의 정체성과 6.2지방선거의 의미	- 교육정책 - 교육계 부조리 근절 방안 -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방안 -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 - 교직원단체에 대한 입장

지역	광역단체장	광역시 교육감
충남	- 지역 간 불균형 - 세종시 건설 - 4대강 사업 - 무상급식 - 충남 재정 확보 - 부정부패 척결	- 무상급식 - 교원평가제 - 사교육비 절감 - 학교폭력 근절 - 고교평준화
전북	- 새만금 투자유치 무산에 대한 비판 - 진보진영 분열에 대한 비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 주도에 대한 비판 - 한국토지주택공사분산배치에 대한 입장 - 관광산업의 인프라 부족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전북 식품산업의 발전 방안	- 교육비리 원인 및 방지대책 - 교육감 리콜제 - 보육 프로그램 확대 계획 - 외부감사제 도입 - 학력인센티브기금 - 원아웃 퇴출제 - 무상급식 - 학생성적 향상 - 교사의 정치 활동
전남	-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 쌀 값 안정 · 농가소득 증대 - 농촌 노인복지 - 4대강 사업	- 농 · 어촌 교육환경 개선책 - 무상교육 재정 확보 방안 - 농 · 어촌 특별전형 개선 대안 - 교원 평가제 정책 방안 - 교직사회 비리 척결 방안 - 기초학력 향상 방향 - 사교육 단속 대책 방안 - 국제화 교육 방안 -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 방안
경북	- 4대강 사업 - 독도수호 - 경북의 국제화 - 농촌경제 부흥방안	- 교장 공모제 - 교원평가제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학교폭력 근절 - 학원심야교습 금지 -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확대 방침 - 전교조 명단 공개 - 무상급식 - 교육비리의 근절 - 경북지역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 -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

지역	광역단체장	광역시 교육감
경남	- 일자리 창출 방안 - 원예농가 회생 방안 -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 귀감으로 삼고 싶은 인물은?	- 학력신장 - 교육비리 - 취약계층 교육
제주	- 제주의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 방안 -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 - 기초자치단체 부활	- 학력향상방안 - 사교육비 절감 - 나의 스승 상 - 상대 후보 장점은? - 무상급식 예산확보 - 교육 불균형 해소 - 인성교육 - 교육 정체성·인재양성

6.2지방선거에 나타난 전반적인 이슈를 정치, 경제, 교육, 환경, 통일/외교/안보, 보건/복지, 과학/사회/문화, 여성/인원, 후보자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체 평균을 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과학/사회/문화가 평균 2.2로 가장 많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가 평균 1.1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인권, 교육,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5.3의 의제가 토론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표 10] 6.2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TV토론 프로그램 토론의제(16개 지역)

구분	정치	경제	교육	환경	통일/ 외교/ 안보	보건/ 복지	과학/ 사회/ 문화	여성/ 인권	후보자 개인	계
서울	1	2				1	2			6
부산		2		1	1		4			8
인천	1	1		1						3
대구		1				1	1			
대전	1			1			2			4
광주	1	2		1		1	4		1	10
울산		1				1	2			4

구분	정치	경제	교육	환경	통일/ 외교/ 안보	보건/ 복지	과학/ 사회/ 문화	여성/ 인권	후보자 개인	계
경 기		1	1	1			3	1		7
강 원		3	1							4
충 북	1					2	3			6
충 남	1			1		1	3			6
전 북	1	3			1	1	3			9
전 남		1		1		1	1			4
경 북		1		1	1		1			4
경 남							2		2	4
제 주	1						4			5
계	8(0.5)	18(1.1)	2(0.1)	8(0.5)	3(0.2)	9(0.6)	35(2.2)	1(0.1)	3(0.2)	84(5.3)

광역시 교육감선거에 나타난 이슈로는 역시 교육문제가 가장 많은 평균 1.8로 나타났다. 과학/사회/문화 평균 1.6, 정치가 평균 1.2, 보건/복지 평균 1.0, 후보자 개인 평균 0.4, 여성/인권 평균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단체장 보다 다양한 의제가 토론 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광역단체장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역의 중요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교육감선거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교육정책이 정치적 논쟁 꺼리로 등장할 가능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교육감선거는 지역 간 이슈에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의 교육이나 수도권 교육이나 전국적인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농지역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논쟁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경제, 환경, 통일/외교/안보와 같은 이슈는 토론 주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 11] 6.2지방선거 광역시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 프로그램 토론회제(15개 지역)

구분	정치	경제	교육	환경	통일/ 외교/ 안보	보건/복지	과학/ 사회/ 문화	여성/ 인권	후보자 개인	계
서울	1		2			1				4
부산	2						5			7
인천	2		1						1	4
대전	1		1			1		1		4
광주			2				1			3
울산			1				2		1	4
경기	1		5				3	1		10
강원	2		1			1	1		1	6
충북	1					2	1	1		5
충남	1		1			1	2			5
전북	4		1			3	1			9
전남	1		3			2	3			9
경북	2		3			2	3	1		11
경남			1			1	1			3
제주			5			1	1		3	10
계	18(1.2)		27(1.8)			15(1.0)	24(1.6)	4(0.3)	6(0.4)	94(6.3)

③ 6.2지방선거 TV토론 평가

[표 12] 6.2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의 형식 및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

항목	6.2지방선거 TV토론 특징
토론 형식	주로 형식은 오프닝, 개별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호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각 후보 간에 치열한 경합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다소 형식에 있어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

항목	6.2지방선거 TV토론 특징
	이 있다. 주요 변화는 후보자 간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도 광역단체장 선거 TV토론에서 다소 있는 상황이고 교육감선거에서는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토론 진행방식	토론 진행 방식에 있어 앞의 형식적인 체계 때문에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와 기조연설, 주요의제 공통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과정에 기조연설 1분, 사회자 질문 30초, 답변 1분 혹은 1분 30초 정도, 후보자 주도 자유토론은 5분에서 10분을 주고 자유토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응답도 2분을 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사회자	대부분의 사회자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방송사 아나운서나 방송사 등의 언론인 출신이 많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 안내 정도에 그치는 형편이다. 다만 토론시간을 초과하거나 내용이 주제를 벗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안내하는 정도였다. 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여의치 않을 시 추가 질문 등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기계적 구성이었다.
토론 의제 (내용)	6.2지방선거의 의제 설정은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제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 절차, 즉 일반시민 일반시민조사와 위원의 의제 추천 등으로 의제를 모집하여 이를 소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의제는 방송국 차원에서 선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의제설정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문제 발생도 발생하고 있다. - 시민의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흥미 위주의 방송용 의제나 신문에서 의견이 공개된 이슈를 반복하여 신선함이 떨어짐 - 특정 토론의제에 대한 질의가 편중 - 소외된 토론의제의 질문내용은 주로 기계적이며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함 - 세분화되지 못한 주제 선정으로 질문과 답변이 피상적이고 일반론적임 - 개별토론 시 후보자 간 질의 내용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야기 -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덕성, 갈등 해결능력 등과 같은 세부 자질에 대한 질의가 없었음 - 정책관련 질의보다는 이와 무관한 질의가 다수 출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인해 주요 의제의 분산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특히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의제는 거의 부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나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후보자 검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TV토론은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지방선거 TV토론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지방선거 TV토론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후보TV토론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특히 전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지역의 의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미리 선정하여 TV토론의 운영을 체계화하려 노력하였으며, 토론의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이들 TV토론 프로그램의 시청률 저하와 토론 참여 후보자의 토론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론 형식, 토론 진행방식, 사회자, 토론의제라는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한 후보자토론회는 총 361회 개최되었다.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1회,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19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9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292회 개최되었다.

실제 광역단체장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25일 대구, 인천, 제주, 27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8일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9일 대전, 전북, 전남, 31일 광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TV토론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2010년 5월 14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총 40회 실시되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초청 16회, 비초청 5회 총 21회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경기지사는 초청, 비초청 합동으로 TV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육감의 경우 총 19회로 초청 16회와 비초청 3회의 TV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형식은 대부분 기계적인 체계로 기초연설, 개별질문, 상호 토론,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은 후보자의 수에 따라 50분에서 100분 사이로 이뤄졌다.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회를 안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후보자의 토론 내용이 주제를 벗어나거나 시간초과나 비난발언 시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을 위한 구성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보다는 각 방송사 주관 토론에서 더욱 다양한 토론 포맷을 구성하여 후보 간 토론을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6.2지방선거에 나타난 토론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5.14로 나타났으며, 교육감선거는 평균 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지역의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의제로 선정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다양한 이슈가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교육감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더 많이 논제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주로 토론 형식은 오프닝, 개별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호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각 후보 간에 치열한 경합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다소 형식에 있어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다. 주요 변화는 후보자 간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 진행 방식에 있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체계 때문에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와 기조연설, 주요의제 공통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과정에 기조연설 1분, 사회자 질문 30초, 답변 1분 혹은 1분 30초 정도, 후보자 주도 자유토론은 5분에서 10분을 주고 자유토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응답도 2분을 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변화를 통한 흥미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구성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사회자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방송사 아나운서나 방송사 등의 언론인 출신이 많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 안내 정도에 그치는 형편이다. 다만 토론시간을 초과하거나 내용이 주제를 벗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안내하는 정도였다. 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여의치 않을 시 추가 질문 등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기계적 구성이었다. 사회자의 인적 구성도 사회적 명망가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미리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TV토론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권자의 TV토론에 대한 외면 이유는 후보자 간의 비난과 자기 위주의 발언 등으로 토론의 내용과 질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소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 대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예비 후보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6.2지방선거의 의제 설정은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제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 절차 즉 일반시민조사와 위원의 의제 추천 등으로 의제를 모집하여 이를 소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의제는 방송국 차원에서 선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의제설정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문제 발생도 발생하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인해 주요 의제의 분산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특히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의제는 거의 부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나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후보자 검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슈 선정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의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포맷의 TV토론이 진행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시민참여형이나, 타운홀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V토론의 취지는 거리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합동유세나 정당연설회의 폐단을 없애고 미디어 선거로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초기의 TV토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거의 보지 않는 TV토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아야 투표장에 가서 후보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유권자의 투표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투표 당일 묻지 마 투표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다양한 TV토론의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6.2지방선거는 최초로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선거였다. 투표용지도 무려 8가지 유형으로 복잡한 선거 양상을 띠었다. TV토론도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이 동시에 실시되어 유권자의 혼동과 관심 밖의 TV토론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TV토론에 대한 운영과 시청률 제고에 노력했으나, 공영방송사의 편성 시간대는 시청률이 낮은 심야나 한 낮에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TV토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TV토론이 세분화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채널별, 매체별 차별화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상파채널 3사인 KBS, MBC, SBS, 그리고 계열지역방송, 또 지역을 세분화한 케이블방송과 방통위의 신설될 종합채널까지 포함해서 방송토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매체전략과 선관위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을 중심으로 TV토론의 개선안을 제안한다면 채널별로 후보자의 정책을 특화해서 방송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BS는 경제정책, MBC는 사회교육정책, SBS는 문화관광정책, 지역민방은 지역현안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편성된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 후보자별 정책을 상대후보가 검증하는 수박 겉핥기식 토론보다는 정책평가 전문가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심화토론이 필요하다.

넷째,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30초, 1분, 5분 단위의 시간제약을 사회자가 융통성을 갖고 공평하게 진행하면서 분명한 답변, 정확한 질문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사별 자체 TV토론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지만 선거방송의 성격상 공정한 방송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체별 ‘교통정리’를 위한 지역방송토론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TV토론에 참여한 후보자의 사전 토론교육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자기 치적을 앞세워 자랑하는 등의 토론은 유권자인 시청자가 외면하기 십상이다. 평소에 TV토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후보자들의 사전교육을 통해 토론의 질을 높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선거문화와 정확한 정책이 비교되고 검증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6.2지방선거의 방송토론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정책선거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TV토론은 이제 냉정히 평가하고 개

선점을 찾아야 할 때다. 즉, 다양한 토론포맷을 개발하여 널리 소개하고 선거 이전에 각 방송사와 이러한 TV토론의 방식을 운영하여 사전에 연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TV토론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 활동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장지연(2006), 무엇이 효과적인 선거방송토론인가, 『2006선거방송토론 백서』, pp. 175 - 185.
- 권성욱(2008),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의 TV토론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후보 자토론회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권성욱(2009), 공직선거 후보자 TV토론 불참 방지에 대한 연구 - 지역구국회의원선
- 권혁남(2009),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 김연중(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 김영일(1997), “대통령 선거 TV토론 제도의 도입방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 분석실 주관 3회 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 1997.5.22.
- 김영호(1999), 지방선거와 지역 언론의 역할 - 매체간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제2권2호, pp.65 - 85.
- 김환열(2000), 『TV토론의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재완(2006),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 문철수(1997), <대통령선거 취재와 보도>, 한국언론연구원, pp.67-70.
- 박영상(1997), “콜로퀴엄이나 직접토론 방식이 적절 - 이런 TV토론을 제안한다”, <신문과 방송>, 1997.8., p.8.
- 박영석(2008), 『선거와 TV토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종길(2002), 『2002년 대통령후보 경선TV토론』, 한국방송진흥원.

- 송종길(200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2권.
- 송종길·박상호(2006), 대통령후보 TV 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 양승찬(1999), 텔레비전 선거토론 방송의 영향력 연구: 후보자 평가변화-정책관련지식, 정치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48호, 210-246
- 이강형(2003),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유사 실험연구-200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철(2009), 2006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과 2010 선거방송토론의 전망.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이성원(2002), “TV토론 방송의 방향과 과제”, <월간 방송문화>, 5월호, p.4.
- 이은철(2009), 『한국선거방송토론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1995), “선거와 TV토론”, <선거와 미디어>, 한국언론연구원.
- 이종수(1995), TV 토론과 미디어 정치:95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비평』 16호.
- 이종수(2002), 『공정선거 TV토론 모델 연구』, 방송위원회.
- 이준웅(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호(봄), pp. 253-297.
- 이현우(2006),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평가:대표성, 민주성, 자율성.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pp.219-245.
- 이호은(2008), 한미대통령후보 TV토론 비디오스타일 비교 연구. 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발제문.
- 이효성(2003),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과 평가,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 전영란(2007), 『TV토론에 나타난 선거캠페인 수사에 관한 분석 : 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6), 『선거방송토론백서 2006』.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200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환경분석 및 제도평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pp.13 - 5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8), 『제17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식조사』.

Auer, J. J.(1960), The counterfeit debates, In Kraus, S.(Ed.), The great debates: Kennedy vs. Nixon, 196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142-150.

Kraus, Sidney(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2nd., Mahwah, New Jersey. LEA.

Swerdlow, J. L.(1984), Beyond debate: A paper on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N. Y.: Twentieth Century Fund, p.16.

Jamieson, K. H. & Birdsell, D. S. (1988), Presidential debates :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Jamieson, K. H. (1988). Eloquence in electronic Age: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peechma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TV토론 형식 비교분석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주관 토론을 중심으로

송종길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I 서론

선거기간의 TV토론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환열, 2000).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입된 선거방송토론은 운동장 유세 대신 TV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저비용, 고효율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송종길, 2002).

우리나라는 미디어 공영선거를 추구하면서 TV토론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 중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TV토론의 개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TV토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V토론 개최를 주관하는 기구를 국가기구로 두고 있는 국가도 없다. 이 같은 TV토론의 제도적 도입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 자료는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구조를 바꾸고 후보자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선거의 경우, 후보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지지자 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2006).

그러나 도입 초기와 달리 근래의 선거기간의 TV토론은 유권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TV토론의 순기능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TV토론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어서 후보자들을 비교, 검증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은 선거제도라는 측면에서 공정성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TV토론에서 공정성은 흔히 기회의 균등한 제공과 동등한 시간 배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선정에서부터 토론의 진행 방식, 질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균형 유지가 행해지고, 각 후보자의 발언 기회와 시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공정성 확보원칙은 때로 토론회의 내용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다. 1분 혹은 2분내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강요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시간에 맞게 기계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답변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김연중, 2009; 송종길, 2003).

이 같은 비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송사들은 주요 정당의 당내 대통령 후보경선 토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 새로운 토론 형식을 많이 도입하였다. 시간총량제, 일대일 지정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이 도입되고 이용되었다. 방송사들의 변화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정성 시비가 덜한 정당정책토론에서 새로운 토론 형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지난 2010년 동시지방선거는 방송사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방송한 토론 형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다른 토론 형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화하면서도 토론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좋은 정책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토론과 방송사주관 토론 형식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TV합동토론을 분석하였다. 먼저 TV토론 형식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시청률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토론 형식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I TV토론 형식

토론 형식(format)이란 토론의 기본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에서는 동등하게 겨루는 후보자들이 서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청중들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고 이슈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⁸⁾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될 때에야 비로소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한 유용하고도 중요한 기제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TV가 지닌 매체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TV토론은 그 형식의 채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1960년 케네디와 닉슨 간의 TV토론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 후, 토론 형식의 결정은 후보자의 선거캠페인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후보자들은 자신의 토론능력에 따라 선거캠페인에 유리한 토론 형식을 채택하려 하며, 토론을 통해 정책의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드러내 시청자에게 경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론 주최기관은 후보자들 간에 정책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선거관련 TV토론에서 이용되고 있는 토론 형식은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이들 유형이 뒤섞이거나 다소 변형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표적인 토론 형식을 분류해 보면, ‘공동기자회견형(Joint press conference)’, ‘후보자 간 직접토론형’, ‘1인 기자회견형’, ‘시민포럼형(Town hall meeting)’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송종길, 2002).

먼저 ‘공동기자회견형’은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에서 기본 골격을 갖춘 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이후 많은 미국의 대통령후보자 토론 형식으로 사용되어 ‘대통령식 토론(presidential debate)’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토론 형식은 사회자와 패널이 연단에 서 있는 후보자에게 준비해 온 질문을 하면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며, 대개 후보자의 모두 발언으로 토론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패널리스트들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답변한 후 상호 반론하는 순서로 진

28) 아우어(Auer, 1962)는 전통적인 토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토론은 (1)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들이 (2) 진술된 주제에 대해 (3)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4) 적절하고 동등한 시간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5) 청중들의 결정이나 선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된다. 이때 보충질문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각 후보자가 마무리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토론 형식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토론에 대처하는 후보자의 순발력과 인간성 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될 경우 논쟁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특정집단이 패널로 구성되는 경우 일반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환열, 2000). 일반적으로 이 토론 형식은 첫째, 언론인 출신 패널리스트들의 불공정하고 적절치 못한 질문들이 토론의 질(quality)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둘째, 후보자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셋째, 후보자들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되는 선거용 정책과 입장을 인용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는(Carlin & McKinney, 1994; 송종길, 2002) 단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언론인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 형식이 1996년 대통령후보 TV토론 이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자 1인이 질문하는 공동기자회견형 토론 유형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열린 합동토론과 2002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한나라당 당내 경선투토론에서 사회자 1인이 질문하는 공동기자회견형 토론 방식이 후보자 간 직접토론방식과 함께 사용된 바 있다.

둘째, ‘후보자 간 직접토론형’은 ‘후보자 직접충돌형 토론’이라고도 불리는데,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1960년 미국의 케네디와 닉슨 토론을 참조하여 1974년 대통령후보자 TV토론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때 미국의 공동기자회견형과는 달리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직접 대결식의 ‘후보자 간 직접토론형’을 취하였다. 이는 별도의 질문자가 없이 각기 두 명의 사회자와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특히 사회자들은 두 후보가 동일한 발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토론 전반에 걸쳐 두 명의 대통령후보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매개자 없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대결하는 매우 독특한 형식이다(송종길·안수근, 2002).

이 방식은 후보자 간 상호 비교에 가장 유리하며 활발한 논쟁을 이끌어낼 수 있기는 하나, 정책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 혹은 상호비방의 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토론에서는 후보자 자신들의 관심사항만을 토론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후보자의 관심사항과

유권자의 관심사항은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1981년 대통령후보 TV토론부터는 두 명의 언론인 출신 사회자가 후보자 간 동등 발언 시간을 보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두 사회자의 질문에 먼저 답변한 다음, 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간 직접 토론을 벌이고 마지막에 5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후보자 간 직접질문 형식은 연방의원선거에서는 도입된 적이 있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직접 질문형식은 2008년 오바마 vs. 매케인 토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최된 TV토론에서 사회자를 통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라는 변형된 방식이 사용된 바 있으며, 특히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TV토론에서는 다양한 후보자 간 직접토론방식이 나타났다.

셋째, ‘1인 기자회견형’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방식으로, ‘후보자 초청 개별TV토론’이라는 명칭하에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후보자 한 명을 출연시키고 사회자와 패널리스트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론자 간의 대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토론이라기보다는 회견이나 대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효성, 1997).

이 토론방식은 후보자의 정치적 식견이나 이념, 비전, 정책 등과 같이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검증하거나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 간 대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떨어지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후보자 간 우열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기자회견형이라는 형식적 특성 때문에 공동기자회견형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도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토론 형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시민포럼형’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 시리즈 중 두 번째였던 리치몬드 시민 포럼(Richmond town hall meeting)이 원형이 된 토론방식이다. 이 방식은 언론인이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패널리스트 대신 청중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질문을 하는 청중은 여론 조사 기관이 선정한 일반 시민들이며, 지지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이다. 이 부동층 유권자들을 질문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교적 중립적이기 때문에 후보

자들에게 공정한 질문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반 시민들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 공동체에서의 시민회의와 유사하여 시민포럼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후보자가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토론자가 무대에서 움직이면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토크쇼(Talk show)와 유사한 점도 많다.

이처럼 시민포럼형 토론은 토론자들이 움직이면서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청중으로 선정된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지후보를 미리 정한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 즉 대중(public)을 대변하지 못하고 각 후보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토론 형식이 처음 도입된 이후 TV토론에서 주요 토론방식으로 계속 채택되었으며, 지금은 전형적인 TV토론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토론 형식은 미국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시민들은 시민포럼형 토론이 다른 토론 형식에 비해 후보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기피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송종길, 2002).

국내에서는, 시민포럼방식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이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던 시기에 KBS가 처음으로 이 토론 형식을 이용하였다. KBS는 국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시민패널을 구성과 질문 선정방식 등은 미국의 시민포럼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지만 결정적으로 합동토론이 아닌 개별토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이 방식이 이용되었다는 것은 향후 후보자 TV토론에서 하나의 토론 형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TV토론의 유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토론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토론 형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지역별 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알맞은 토론 형식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동시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토론 형식을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자칫 진지하고 교육적이어야 할 토론

회가 단순한 텔레비전 이벤트나 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거기간 TV토론에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토론 유형의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표 13] 선거 관련 TV토론의 유형

토론유형	기원	기본 형식	장점	단점
공동기자 회견형	-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유형에서부터 개선, 발전되어 옴	- 후보자나 패널리스트가 후보자에게 질의하면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	- 다양한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파악에 유리 - 후보자의 순발력과 인간성 등 파악에 용이	- 토론회가 언론인 중심의 단답형 질문으로 일관될 경우, 도식적인 응답으로 자발적인 토론의 역동성 저해 가능 - 시민 참여보다는 언론인 중심이므로 민주성 저해 가능
후보자 간 직접 토론형	- 1974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	-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가 직접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	- 각 후보의 상호 비교, 후보자의 논리전개 및 지적 능력 파악에 유리 - 역동성 높은 토론 전개	- 정책 중심의 내용보다는 상호 비방적인 내용이 많을 수 있어 진술성 검증이 어려움 - 시민 참여의 기회가 적음
1인 기자 회견형	- 공동기자 회견형의 변형.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	- 1인 후보자에게 사회자나 패널리스트가 질의하면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	- 후보자 개개인의 정치적 식견, 비전, 이념, 정책 등을 알아보는 데 유용	- 후보자 간 우열 비교가 불가능 - 생동감이 떨어짐
시민 포럼형	-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 시리즈 중 리치몬드 시민포럼	- 다양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	-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시민의 참여가 가장 뛰어나 민주성 보장 - 흥미와 역동성이 뛰어남	- 한 이슈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 진행이 쉽지 않음 - 반드시 질의되어야 할 문제가 제외될 수 있음 - 시민이 질문 대상자를 지정하므로 후보자 간에 공정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III

수도권 광역단체장후보 TV토론 형식 분석결과

이번 6.2지방선거부터 규칙 등이 일부 수정되어 주제 및 사회자의 질문요지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보다 충실하게 토론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유권자 입장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명쾌하고 정리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TV토론 참석자의 수는 TV토론 진행에 있어서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토론자 수에 따라 방송시간이 달리 측정되기도 하고, 토론 진행방식과 주제의 수 등이 결정된다. 제한된 방송시간 내에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하면 한 명의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여 분 정도 된다. 예를 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가 7명인 경우, 120분 방송 시간 내에 한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4분 정도, 6명인 경우 16분 정도였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짧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많은 토론회가 방송되어야 하므로 방송시간을 120분 정도 편성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TV토론의 경우 참석자의 수가 적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각 토론회별로 다양한 토론 형식이 사용되었다. 후보자 토론회이니 만큼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사회자의 개입도 최소화하는 토론포맷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질문답변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포맷보다는 상대 후보자를 자유롭게 지정하는 형식이나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등 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토론의 방향으로 진행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TV토론 진행절차 분석결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TV토론 진행절차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TV토론의 포맷이 다양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사용되는 토론방식과 달리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서울시장선거), 후보자 자유지정 상호 토론(경기도지사 선거, 질문, 보충질문 방식이나

[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 진행절차

구분	서울시장(3인)	경기도지사(3인)	인천시장(2인)	비고
토론 진행 절차	오프닝(1분 30초)	오프닝(1분 30초)	오프닝(1분 30초)	
	진행방식설명(1분 30초)	진행방식설명(1분 30초)	진행방식설명(2분)	
	기조연설(각 1분 30초)	기조연설(각 1분 30초)	기조연설(각 2분)	
	사회자 공통질문 (각 1분 30초 답변)	사회자 공통질문 (각 2분 답변)	사회자 공통질문1, 2 (각 2분)	
	사회자 개별질문(30초) 후 후보자 상호 토론 (답변-반론1, 2-재반론 19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1 (답변-보충질문-보충답 변, 17분)	진행규칙설명(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각 7분 주도권 토론 1 (26분)	사회자 개별질문 (각 1분 30초 답변)	공약발표(2분) 후 - 질문1 (질문 1분-답변 2분-보 충질문 1분-답변 2분) - 질문2 (질문 1분-답변 2분-보 충질문 1분-답변 2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각 7분 주도권 토론 1 (26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2 (답변-보충질문-보충답 변, 17분)	사회자 자유질문 (개인신상)(각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각 1분 30초 답변)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 문후 보충질문1 (질문-답변-질문-답변, 13분)	사회자 공통질문 (각 2분 답변)	
	마무리 발언 (각 1분 30초)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2 (질문-답변-질문-답변, 13분)	마무리 발언 (각 1분)	
		마무리 발언(각 2분)		
토론 시간	약 95분	약 90분	약 60분	
개최 일시	2010년 5월 28(금) 23:00 (KBS)	2010년 5월 27(목) 23:10 (MBC)	2010년 5월 25일(화) 23:10 (MBC)	

실제 후보 간 토론 형식임), 후보자 공약 발표 후 2번에 걸친 질문과 재질문(인천시장 선거, 상호 토론 형식임) 형식이 이용되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자유지정 토론 형식은 방송사들이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토론에서 사용했던 토론 형식이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에서도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진행규칙들은 참석한 후보자들도 숙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유권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상파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과 비교하면 진행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9-10단계와 6-7단계).

2) 방송사 주관TV토론 진행절차 분석결과

지상파방송사 주관 수도권 광역단체장 TV토론 진행절차는 <표 17>과 같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과 방송사 주관 TV토론을 비교 정리하면, 우선 진행절차가 좀 더 간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7단계). 다음으로 방송사가 주관한 TV토론의 경우 사회자의 참여가 최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방송사가 주관한 TV토론의 경우 전체 토론시간 대비 후보자 간 상호 토론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의 경우 방청객이 참여하는 TV토론의 형식(부분적인 시민포럼형식)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토론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찬스발언(각 1분)을 후보자별 3회씩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5] 방송사 주관 TV토론 진행절차

구분	서울시장(SBS, 2인)	경기도지사(MBC, 3인)	인천시장(SBS, 2인)	비고
	기조연설(각 30초)	기조연설(각 1분)	기조연설(2분)	
토론진행절차	주제토론 (공통주제에 대해 반론-재반론, 발언시간 제한 없음, 각 4분)	공약검증토론 (공약설명 후 후보별 2회 1분 질문-각 1분 답변)	자유토론 (사회자 개별질문후 답변 후 자유토론, 15분)	
	상호검증토론 1 (주도권 토론 각 10분)	주제토론 (1회 발언 100초, 자유토론, 15분)	맞장토론 (후보별 2분 발제 후 자유토론 각 9분)	

구분	서울시장(SBS, 2인)	경기도지사(MBC, 3인)	인천시장(SBS, 2인)	비고
	후보자 발제토론 (후보선정 주제로 상호 토론, 발언 최대 2분, 각 10분)	방청객 질문 (각 1분 답변)	사회자 공통질문(2분)	
	사회자 공통질문 (각 1분)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주도권토론, 각 4회 1분 질문, 한 후보에게 모두 사용 안 됨)	상호 검증토론 (주도권토론 각 10분)	
	상호검증토론 2 (주도권 토론 각 10분)	마무리발언(3분)	마무리발언 (각 1분)	
	마무리발언(각 1분)	* 찬스발언 : 후보당 1분 씩 2회		
토론 시간	약 75분	약 90분	약 60분	
개최 일시	2010년 5월 19(수), 23:15	2010년 5월 20(목) 24:15	2010년 4월 30(금) 24:15	

* MBC주관 경기도지사후보 TV토론에서는 후보자별 3회 찬스발언(각 1분)이 허용되었으며 후보별 각 2회씩 사용하였다.

3) 토론회 중계 및 주관횟수 분석결과

6개의 TV토론의 경우 KBS 1회(서울), MBC의 경우 3회(경기 2회, 인천 1회), SBS의 경우 2회(서울 1회, 인천 1회)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방송사인 KBS의 경우 가장 적은 1회의 토론회(서울시장후보 TV토론)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초청 및 비초청 광역단체장 후보 및 교육감 후보토론까지 MBC와 나누어 중계방송해야 하는 KBS의 입장에서는 자체토론을 주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만을 주로 중계한 것이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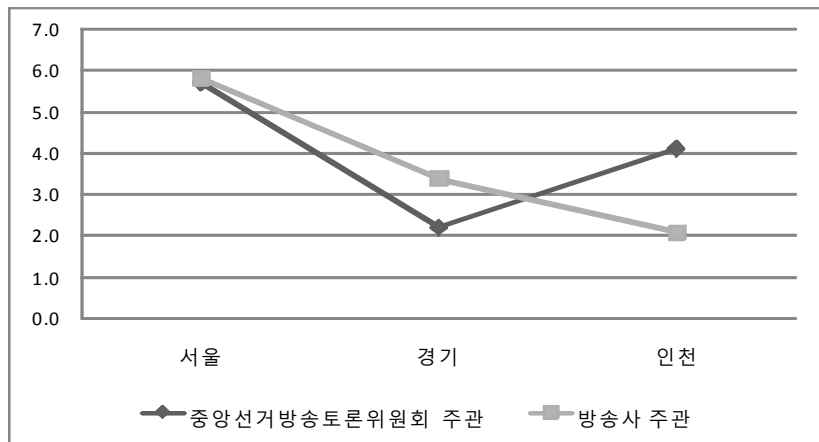
[표 16] TV토론 주관과 주제와 주도권 사용방식

구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체 주관 토론회	총계
KBS	1 100.0% 33.3%	0 .0% .0%	1 100.0% 16.7%
MBC	2 66.7% 66.7%	1 33.3% 33.3%	3 100.0% 50.0%
SBS	0 .0% .0%	2 100.0% 66.7%	2 100.0% 33.3%
총계	3 50.0% 100.0%	3 50.0% 100.0%	6 100.0% 100.0%

IV 시청률 분석결과

본 발표에서는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의 시청률 데이터(920가구)를 이용하여 TV토론 시청률을 분석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과 비교하여 선거일에 가까운 날짜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 주관 TV토론 시청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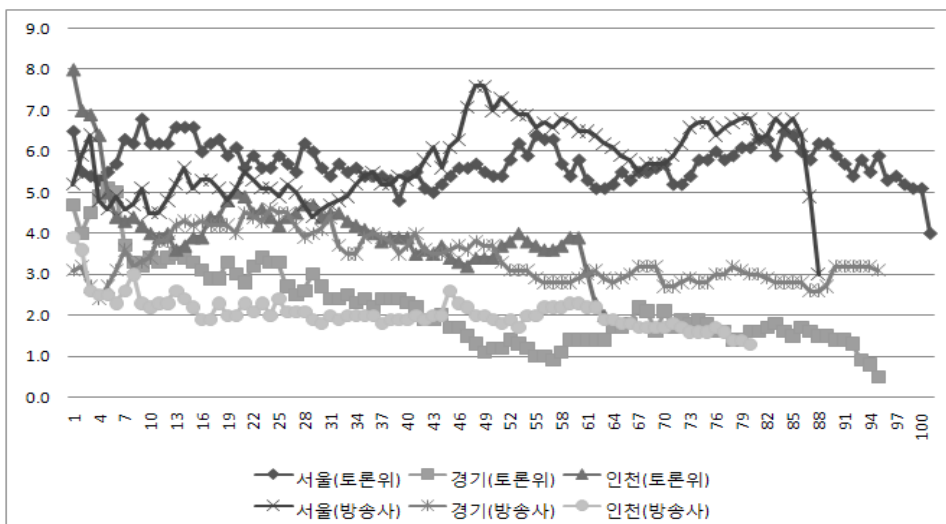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의 시청률 경우 서울 5.7%, 경기 2.2%, 인천 4.1%로 나타났으며, 방송사 주관의 TV토론의 시청률 경우 서울 5.8%, 경기 3.4%, 인천 2.1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비슷한 시청률을 보였으며, 인천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이 시청률이 높았고, 경기의 경우 방송사 주관 TV토론의 시청률이 높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이 투표일에 가까운 날짜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유권자 또는 시청자의 무관심인지 또는 TV토론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시 TV토론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방영된 6개의 TV토론의 분당 시청률 자료를 <그림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체로 6개의 TV토론의 경우 시작 초반과 중반에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청객 질문이 이루어진 방송사 주관(MBC) 경기도지사 TV토론의 경우 후반부에서는 시청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송사 주관 서울시장 TV토론(SBS)의 경우 후보자 발제토론(후보자별 자유주제 10분 동안 1대1 공방)의 시간에 시청률이 8% 가깝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서울시장 후보토론(KBS)의 경우 사회자 공통질문(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 주관에 관계없이 서울시 TV토론의 경우는 각 토론 절차마다 시청률의 등락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시청률 편차가 적었다.

<그림 3> 수도권 지역 TV토론 분당 시청률 비교



그러나 토론 주관과 관계없이 경기와 인천의 TV토론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청자(유권자)들은 서울시장 TV토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TV토론 형식 분류 및 분석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 프로그램은 다양한 토론 형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토론 형식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질문과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토론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 제시 여부와 주도권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할 수 있다.

1) 질의와 응답 주체방식

우선, 질의와 응답의 주체에 따른 토론 형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자회견식 토론 형식이며, 사회자와 패널이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둘째, 사회자 질의 형식이며, 패널리스트 없이 사회자 1인이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셋째, 1대 1 토론 형식이며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두 명의 후보자만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넷째, 후보자 전원 토론 형식이며, 해당 TV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보자 전원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는 토론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방청객 질의 형식이며, 방청객이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표 17] 질의와 응답 주체에 따른 토론 형식

질의 주체 \ 응답 주체	사회자	후보자	방청객
후보자	기자회견식 사회자 질의 방식	1:1 토론 후보자 전원 토론	방청객 질의 방식

TV토론회의 주관에 따른 질의와 응답 주체에 따른 토론 형식에 관한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3가지 TV토론 형식을 하나의 TV토론에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식, 사회자 질의 방식과 1대 1 토론의 경우 토론 형식을 고르게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는 후보자 전원 토론방식을 채택하였고, 지상파방송의 경우는 방청객 질의 방식을 채택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또한 다자간 토론 형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대 1 토론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표 18] TV토론 주관과 토론 형식

구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상파방송사	총계
기자회견식	3 50.0	3 50.0	6 100.0
사회자 질의 방식	3 60.0	2 40.0	5 100.0
1:1 토론	3 50.0	3 50.0	6 100.0
후보자 전원 토론	1 100.0	0 0.0%	1 100.0
방청객 질의 방식	0 0.0%	1 100.0	1 100.0
총계	10 52.6	9 47.4	19 100.0

2) 주제 제시 여부와 주도권 사용방식

다음으로, 주제 제시 여부와 주도권 사용방식에 따른 토론 형식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제별 집중토론 형식이며, 이 형식은 사회자나 패널이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1인 또는 1인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그들이 응답하는 방식의 토론이다. 둘째, 주제별 상호 토론 형식이며, 공통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듣는 방식의 토론이다. 주도권

은 일정한 순서에 모든 후보자들에게 돌아간다. 셋째, 주제별 자유토론 형식이며, 공통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주도권 없이 후보자들 간의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토론 형식이다. 넷째, 상호 토론 형식으로 주도권을 가진 한 후보자가 방송사에서 제시한 주제 없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형식이며,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주제 없이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표 19] 주제와 주도권 사용방식별 TV토론 프로그램 형식 분류

주제 \ 주도권	유	무
유	주제별 집중토론 주제별 상호 토론	주제별 자유토론
무	상호 토론	자유토론

TV토론 주관과 주제·주도권 사용방식에 따른 토론 형식에 관한 조사결과, 주제별 자유토론과 자유토론을 제외한 주제별 집중토론, 주제별 상호 토론, 상호 토론방식이 TV토론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지상파방송사보다 주제별 집중토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보다 상호 토론방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TV토론 주관과 주제와 주도권 사용방식

구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상파방송사	총계
주제별 집중토론	3 60.0	2 40.0	5 100.0
주제별 상호 토론	3 50.0	3 50.0	6 100.0
상호 토론	2 40.0	3 60.0	5 100.0
총계	8 50.0	8 50.0	16 100.0

VI 결론

이번 지방선거는 TV토론의 활성화를 이루었지만, 시청률이 낮았으며, 재미도 없었고, 시청이 불편한 시간대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TV토론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밀착형 매체인 케이블방송이 지방선거에서 그 역할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TV토론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정보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TV토론의 의미가 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의 경우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방송사 주관 TV토론의 경우는 후보자가 특정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형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서로 유사해 보이지만 누가 주관하였는지에 따라서 TV토론 형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최소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의 경우 TV토론방영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TV토론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TV토론은 20년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TV토론 형식과 진행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만을 볼 때 유권자의 관심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TV토론의 형식 및 진행방식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공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방송사들이 다양한 토론 형식을 통해 토론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토론 형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몇 가지 TV토론 형식의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TV토론 내용의 정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주제 내에서 사회자와 토론

자가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2년 대통령후보토론에서 처음으로 추가질문이 허용되었는데, 추가질문은 토론내용의 정보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질문은 답변자에게 직접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답변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 준다.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은 상대후보의 견해를 반박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입장이 상대 후보와 어떻게 다른지 보이도록 만들어준다(송종길, 2003). 그러나 추가 질문은 후보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토론주제별 시간총량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과 같은 많은 질문 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방송사가 주관한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의 경우 후보자 자신이 정한 주제로 상대 후보와 10분 동안 1대1 공방을 하는 후보자 발제토론 시간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론회가 복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제별 혹은 전체 토론 동안 일정횟수의 추가발언 혹은 질문기회를 더 많이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제한된 횟수의 연속발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경선 TV토론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넷째,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포럼방식의 토론 형식의 채택이다. 6개 TV토론 중 방송사 주관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의 경우 방청객 질문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시간대에 시청률 하락이 잠시 정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수용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포럼형식에 대한 결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19대 총선 등 차기 선거에서는 시민포럼방식의 토론 형식의 채택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TV토론의 형식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니지만, 왜 TV토론의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TV토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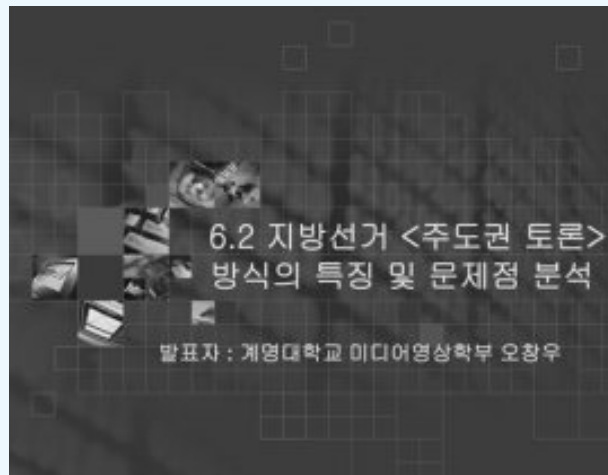


- 김연중(200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TV 방송토론의 형식과 내용 : 3개 토론회 사례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54 - 292.
- 김환열(2000), 『TV토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종길(2002),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송종길(200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 권 22호, 107 - 130.
- 송종길(2006), “공직후보 TV토론 이용동기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연구”,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6호, 440 - 460.
- 송종길·안수근(2002), “2002년 민주당·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투론에서 나타난 토론방식(format)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6권 4호, 140 - 173.
- 이효성(1997),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나남.
- Auer, J. J.(1962), The counterfeit debates, In Kraus, S.(ed.), The great debates : Kennedy vs. Nixon, 1960(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42 - 150.
- Carlin, D. P. & McKinney, M. S. (1994).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in Focus. Westport, CT : Praeger.

6.2 지방선거 <주도권 토론>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오창우

-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특징 2

- 공통질문 및 자유토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태의 <주도권 토론> 부재
- 상대방 인신공격이나 평소에 쌓인 얘기로 채우는 후보도 많았음
- 장황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 많았음
- 주장만 난무하고 증거제시나 논거적 요소를 갖춘 경우 전무
- 4-5분의 <주도권토론> 시간은 본질적으로 주도권토론이 불가능하게 함
- 모든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하게 하거나 한 번이라도 질문받은 후보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은 오히려 <주도권토론>의 의미를 반감시킴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특징 2

- 공통질문 및 자유토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태의 <주도권토론> 부재
- 상대방 인신공격이나 평소에 쌓인 얘기로 채우는 후보도 많았음
- 장황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 많았음
- 주장만 난무하고 증거제시나 논거적 요소를 갖춘 경우 전무
- 4~5분의 <주도권토론> 시간은 본질적으로 주도권토론이 불가능하게 함
- 모든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하게 하거나 한 번이라도 질문받은 후보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은 오히려 <주도권토론>의 의미를 반감시킴

투표율 54.5%의 의미 2

- 각 후보에 정책차별성 보다는 투표지상의 위치, 순서, 감성적 판단에 의한 영향력 더 크게 나타남
- 후보자들의 정책 차별성 약화되고 인물 차별성 강화됨
- 20대, 30대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야당에 유리한 결과?
 - ㄱ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30대까지의 유권자 투표율 전반적으로 높아짐
 - ㄱ 특히 약 선거권을 얻은 19세 유권자의 투표율 9.5% 상승
 - ㄱ 20대 전반 투표율이 20대 후반 투표율보다 높은 것은 군대 및 대학의 부재자 투표
 - ㄱ 40대 후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음

2010년 지역별 투표율

- 최고: 제주 65.1% , 최저: 46.0%
- 제주의 경우 두 명의 무소속 후보간의 경합 관심거리
- 대구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어 처음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했음
- <지역별 투표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투표율	53.8	49.5	46.0	51.0	49.8	52.8	55.1	51.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투표율	62.3	58.8	56.5	59.4	64.3	59.4	61.9	65.1

6.2 지방선거의 특징 및 문제점 1

- 유권자들 지방선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매우 비판적인 입장 나타냄
- 8표 행사 : 수 십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행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지역주의 투표성향과 정당별 기호부여 방식이 합쳐져 지방선거에서 '묻지마 투표' 행위를 만연시킴
- 무자격자·무적합자들이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결과

6.2 지방선거의 특징 및 문제점 2

- '세종시', '천안함', '4대강사업', '무상급식' '북풍/노풍' 등의 이슈 영향력 크게 나타남 → 지방선거의 아젠다 사라지고 중앙정치 아젠다가 선거결과를 좌우
- 일각에선 과거에 비해 지역주의가 극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서는 매우 약함
- 전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의 문제, 특히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 심각

6.2 지방선거의 특징 및 문제점 3

-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중앙당의 과열된 관심이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킴
- 대통령의 중간평가, 정권의 심판, 그리고 좌파세력의 척결 등으로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구호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른 경향
- 선관위의 태도가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지적도 많았음: 4대강,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을 차단하고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를 왜곡시킨다는 주장

6.2 지방선거의 정책선거로서의 한계 1

- 수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보니 유권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초점이 분산됨
- 유권자에게 일관된 정보(예를 들어 소속정당)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선거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음
- <참고>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이 일관되게 합리적이지 않고 모든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미시간 모델이 투표행태이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6.2 지방선거의 정책선거로서의 한계 2

- 유권자들에게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 후보들의 정책차별성을 한꺼번에 인지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상적 기대
- 지나치게 많은 후보자수와 선거의 종류로 인하여 음성적인 불법선거 운동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 증가해 선거문화 악화되는 조짐도 보임
- 후보자/선거운동원과 유권자 사이의 '멀어짐' 현상 두드러짐
- 지방선거 8표 행사 투표 아이디어 자체가 선거의 본질과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함

6.2 지방선거에서의 토론가능성에 대한 평가 1

- 선거일정이 기본적으로 촉박하였고, 정당은 자당 이기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축소함
- 한나라당은 3월 22일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5월 3일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
- 민주당은 5월 6일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해서 공식 선거 운동은 20일에 불과했음

6.2 지방선거에서의 토론가능성에 대한 평가 2

- 시민과 언론이 후보들을 비교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부여하지 않음 → 정당이 전략적으로 후보노출을 피해 보호하자는 계산에 의한 결과
- 민주당의 경우에는 TV토론 없이 후보자간의 경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100% 여론조사에 의해 서울시장 후보 선출 → 서울시장 후보로서 TV토론 경험을 거쳐 여당 후보와의 TV토론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서울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한명숙 후보는 토론주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자료화면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러다보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 부족

기존 TV토론의 일반적인 문제점 1

- TV토론방송의 과잉
 - ㉠ TV토론에 대한 흥미도 떨어뜨림
 - ㉡ TV토론 체계만을 강화하여 생활세계적 의미를 약화시킴
 - ㉢ 시청자(방관자)로서의 위치를 고정화시켜 유권자화에 실패
- TV가 지니는 피상성이나 감성적 소구성으로 인하여 토론 내용보다는 후보자의 외모나 연출적 요소 두드러지게 함
- TV토론 참가자격이나 참가 후보들간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주관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토론 참가 후보자간 양적, 기회적, 형식적 균형을 강조 => TV토론의 형식과 진행방식만 두드러지고 출연자의 토론내용과 논리 등을 주변화시키는 결과

기존 TV토론의 일반적인 문제점 2

- TV토론이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름
 - 재미없는 TV토론
 - 시청률 1%대의 TV 토론
 - TV토론의 선거영향력 저조하거나 거의 없음
 -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적 태도 강화

기존 TV토론의 일반적인 문제점 3

- 선거방송 과정에서 언론사의 자율성이 없어 질문내용의 객관성 확보와 질의/응답의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그침 → 언론의 저널리즘적 기능의 제한
- 선거법 등에서의 여러 제한 조항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한
- '알'의 문화 부재와 훈련과정을 겪지 못한 후보자들의 토론능력 부족

<주도권토론> 방식의 목적

- <참고> '후보자 공약검증 상호토론', '후보자 주도형 토론', '자기주도토론' 등의 명칭
- 후보자간 공약 검증이 목적
- 경쟁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토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강화
- 질문문항 및 예상되는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스스로의 공약검증 및 논리를 강화시킴
-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간의 공약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지지후보 결정에 도움을 줌
- 기계적 토론방식이 지니는 지루함으로 극복하고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어 TV토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선거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

● 분석대상

- ㉠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3명, 7분 주도권토론 2회)
- ㉡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 (3명, 5분 자유토론 2회, 5분 주도권토론 1회)
- ㉢ 경남교육감 후보 토론회 (6명, 3분 심층토론 1회, 4분 주도권토론 1회)
- ㉣ 전남교육감 후보 토론회 (4명, 4분 상호토론 2회)

● 분석방법

- ㉠ 양적 특징 보다는 질적 특징을 밝히고자 함
- ㉡ 주도권토론의 전략적 특징을 밝히고자 함
- ㉢ 객관적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특징 1

- 후보자들 <주도권토론>의 의미 및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대부분의 후보들 4~5분의 <주도권토론> 활용못함: 질문하다가 끝나는 후보도 있음
- 상대후보의 공약상의 문제점 및 허구성을 밝히기보다는 자기자랑을 일삼거나 연설문 낭독으로 채우는 후보 많았음
- 전략적 활용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특징 2

- 공통질문 및 자유토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태의 <주도권토론> 부재
- 상대방 인신공격이나 평소에 쌓인 얘기로 채우는 후보도 많았음
- 장황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 많았음
- 주장만 난무하고 증거제시나 논거적 요소를 갖춘 경우 전무
- 4~5분의 <주도권토론> 시간은 본질적으로 주도권토론이 불가능하게 함
- 모든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하게 하거나 한 번이라도 질문받은 후보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은 오히려 <주도권토론>의 의미를 반감시킴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 사례 1 - 부적절한 질문 및 응답
- 사례 2 - 부적절한 질문 및 응답
- 사례 3 - <주도권토론>에 대한 이해부족
- 사례 4 - <주도권토론>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함
- 사례 5 - 질의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
- 사례 6 - 질의시간을 자기 자랑 및 홍보에 할애하는 경우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 사례 7 - 강의식 설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 사례 8 - 장황한 설명
- 사례 9 - 상대방 흠집내기 및 인신 공격
- 사례 10 - 상대방 흠집내기 및 인신 공격 1
- 사례 11 - 강압식 질의 및 응답
- 사례 12 - 시간조절 실패의 경우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문제점 1

- 현재 진행방식 하 4~5분의 <주도권토론>의 의미 별로 없음:
토론의 심층성 및 흥미성 증가하지 않음
-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의 <자유토론>, 전남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의 <심층토론>과 차별화되지 못함
- 각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수준에서 <주도권토론>은 자기홍보
기회나 상대방 흠집내기에 악용될 소지 큼
- <공통질문>과 <지정토론> 등을 통해서도 진행자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인데, 현재와 같은 <주도권토론> 방식 하에서는
진행자의 수동성은 더욱 악화됨
- <주도권토론>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검증방법이나 사후
처리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주도
권토론> 시간을 매우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

6.2 지방선거 <주도권토론> 분석결과: 문제점 2

- <주도권토론>에서마저 질의대상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주도권토론>의 의미 반감됨 (예:전남도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앞에서 질의받은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한 번씩 질의하고 응답하는 결과)
- <주도권토론>의 형식을 지나치게 정하는 경우 <주도권토론>의 의미는 거의 없어짐(예: 전남도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상호토론 4분을 '질문(1분)-답변(1분)-보충질문(1분)-보충답변(1분)' 형식으로만 하게 함으로써 질문깊이가 없거나 질의응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는 경향)
- <주도권토론>이라해서 해당 후보자에게 시간통제를 일임하는 경우 자기자랑, 자기공약홍보, 상대방홍집내기 및 인신공격, 장황한 설명, 강의식 설명, 비논리적이고 감정적 내용 표출, 화법 및 문법 체계 오류 등의 문제 노출해 후보자, 선거,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주도권토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1

- <주도권토론>이 시간총량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토론이나 상호토론과 형식적 측면 및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는 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 <주도권토론>이 그야말로 후보자간 공약검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시간량과 질의/응답 형식은 어떤 것일까?
- <주도권토론>에서 각 후보자에게 질의/응답 형식과 시간을 일임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주도권토론>에서 제기되는 질의내용과 응답내용이 허위인 경우 선거당락과 관계없이 검증되고, 검증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주도권토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2

- <자유토론> 및 <상호토론>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 유력 후보자만 토론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 및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 유력후보자들에게만 <주도권토론> 기회를 주는 방안은 불가능할까?
-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정하고 처음부터 각 후보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 시간총량제 베이스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도권토론> 방식을 흡수할 수는 없을까? (예: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주제별 5분 자유토론 2회를 진행하면서 질의 및 응답시간을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진행함 →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정책검증 토론회로 평가하고 있음)

<주도권토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3

- 정당간, 후보자간 형평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나 투표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TV토론의 진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 정책선거, 공약검증,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TV토론이 진행자의 역할없이 후보자간의 <자유토론>이나 <주도권토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TV토론의 본질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 역사적/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TV토론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현재의 TV토론을 지나치게 '절대적 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끝 -

2 0 1 0 선 거 방 송 토 론 백 서

[부 록]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1절

정 당 법 제2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절

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4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 2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

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 (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 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 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

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개정 2010.1.25>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개정 2010.1. 25>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

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 25>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8.4, 2008.2. 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10. 1. 2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답·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2항·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02

정당법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0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0. 1. 25 중선관규칙 제3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05.8.4>)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 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 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 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 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 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 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 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 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

양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 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 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 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 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 25>

제 3 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 25>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 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 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 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 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 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 25>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 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 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토론자 간에 균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 2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 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대담·토론

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 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 1. 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 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 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 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 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 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 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들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321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 선거방송토론백서

2010년 12월 20일 인쇄

2010년 12월 24일 발행

- 발행 _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기획 _ 류원홍
- 집필 _ 류원홍, 손세현, 최관재, 김명선
- <http://www.debates.go.kr>
- 주소 _ 서울특별시 관악구 백제길 17
- 전화 _ (02)3473-9947
- 팩스 _ (02)3473-9949

디자인 및 제작 _ 유앤아이 (02-362-1511)